

第19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6.5.15.~5.1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9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253
II.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55
III.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61
IV.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87
V.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407
VI. 부록	
1. 의사일정안	415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17
3. 서면답변서	449
4. 조례심사보고서	48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5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9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5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9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9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성영용 위원 외 5명 발의)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서광범

의사과장 서광범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 및 의안접수 상황, 도의회 안건 처리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1회-제1차 본회의]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5월 3일 성영용 교육위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동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5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의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제19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청으로 이송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통일 체험학습 지원비 1,800만원, 청주 성신학교 녹색학교 조성비 1,500만원, 교원단체 기본시설 지원비 2,570만원, 민간투자사업 교사 개축 및 다목적 교실 증축 기본설계비 1억 1,400만원 등 총 1억 7,27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예비비로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총 642억 651만 4,000만원 중 용문중, 보덕중, 증약초, 감물초 등 4개 교실 및 다목적교실 증·개축분 66억 5,377만 2,000원이 삭감 조정되어 2006년 5월

1일 도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건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9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7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시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산회 후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은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5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청으로부터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5월 1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목요일날 집행청 답변에 이어서 위원 보충질의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 의장 고규강

맞습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09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 외 5명의 교육위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 일시는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17일 오전 10시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18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관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 교육에 관한 주민을 대표로 하는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교육시책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
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
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2
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성영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즉시 집행청에 통보하도록 하
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
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과 관련
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 위임하는 사
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과 대장가
격 2,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
을 추가하고 본청에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 심의회는 부교육감과 각 국·과
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지역교육
청에 두는 공유재산 심의회는 청주교육청
의 경우 교육장과 각 국·과장으로, 기타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과장 및 각 업
무담당 주사, 업무담당 장학사를 각각 위

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금액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등을 정하고, 폐교재산 대부 요율을 현재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며, 사회복지사회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6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

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5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기수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제191회-제1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별첨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7일 (수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의석 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23조에서 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하시는 내용은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훈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관심과 사랑, 그리고 화합으로 충북교육의 도약을 일궈내고 계신 이기용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업적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각종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정상of 자리에 우뚝 서있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했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검토나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아닌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군 단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지구를 신설하거나 시험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며, 시험지구 신설은 시험장 여건, 교통수단, 문답지 보안 대책, 시험응시생 수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정하고 있으며, 시험장 설치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시험지구에서 제반 여건을 판단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일례를 들면 보은지역에 대입 수학능력

시험장을 지정해 달하는 학부모들의 요망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보은지역에 시험장이 없어 시험 당일 새벽에 옥천군의 시험장으로 이동하거나 시험 전날 옥천에서 숙박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정신적 부담으로 시험을 그르치기 쉽고, 또한 학부모들도 정규 버스노선 시간이 맞지 않아 전세버스를 동원해야 되는 등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 학생들의 경우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으로 사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 지정에 대해 크게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수험생들의 정신적 피해로 야기되는 불이익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수험생들이 정신적 부담없이 내 지역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보은지역에 시험장소 신설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대입수능시험 장소 지정 현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대입시험 수능지구 및 시험장소 설치 현황.

둘째, 충청북도 대입수능 지구와 시험장 운영 경비를 지구, 장소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셋째, 충청북도 내 고등학교 중 대입수능시험을 자기 지역에서 보지 못하는 학부모와 시험생들의 불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해결하실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여비가 2006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에 보면 1,045만원의 예산이 연구 수립 단계 현장지도에 440만원, 시범학교 보고회 참석 440만원, 시범학교 전국 보고회 참석 165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다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보고회 참석 명목으로 48교 참석여비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도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교육과학연구원으로 그 업무가 일원화되었다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납득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가 수

시로 이루어져 연구학교 본연의 성과를 얻어야 함에도 운영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서도 연구학교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 또는 중간지도 없이 단 한번 48교 학교의 보고회 참석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본예산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여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8교 운영 보고회 참석 여비 264만원만 수립하게 된 근거와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2006학년도 연구시범학교 현황을 시·군별 학교 급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종결보고 학교는 몇 학교가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2006년도 예산 요구 수립 시 교육과학연구원의 당초 연구학교 운영 여비 요구액과

다섯째,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학교 지도방안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사택 보급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지 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 근무 복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개·보수 내지 신축을 하여 근무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나 오지 중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사택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옥천 청산면과 이원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그러하고, 특히, 청산고등학교와 이원초등학교의 경우 부족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임대주택도 없는 실정이라 청성면과 옥천 지역까지 오가며 객지에서 객지로 이중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산고등학교의 경우 야간 자율학습지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거의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청주에서 먼거리 지역보다도 오히려 중간 지역에 위치한 학교 근무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이들 지역에 공동주택을 증설하실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시·군별 공동주택 현황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2. 공동주택 부족에 따른 수급대책과 미사용 사택 발생 시 관리방안에 대한 소

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비롯하여 일부 학교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05년 현재 전국 대비 우리 도 보급률과 실시 학교 수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실시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2. 전자결재시스템이 교원업무경감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이고,

3. 일선학교에서는 종이문서 사용과 함께 이중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있다면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가 가중된다고 보는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확대 보급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싱그러운 계절에 충청북도교육청 정문에 게시된 행

정서서비스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문구가 더욱 돋보입니다.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기에 학생교육과 지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청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농촌지역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추계에 의하면 7~8년 후에는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으로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업무계획 1-1-2에 5차원 영재교육 두뇌충북 21 추진에 있어서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 이들 영재를 지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 부족으로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역교육청에는 대학 등에서 영재를 지도할만한 교수들을 초빙할 재정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계획 1-2-3에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은 2006년 청주, 청원부터 실시하고 2007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충북소재 교대, 사범대 중 희망자로 운영하게 되면은 청주, 청원이 주 대상이 되고 다른 지역은 인적자원 부족으로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결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내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곤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위원 별 세부 직업 분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곤란한 직업을 가진 위원이 있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 48조 6에 의거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직원 등을 탑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학교에는 차량이 많은 곳도 있어서 이 차량들을 운행하면서 이 이행이 어려운 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은 주변여건의 변화와 시설 수준의 차이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편리성 추구 등 의식의 변화로 점점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3년간 입소학생

수는 얼마나 되며, 운영이 안 되는 야영장의 특별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원자격연수 여비는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직접 지급해서 학교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연수 여비 등은 학교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학교의 재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여전히 불평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불평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등에 단가를 제시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걸로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요업무계획 6-3-4에 학교교사 내 환경위생 개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13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하였는데 실시여부 및 대상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문제로 학교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갈등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가

산점이 유능한 일선 지도교사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3년 이상 직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하여 부가점을 주는 것은 지도교사의 청소년 단체별 전문성은 고취를 시킬 수 있지만은 너무나 장기적이어서 이 부분을 1년 이상 직접 지도한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4년차부터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을 2년차부터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제의합니다.

이 제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대헌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충북교육의 질 높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이기용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관심, 사랑, 화합을 바탕으로 알찬 교육계획, 투명한 예산집행, 공정한 인사관리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 지역사회 모

든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과 역할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육이 한 시대의 교육환경과 함께 숨쉬고 성장 발달한다고 볼 때 오늘의 교육환경은 다양한 가치를 통하여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사회에서 학부모들은 질 높은 삶을 추구하며 자녀 교육의 문제를 가장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아의 조기교육 문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자녀교육 문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교육 문제, 농촌학교와 소규모학교 교육환경 문제, 입시시험 준비교육과 사교육비 문제, 대학입시 제도에 관한 문제, 1등만을 바라는 학부모 의식 등 교육의 문제가 가정이나 사회생활의 패턴을 좌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사들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감지됩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시험감독, 시험문제지 공개-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조-교원평가제도입, 교장·교감 선출 보직제, 부적격 교사 퇴출 등 공교육의 신뢰와 교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서민들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공적이 2개 있다며 하나는 집값이고 하나는 사교육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노대통령은 방과후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도의 방과후학교 실정은 어떠한가요?

특히, 양극화 해소 방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지원 예산은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보다 좋은 교육기회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좋은 교육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지.

오늘의 교육행정 질의가 위원들이 질문하고 집행청의 답변을 듣는 통과 의례적인 의회활동이 아니라 위원들이 제기하는 교육의 제반 문제가 단 한 가지라도 교육적 원리로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과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 감동, 도약하는 충북교육을 학부모와 교사의 관점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청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로 유치원에서의 부적응 유아에 대하여.

우리 도의 공·사립 유치원 현황을 보면 공립 235, 사립 88, 계 323원, 학급수 769학급, 원아수 공립 7,650명, 사립 8,800명, 계 16,450명, 교원수 9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립 유치원 장애아는 51원 6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1만 6천여 명이나 되는 유아들의 유치원 생활이나 교육과정 운영에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 유아 교육 부적응 유아는 없는지, 부적응 유아가 있다면 그 판별과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청의 답변에 의하면 유치원 원아의 경우 유아기는 발달 변화가 크고 개인차가 있으므로 부적응아 진단은 전문적인 심리상담 기관의 판별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유치원에서의 별도의 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유치원이라는 집단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아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게 됨으로 부적응하는 유아도 있을 수 있으나, 교사와의 친밀감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부적응 행동이 소멸되고 개별화 교육과 사회성 발달로 유치원에서의 부적응 유아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집행청의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취학 대상 1,2월

생 아동의 학교부적응을 우려, 취학을 유예시키는 보호자가 늘고 있으며, 취학한 1,2월생 아동이 나이가 많은 아동에 비해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과 또래 관계, 학교적응력 등이 부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는 실정에서 그보다 나이가 어린 유아의 경우 유치원 교육의 부적응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문적인 심리 상담기관의 판별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지원되어 부적응아가 조기에 발견 치유되는 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 전담과목 담당교사제도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영어, 체육, 음악, 미술 과학 등의 교과전담과목 담당교사제 시행 취지는 교과전담교사의 전공을 살려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10여 개 교과와 30시간 안팎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인의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33조 2항 교원 배치 기준령에 따라 교과전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준령이 정한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지, 과목 담당교사의 전공 여부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학진학과 공교육 내실화에 대하여.

얼마전 '2006학년도 대입 충북지역은'이라는 신문기사에서 웃음꽃 핀 사립고 공개속인 공립고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200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볼 때 공립의 서울대 합격자가 사립고등학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교육계 인사들은 단지 서울대 합격자만 갖고 공사립의 편차를 논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립 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공립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를 방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립 학교 간에 진학지도에 대한 시스템의 차이도 있겠지만 현 평준화제도에서 무작위 추첨 배정에 대한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개선을 이기용 교육감에게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학하고자 희망한 고등학교 정원의 10%는 당해 학교를 1지망으로 지망한 학생 가운데 내신성적 상위 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당해 학교 정원의 90%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추첨 배정 원칙에 따라 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어떤 제도이건 간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를 고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수 학생의 희망에 따라 10% 우선 배정한 것이 평준화 제도하의 고입선발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심도있는 검토는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런 취지의 입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이기용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업계고 직업교육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 종전에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완성 교육으로 현장실습, 산학협동, 기능자격증 취득, 산업체와의 연계, 높은 취업률을 보이던 것이 근자에 와서 사회구조의 변화-취업이 대학위주로 되었어요-로 실업계 고교의 직

업교육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고교생 가운데 대학진학이 절반을 훨씬 넘어선 현실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산학 협동체제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정부 시책마저 실업계 고교의 동일계 대학진학 확대 정책을 검토하는 차제에 우리 도의 실업고 전반에 걸쳐 인문고, 특성화고, 종합고 전환 및 순수 실업고 존속 등 종합적인 실업고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직원 보험 일괄 선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충청북도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시책인 전 교직원 보험가입이 교육부 지침과는 달리 정작 소비자인 교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달을 통해 일괄적으로 동일상품 보험을 선택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밟았으며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담당관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학부모의 욕구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도내에서 몇 등인지 청주시내에서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이 없는 우리 실정에서 학교 평가가 낱알이 공개된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차원의 일률적인 학교 평가는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이 참여하는 단위학교 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우리 도의 부적격교사 기준과 부적격 교사 색출과 그리고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에 대해 담당관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주교육대학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본도 초등학교 임용고사 유인 체제로 청주교대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에 대하여 청주교대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2004년도 신입생부터 2007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0년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해마다 신입생 50명에게 지급하고 재학생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충북 도내의 초등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 제도는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면으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자에 우리도 초등교원 임용고사 응시율을 보면 우리 도의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며, 2007학년도 교대 입학생부터 장학금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려던 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장학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사제도에 대하여.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는 구성원 사기와 직결되며 교육성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원승진규정 43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서 명부는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시행상에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교감자격증을 받고 본인 앞 서열에서 교감이 승진하고, 1년 간 대기하다가 해가 바뀌면 그 동안 서열은 폐기되고 금년에 새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섞어 승진후보자를 작성하다보니 승진 서열이 뒤로 밀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관운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승진에 대한 미래는 해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 교감, 교장 승진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승진을 못한 대상자는 우리 도에 몇 명이나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 교육청 일반직 인사 규정을 손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차원에서 일반직 인사 및 교육청 직제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무엇이며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점을 담당관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부의 시·도평가와 관련하여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교육부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시도평가와 지방교육혁신 평가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우수한 행정역량을 평가받아 많은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지방교육혁신 평가에는 2,000억이라는 재정지원금이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니 더더욱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교육혁신위원회의 2년 간 활동백서를 보면 단위학교 교육기획력 확대방안, 교육과정 교과서 현대화 방안,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대학교육 혁신방안,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교육평가제 혁신방안, 생활중심 교육자치제 실시방안, 교육복지정책

실현 등 많은 일을 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평가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던 학생성적관리, 학생폭력근절, 공교육 내실화, 교육과정운영, 교육행정, 교육재정, 평생교육, 직업교육지원, 우리 도의 특색사업과 노력중점 등 교육가족의 공감대 위에 구조화하는 작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평가받는 교육부 시·도평가에 대비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집행청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1만 6천 교육가족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충북교육은 날로 발전함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 요즈음 발

생한 초등학교의 급식문제, 또 일부 교직원 단체와의 충돌, 또, 열악한 교육재정을 가지고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열거도 했습니다만은 학교폭력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는 정부기관 학교 청소년 단체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조사목적이나 조사대상, 조사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7일에서 4월 11일 경찰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 270개교, 중학교 80교, 고등학교 180교에서 학교폭력 문제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9,916명, 학생 8,263명, 교사 1,096명, 학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학생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은 46.1%, 교사는 47.8%, 학부모는 53.6%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11.5%로 그중 중학생이 15.6%, 고등학생 9.3%, 남학생은 13.7%, 여학생은 8.6%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양상을 보면 폭력이 45.3%, 금품갈취가 35.1%, 폭력 및 금품을 갈취 당한 경우가 1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지 중·고등학교 김한태 교장의 발표에 의하면 구체적인 폭력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옥수여중 3학년 16살 여중생이 가해학생 5명으로부터 집중구타를 받아 사망한 사건이 2000년 10월 30일에 있었습니다.

부산남고 1학년은 평소 괴롭힘을 당하다 40여 차례 친구라는 영화를 보고 가해학생을 칼로 죽인 사건이 2001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강남 여중생이 괴로움에 지쳐 가해학생 이름을 유서에 남기고 투신자살한 사건이 2002년 4월 9일에 있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남중생 14살이 자신과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가해학생을 시험기간 중에 칼로 10차례 이상 난자하여 살해한 사건이 2002년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또, 2005년 3월 14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를 보면 2005년 한해 폭력으로 사망한 학생이 16건으로 폭력으로 숨진 학생이 6명, 왕따로 못 견뎌 자살한 학생이 6명이나 되며, 학내 폭력조직인 일진회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아이들은 폭력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에서도 작년 여자 고등학교에서 집단 패싸움을 피해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예도 있습니다.

한국교육신문 2006년 3월 6일자 보도내

용을 보면 2월 21일 영국의 주요 언론에 서는 소피 아모르라는 23세의 여성이 12년 전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지방 교육청 토파인교육청을 상대로 제소를 한 내용은 지방교육청은 안전한 교육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7년 동안 교내폭력, 왕따입니다, 영어로 불링(bullying)이라고 하죠, 나의 아동기가 파괴됐으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토파인교육청은 그 제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공인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우리 충청북도에도 3년간 약물중독과 성폭력 사고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사 내 학생의 성추행 사건 1건이 발생하여 가해자를 해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흡연은 2004년도는 6.97%, 2005년도 6.83%이며, 폭력도 2004년에 563건, 2005년에도 380건으로써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흡연과 폭력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안전하고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폭력의 감소 및 근절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두 번째는 흡연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을 세우고 있는지.

세 번째는 최근 학교경찰제, 스쿨폴리스입니다.

스쿨폴리스 운영 현황 및 확대방안, 또는 지금 5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쿨폴리스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

또,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학생상담지도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복지사를 통한 컨설팅, 이것이 많이 효과를 보지만은 예산상의 문제로서 더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발표도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사를 통한 학생지도의 효과는 어떠한지, 또는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경청하신 교육위원님, 또 집행청 관계관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전국 233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3년에 1,523억원에서 2004년에 1,984억원, 그리고 2005년에 2,515억원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정보화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등 6개 부분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2005년도 시·도별 지원비율을 보면 예산대비로 경기도가 0.85%로 가장 높고, 서울시가 0.69%, 전남이 4.3%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충북은 0.18%로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가 1년에 112억원을 지원하였고, 부천시가 100억원, 성남시가 88억원, 용인시가 71억원 등 비교적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비보조금 지원이 최하위인 경상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포항시, 경주시, 칠곡군이 보조금 지원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포항시가 재정자립도가 46.1%나 되는데 교육비보조금은 고작 6억 5,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경주시시는 자립도가 32%인데 3,000만원을 지원했고, 칠곡군은 자립도가 31%인데 2,800만원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되는 봉화군이 5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도인 충청남도의 경우 천안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학생 1인당 보조금은 4만 3,0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는가 하면,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는 보령시가 학생 1인당 12만 2,000원을 지원했고, 태안읍은 학생 1인당 10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의 격차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재양성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보조 현황은 어떤지 질문을 드립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두 해 동안 충청도내 시·군 자치단체별로 지원 받은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이것이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현황을 알려주시고,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일 제18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청주, 충주 시내 일반계고등학교 교원의 근무가산점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계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우대방안과 학교장의 임용제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 인재육성

을 위해서 가능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금년도에 46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별지원금 9억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억 9,600만원보다 2억 1,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비해서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증액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학급당 70만원 기준으로 3단계로 차등 지원되고 특별지원금의 용도는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과교육 활동, 지도교사 초과근무수당, 특근매식비, 지도자료 개발, 연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대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 대입성적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서울대학교 합격자 순위를 보면 1위가 세광고등학교, 2위 충주고, 3위 신흥고, 그리고 청석고, 대성고 이런 순이라고 그러합니다.

상위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 4월 16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동해의 대규모 해역에서 수로측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배타 경제수역이 대폭 포함된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보고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한·일 간 EZ 경계선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 동안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는 다케시마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억지를 부려 왔습니다.

2005년 3월에는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기한 것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입니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나선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독도를 우리 땅으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이 수로측량을 감행한다면 정부에

서는 실력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외형상으로는 작은 바위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중요성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독도의 가치는 첫째로 지정학적인 중요성입니다.

독도는 동해상의 중심지점으로 동해 해상권 장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라시대 장보고 장군이 완도를 중심으로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로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독도 인근 해역이 무한한 자원의 보고라는 점입니다.

특히, 미래의 에너지 자원인 하이드라이드가 다량으로 매장된 것이 해양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업적인 가치입니다.

이곳은 한류와 난류성 어족들이 풍부해서 미래의 우리의 식량의 보고입니다.

이런 소중한 우리 땅을 꼭 지켜야 하는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 간의 우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문제가 생길 때만 야단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사이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명확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 독도 교육자료 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 및 교사들이 정확하고 상세한 교재를 만들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독도의 소중함과 독도 사수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 치솟으면서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 모든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운동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 운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마

인드까지 완전히 뜯어고치는 실질적인 혁신운동, 따라가는 혁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런 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을 보면 대낮에도 전등이 환하게 켜진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컴퓨터를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에너지를 10%만 절감해도 엄청난 외화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걱정을 합니다.

요금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세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지도하고 계신지.

첫째로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전기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초·중·고등학교별로 연간 평균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 전기요금이 학교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충 몇 %나 되는지.

또 실제로 쓰지 않는데도 소비되는 대기전력-일명 에너지 흡혈귀라고 합니다-이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어떤 대책을 세

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간에 협의 중인 단체협약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감과 전교조 단체협약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학교장 자율경영의 침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32조 1항을 보면 교원이 교육활동시 학생을 인솔하여 출장하는 경우 출장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하되, 감액 지급할 때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에 의거 학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49조 2항 6호를 보면 학교에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학기당 10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학급운영비는 개산급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학교운영이 끝나는 학년말에 정산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예산 형편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사항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단체협약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운영경비가 편성된 후 사용계획이 수립되면 학교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계법규에 따라 개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산금의 지급은 국립 및 국립초등학교 회계규칙 제36조에 의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학년말 정산은 회계규칙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분명히 어긋납니다.

두 번째로 업무특성 파악의 부족으로 행정업무로 취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문 22조를 보면 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중식지원, 성금, 안전공제회, 전입학 업무, 교과서 선정 및 배부 이외의 수납 및 정산업무, 제증명발급, 우유급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정수기나 물탱크 관리, 시설관리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협조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33조 5항 및 사무관리규정 제5조에 보편은 업무분장은 분명히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체협약으로 되어야 할 성질인지.

그 다음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 등을 안고 전학하는 경우 단순히 행정절차 처리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은 담임도 모르는 사이에 전학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보건 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특히, 많은 현안사업이 학생들과 긴밀하게 유대를 통한 가운데 발굴이 되므로 학생 위생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2조 2항 5호에 보면 외부강사, 특기·적성교육 실시 시 강사계약, 수당지급 등 금전 관련 업무는 교사에게 부과 금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강사 관리까지도 행정업무로 취급한다면 이게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특기·적성 강사와의 계약 후 학생교육을 위한 수업안 및 참가학생 호응도 관리 등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수당이 지급되는 절차를 감안할 때 업무의 비중이 금전적인 업무가 우선이 아닌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어느 쪽 소관인지를 다시 한번 생

각해야 되고, 특히, 외부강사의 관리는 본 위원 생각에는 교무실 소관 업무이지 외부강사 관리까지 행정실 업무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시행 중인 사항, 또는 불필요한 협약 내용으로 업무 착오를 초래하는 사례가 34조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더 세밀히 검토돼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뭐니까, 교무실 업무가 행정업무로 취급되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협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교육위원입니다.

2002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제4대 교육위원 활동 기간 동안 저는 해마다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질의와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도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육행정, 교육행정 기관과 언론과의 바른 관계 정립, 그리고 교육 구성원의 인권 존중이라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왔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들의 처리과정 중에 드러난 집행청과 학교의 대응태도를 분석하고 지적함으로써 도교육 행정의 개선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지적했던 학교사안들은 2002년도 하반기 제천 명지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 2004년도 상반기 옥천 안내초등학교 교장의 전횡사건과 충북 여중의 여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사건, 2005년도 상반기 덕성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하반기 청원 부강초등학교 교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올 3월에서야 수면 위로 떠오른 2005년도 청주 남중학교 교치에 의한 학생 구타 사건, 4월에 아동 인격을 모독해 온 충주 칠금초등학교 교사 사건, 그리고 최근 5월 진천 문백초등학교 영양사가 점심시간에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동이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인 사건 등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건들은 대부분 1차 언론보도가 되었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

교 차원에서의 조사와 행정적 조치를 거친 것이며, 본 위원은 집행청에 대한 자료요청, 당사자 증언과 외부 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진상 규명에 보다 근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이한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인물들에 의해 전개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마무리 된 위 사건들의 처리과정과 결과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 양상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행정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 보며 도 교육행정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의 전향적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질문사항에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4월 17일 학교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진 충주 칠금초등학교 교사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못 만들었다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숴버리거나 시험지를 구겨버리고 아동들의 머리와 등을 수시로 때리고 소리를 질러 한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여러 학부모들이 댓글을 통해 수년 간에 걸쳐 해당 교사로 인해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왔음을 토로한 사건입니다.

충주교육청은 지난 5월 10일 해당 교사에 대한 가장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학교 내부적으로 해당 교사는 학부모

의 요구에 따라 담임을 포기하고 2학기 전출을 기다리는 2달간의 병가를 내고 유급휴가 상태에 있다는 학교 관계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항과 관련하여 2차에 걸쳐 충주교육청의 보고를 받았지만 중요한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통해 사태 보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학교문제가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는 문제에 학부모의 발언이 쉽지 않고, 또, 의견을 내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권위적 교육풍토, 문제 유발 교사에 대한 온당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솜방망이 교육행정, 그리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 사안을 유아무야 넘기려는 교육공무원들의 축소, 은폐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자초지종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서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전 전국적으로 보도된 진천 문백초등학교 영양사 사안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바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해 덕성초등학교 전 교장, 교무부장, 교사 등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이를 그대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청주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과 교육장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교육부에 보고한 동일 문건의 일부를 누락시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 코치 아동 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킨 부강초 전 교장 및 그 보고를 그대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청원교육청 관계자 및 교육장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감사 시 저는 도내 학교별 수학여행비의 사용내역을 자료 요청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 충청북도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둘러싸고 학교와 여행사 간의 뒷돈 거래가 관행화되다시피 하고 있음이 전국 언론에 보도되어 망신을 자초한 일이 있습니다.

학교 자치 시대를 맞아 단위 학교에 대

폭적인 예산 배정과 자율권이 주어지는 책임경영제가 되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부패 발생의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봅니다.

최근 2006년도 5월 학교 수학여행 문제가 다시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장과 여행사 간의 리베이트가 학생 수학여행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실제 5월 10일자 발행된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짐작되는 충북에서 온 운전기사의 말이 인용된 바, 교육감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실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와 같은 비리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자입찰제 도입은 우리 도에서 몇 %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근거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시정을 요구하였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계속 받아왔음에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자모회에서 학교측에 찬조금 부담을 호소하는 글들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불식시킬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지속되는 요구에 힘입어 학교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작년 말 공급원가로 대폭 인하는 것이 현실성 있게 논의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에 더하여 상수도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청도 제기되고 있으며,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가스비도 산업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언제부터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료 감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와 총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현재 이 비용이 급식비에 포함되어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지, 학교 예산에서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료를 산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실제 예산절감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인 속성으로 인해 남의 아픔이 머지 않아 나의 아픔의 원인이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펼쳐져야 하는 근거도 실상 공동체의 이 같은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월말 학교 비정규직 사

서 계약을 둘러싸고 임금 책정의 기본 일수를 삭감하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배정된 인원을 도교육청에 반납하였다가 결국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 시행된 학교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 일수인 365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해당 직원은 결국 작년보다 크게 후퇴한 열악한 조건인 연 245일로 계약을 마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질의를 위해 우리 충청북도 전역의 비정규직 계약 상태를 자료요구하여 파악한 결과, 교육부 권장 표준안에 못 미치는 열악한 조건으로 계약한 비정규직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교육행정의 치부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2월말에서 3월초에 걸친 학교 비정규직 계약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자실 문제.

기자실 문제입니다.

어제 5월 17일자로 경찰서와 출입처 기자들 간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차원

에서 언론사에 제공되는 홍보비의 삭감, 기자실 춘지 관행 불식 등을 위해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의 기자실 명칭이 브리핑룸으로 바뀌고 브리핑을 위한 탁자와 의자들이 기자실 한 모퉁이에 배치된 정도입니다.

지난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시 브리핑룸으로의 전환 예산이 다소 책정되어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얼마 전 개조된 기자실에 들렀을 때 행정감사 시 브리핑 시설의 배치를 앞 부분에 하겠다던 부교육감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놓인 커다란 소파와 방 한 구석에 웅색하게 놓여 있는 브리핑용 시설물들을 보면서 무늬만 요란한 브리핑룸으로의 전환에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브리핑룸으로 전환한 후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몇 차례나 브리핑을 하였는지 이용실적 및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002년 이후 학교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다친 경우 이를 보상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안전공제회의 이용 실태에 대해 분석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공제회의 존재를 안내, 공지하기를 독려해 왔

고, 예·결산서 분석을 통해 방만한 단체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2006년도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안전공제회는 어떻게 안내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답변해 주시고, 올해 단체 운영의 재원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2006년도 예산 및 운영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2005년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도청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총 얼마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청에 파견한 교육협력관이 그간 수행한 업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조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초등학교 앞 문방구의 사행성 오락기는 교육청 답변에서와 같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또한 최근 문을 열었다는 울랑동 특급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신흥고등학교는 호텔로 몰려드는 차량과 호텔 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인한 학습장애가 언론에 보도된 바, 여러 해 전부터 제기

되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비했다고 봅니다.

향후 호텔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설 경우 한층 악화될 것이 뻔한 이 학교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에 거론한 도 교육청의 주요한 고질적 병폐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형태로 고쳐질 수 없으며, 교육 공무원과 교사들의 전향적인 의식의 전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충청북도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의 의지 여하에 따라 많은 부분 개선될 수도, 종전을 담보하거나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공교육의 활기와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굳은 신뢰를 받는 데서 시작된다고 확신하며 질의드리오니 이에 부응하는 교육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심도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

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질문의 요점에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8일 (목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고규강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계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법무규제담당관 워크숍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부교육감님 및 양 국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고규강

● 교육감 이기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와 조언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걸 맞는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관심·사랑·화합으로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가족 모두의 뜻으로 알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신 교육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부교육감과 관련 국장 등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교육위원님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훈 교육위원님께서는 대입수능시험장소 지정과 관련하여 보은, 옥천, 영동 대입수능시험 지구에 보은 지역 수험장소를 신설할 용의와 대입수능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수능 지구 현황은 제47 청주지구, 제48 충주지구, 제49 제천지구, 제50 옥천지구 등 4개 지구입니다.

대입수능시험장 설치 현황은 제47지구 청주지구 16개 시험장, 제48지구 충주지구 5개 시험장, 제49지구 제천지구 4개 시험장, 제50지구 옥천지구 4개 시험장 등 4개 지구 29개 시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입수능 지구별 시험장 운영 경비는 청주지구 16개 시험장 1억 9,864만 8,000원, 충주지구 5개 시험장 5,427만 5,000원, 제천지구 4개 3,440만 7,000원, 옥천지구 4개 시험장 2,995만 7,000원입니다.

거주지역에서 수능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이동하는 시간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같은 학교 학생이 한 시험장에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어느 특정지역에만 수능시험장을 확대 설치할 경우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수능 시험장을 확대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응시하지 못하는 원거리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 수험생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농촌지역 학생수의 급속한 감소로 인

한 장기대책과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학생수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도내 학생수 급감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인구추계 용역자료에 바탕을 두어 2020년까지 저출산에 대비한 장기 학생수용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장기 학생수용 계획에는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의 택지 개발에 따른 향후 학교신설 계획 재검토 및 학급 규모를 축소하여 잉여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하여서는 1면 1교, 병설, 통합 운영 학교 등을 제외한 100명 이하의 본교, 20명 이하의 분교장에 대하여 장기 수용계획에 의거 통·폐합을 추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는 2005년부터 시행하여 2008년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대상은 청소년단체에 등록을 필하고 3년 이상 직접 지도한 지도교사로서 4년차부터 5년간 부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제도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꾸준히 지도해 온 지도교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제입니다.

많은 유능한 지도교사 확보 차원에서 지도교사 경력 문제는 청소년단체 업무 담당자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원님께서 대학진학과 공교육 내실화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학진학과 공교육 내실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입 배정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학생, 학부모 및 교사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고입전형 방법과 청주시 일반계고등학교 배정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 결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현행안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6.95%로 가장 높았으며, 배정 방법에 있어서도 현행 학교배정 방안 및 배정비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사립교 간 격차는 여학생의 경우 거의 없으며 남학생의 경우 일부 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으나 우리 교육청 고입 배정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보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지원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학년도 대학입학 실시 이후,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변화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우수 학생 10% 우선 선발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계고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질과 적성보다는 성적이 낮은 학생의 입학, 그래서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와 직업교육이 이류교육이라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직업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 5월 12일 발표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과 2005년 정책 연구된 충청북도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에 의거 고용 가능성이 높은 직능지향 열린 직업교육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첫째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여 소량 특성화 인력 양성 체제로 체질을 개선하고, 둘째 실업고,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약 학과 운영을 확대하며, 셋째 교육주체를 다원화하여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계고 구조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 4개교를 점차 확대하여 2010년까지는 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 실업계고는 단순기능 위주의 직업교육을 지양하고 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기초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겠으며 통합형고 등의 운영체제 개편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충청북도직업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교육위원님께서 스쿨폴리스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스쿨폴리스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스쿨폴리스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폴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배움터

지킴이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배움터지킴이로 사용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수는 2005학년도에 3개교, 2006학년도에는 5개교이고, 배움터지킴이 요원은 운영 학교당 2명씩 총 10명입니다.

배움터지킴이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시범실시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각 학교의 특별실 부족으로 배움터지킴이 요원의 근무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에서는 학생의 인권침해, 학교의 정보누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학교 5개교는 근무공간이 확보됩니다.

다음은 배움터지킴이 운영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학교에 연간 1,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교육경

비는 2004년도에는 학생 1인당 1만 2,700원 정도로 청주시 7억 4,600만원, 음성군 5억 600만원, 충주시 5억 300만원 등 31억 921만 3,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학생 1인당 1만 9,500원 정도로 청주시에는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의한 지원 10억원과 학교 숲 조성 및 학교운동장 우레탄 조깅코스 등 기타 지원으로 10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20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음성군 7억 5,200만원, 충주시 6억 3,800만원 등 47억 5,297만 6,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은 2004년도에는 청주시, 2005년도에는 제천시, 2006년도에 충주시가 시세수입액의 2%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는 청주시에서 10억원, 2006년도에는 청주시에서 14억원, 제천시에서 6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청원군에서도 2006년 3월 24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지난 2월에는 시장, 군수 및 의회 의장에게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 협조요청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에게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과 상수도 사용을 사용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수도급수조례 개

정 등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경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도 도청 징수 학교용지 부담금 총액 및 교육협력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 징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현황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총 211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그중 2003년 서원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용지부담금으로 31억 2,191만원을 전출하였고, 2005년 충청북도 본예산에 금천중, 죽림초, 사천초 신설에 따른 용지부담금으로 63억 6,052만원을 편성하여 전출할 예정이었으나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 판결로 인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부담금 환급을 감안 전출 보류를 우리 교육청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 3월 31일 부담금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008학년도부터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중 충청북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75억 9,085만원의 전출을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

원 확대 요구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에 부담경비 전출을 요구할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각종 회의 시 계속하여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협력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관의 주요 업무는 도청의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조정입니다.

주요 성과라면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인 것이고, 구체적 성과로는 송절고 부지 확보, 오창산업단지 내 학교수용계획 홍보, 대농단지 내 학교 설립계획 자문, 신설학교 토지 매입비 전출 요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실시, 정책홍보 시설 공동 사용, 인도네시아 반텐 주지사 방문 및 일본 야마나시현 학생 방문에 따른 협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는 5.31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먼저 성영용 교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원 운영과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단위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영재지도 인적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단위 교육청의 영재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대책과 이의 해결 방안으로 대학교수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8개 군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인적자원 확보 대책으로는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사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73명을 연수하였고, 2006년도에 86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원인사 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적자원 확보 대책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학교수 활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학교수의 초빙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과 예산 확보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학교수를 초빙할 경우 시간당 최소 5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영재교육 진흥에 뜻을 같이하는 보다 많은 교수들이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은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7년도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주로 방학 때 실시되는 특별 보충과정을 지원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지역 출신의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 이수자가 출신지역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대현 교육위원님께서 학부 모의 욕구와 인사제도, 그리고 교육부의 시·도평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

다.

먼저, 학부모의 욕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 시범 학교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5년 11월 공모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3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목적은 교원평가를 통하여 수업지도 능력 등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있고, 운영 성과는 교원능력 및 전문성 신장 등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이 현재 진행 중이고,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수정·보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평가를 둘러싼 이해 집단의 압력 등으로 시범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받을 우려가 있어서 시범운영의 성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2006년 9월 제공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부적격교원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격 교원이란 중대한 비리, 범법행위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이며, 부적격교원의 색출은 학부모, 지역주민, 학생 등이 제보하거나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 또는 학교장의 자체인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사안을 접수하여, 접수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부 심의위원회와 충청북도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한 후 퇴출 여부를 1차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적격교원 대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부 심의위원회 규칙과 충청북도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2006년 3월 27일자로 공포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금년도 5월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승진 후보자명부 작성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2005년 1월 31일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2005년도에 발령받지 못한 그러한 대상은 중등에만 교장승진후보자 18명, 교감승진후보자가 2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6년 3월 1일자로 교장 7명, 교감 3명이 승진되었으며, 미발령 대기자는 교장 11명, 교감 2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대기자 중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 포함된 자는 오는 9월 1일자 인사 시 자격 후 취득자에 우선하여 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및 본청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혁신팀을 구성하여 전문직위제 도입, 본청 전입공모제 운영 방안, 기관별 적정 정원 배정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일반직공무원 관련 인사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한시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혁신담당조직의 정규직제화를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청 직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한 우리 교육청의 준비 현황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

이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997년 이후 5회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05년도 지방교육혁신 평가에서도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는 그 동안 시·도교육청 평가, 지방교육혁신 평가,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 교육정보화 평가 등 각종 평가를 개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중복 평가로 인한 행정 낭비 및 비효율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대상 평가를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로 일원화하여 매년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11월중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재정지원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혁신 및 주요 정책분야 1,000억원 및 재정 운영성과 분야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차등 지원하게 되며, 2007년도 상반기에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적에 따라서 800억원을 별도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여 충북교육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착실하게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본청 조직진단을 통해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성과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시·도평가 업무에 대비하도록 하고, 혁신역량 및 혁신활동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시 권역 교육청의 분야별 자체평가서 및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각 부서별로 평가대비 정보자료로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3월에는 2005년도 전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 혁신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및 각 과별 2006년도 평가 대비 중점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교육청의 강점과 특색은 더욱 부각시켜 나가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는 과감하게 벤치마킹하여 조기에 충북화,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개선 또는 권장이 필요한 사항은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 과별, 담당별 주관분야 책임제를 실시하여 각 부서별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 전 직원의 평가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중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편람이

확정되면 혁신분야, 주요 정책분야, 재정 운영성과분야, 고객만족도 분야 등 4개 대상 분야에 대하여, 타 시·도 대비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중점 추진전략 수립과 예비 자체평가 실시, 평가영역별 진도관리, 부서별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평가 지표에서 요구하는 각종 교육시책과 특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200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다시 한번 충북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떨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서는 고등학교 학력증진 방안과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력증진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학년도에는 서울대 합격자가 일부 사립고, 특히, 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어느 한 특정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공·사립 고르게 분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학년도의 입시결과만으로 공·사립 간의 학력격차가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현상도 2008학년도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 도입으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느 특정대학 이런 거보다는 의대, 한의대 등의 학과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서울대 합격자수로 학교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4년제 대학 진학률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어느 특정학교에 우수학생이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독도 지키기 및 역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독도의 소중함과 독도 사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독도 교육자료 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 시정을 위한 교육용 자료집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개발된 교육부의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 질

문하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절감과 관련, 그리고 기자실의 브리핑실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하여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제도개선, 부패신고의 접수·처리기능 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반부패 청렴윤리의식의 확립 등입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동 행위신고를 위한 열린 감사방 등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속 교직원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하여 비리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보완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하여 3월 29일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6월중에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년초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실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 실시 2주전에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내실있는 수학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충북에서는 수학여행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와 관련하여 물품구입이나 시설공사 등은 전 학교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학여행은 여행 일정, 견학지 등과 관련하여 여행 근거리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전자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담당자의 현지답사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안전사고 등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유익한 수학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와 상수도료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전기요금은 2005년 6월 17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2005년 12월 7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여 현행 Kw당 89원 5전에서 74원 61전으로 마진 없는 공급원가 수준인 16.2%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여 2005년 12월 28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은 시·군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용 또는 업무용으로 적용받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1~4단계의 누진요금 체계 중에서 누진 적용을 하지 않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하거나, 교육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업종을 신설하여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하는 조례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가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답변드려야 하나 짧은 시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어서 시 지역 4개교, 군 지역 2개교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여 답변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소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는 LPG라고 불리우는 석유액화가스라고 불리우는 천연액화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LNG는 청주와 충주지역 일부 학교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의 학교에서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NG는 1입방미터당 일반용 531원, 산업용 496원으로 산업용이 35원 정도 저렴하며, 청주, 충주지역 25개 학교에서 연간 25만입방미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때 연간 875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PG는 도내 349개교에서 연간 96만 8,000입방미터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사용료는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학교급식용은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가정용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고 있어서 별도의 예산절감은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가스료는 전기료, 상수도 요금, 각종 기기 점검 수수료 등과 함께 집행함에 따라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기자실의 브리핑실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언론에 균등한 취재기회를 제공하고자 개방형 브리핑실 설

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 2월 브리핑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능성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여러 가지 배치 방법을 고안하고 실내 건축업자 의견을 구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브리핑 공간과, 면담공간, 기사작성 및 송고 공간으로 브리핑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브리핑 공간을 중앙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출입문이 사무실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뒷 배경이 되는 스크린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브리핑 과정에서 출입자들로 인한 산만함과 자연 조명을 받을 경우 역광으로 인해 화질이 고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광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곳으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브리핑실 설치 이후 본청 각과의 언론 브리핑은 물론,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는 유관 단체에도 개방하는 등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브리핑실 사용은 금년도 3월 15일 시설과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5월 15일 진천 문백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의 학교급식 관련 기자회견까지 2달 동안 교육위원회 1회, 본청 각과 13회, 기타 2회 등 모두 16회의 이용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사진기록과 함께 이용 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91회-제3차 본회의]

위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브리핑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46분이 지났습니다.

14분간 정회를 한 후에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훈 교육위원님께서 연구 시범학교 운영 여비와 전자 결재 시스템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구 시범학교 운영 여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연구 시범학교 운영 여비 전액이 삭감된 사유로는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48교 운영 보고회 참석 여비 264만원만 책정한 사유는 당초에 1인 여비기준을 5만 5,000원으로 계상하여 청주, 청원 등 근거리와 단양, 영동 등 원거리를 적절하게 감안하여 2명 출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예산수립 시 교육과학연구원의 당초 연구 시범학교 운영 여비 요구액은 1,134만원입니다.

예산삭감에 따른 연구학교 지도 방안으로는 연구사 개인 기본 여비를 포함하여 운영 후 부족예산은 추가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실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2003년부터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학교 전자결재를 보급하여 2005년 현재 157교로 전체 학교수 대비 34% 수준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과 충남교육청이 학교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교육청은 1,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각급 학교에 전자결재 시행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전자결재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교원업무 경감에 미치는 효과로는 결재대기 시간 단축 및 공문서 수발신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해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자결재 시행 초기단계에 학교 구성원들의 사용법 미숙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자문서와 수기문서를 병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과 안내자료 보급으로 사용자의 마인드 제고 및 전자결재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 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전자결재 희망학교 192개교에 추가 보급하여 전체학교의 약 74%수준까지 학교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2007년까지 전 학교에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세부 직업별 분포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운영 현황과 교원자격 연수여비, 그리고 환경개선 담당공무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의 세부 직업별 분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11개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총 163명으로써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공무원이 35.6%인 58명이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64.4%인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세부 직업별 분포는 가사 29명, 도·소매업 19명, 농업 10명, 시민단체 임원 9명, 건설업 8명, 공무원, 회사원, 음식점, 학원장, 서비스업에 각각 4명씩이며, 기타 제조, 운수, 금융, 보험, 부동산, 의료, 종교단체에 10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임해수련원을 비롯하여 6개의 야영장이 있으며, 지난해 이용 현황은 603개 학교 및 단체와 3만 4,600여 명의 학생, 1만 3,000여명의 교직원이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야영실시 대상 인원은 초·중·고 1개 학년씩 6만 49명으로 2005년 2만 189명이 임해수련원 및 학생 야영장을 이용하여 34%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66% 수준이 사설 수련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별 야영장 및 임해수련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야영장별 각종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이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야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야영수련 지도사 및 청소년 관련학과 실습생을 확보하여 야영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자격 연수여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연수여비에 대한 예산편성 단가는 다음과 같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수여비는 근무지 내와 근무지 외로 구분이 되고 근무지 내는 1만원, 근무지 외는 비숙박과 숙박으로 구분이 되어 비숙박은 3만 5,000원, 숙박은 5만 5,000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 집행 시에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지침,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이미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 담당공무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실시여부 및 대상 공무원의 직종에 대하

여 말씀드리면,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는 2005년도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실내공기 질 관리업무를 추가하면서 2006년도부터 적용·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 및 지역교육청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1월 18일까지 보건직공무원 전원에게 6회에 걸쳐 3일간씩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 위생관리자 지정 문제로 제기되는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업무는 건강상 위해 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업무 추진과 관련된 학교환경 위생관리자 지정에 따른 학교의 사무분장은 학교의 자율성 부여와 자치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으로서 담임교사의 협조와 보건, 환경위생, 시설관리 업무가 상호 연관되는 업무임을 감안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 아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2006년 4월 21일

추가 공문을 시달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환경 위생관리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일상 점검 사항 중 교실 내 환경위생은 담임교사가 점검하고, 교실 외 환경위생은 동 관리자로 하여금 일상점검 실시와 더불어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된 사항은 도 및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점검 기구를 확보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해소와 업무경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원님께서 유치원에서의 부적응 유아와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전담과목 담당교사 제도, 그리고 청주교육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치원에서의 부적응 유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의 부적응 유아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심리상담기관의 판별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지원되어 부적응아가 조기에 발견·치유되고 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아직 유치원의 요구가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유치원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기관의 판별을 요하는 부적응 유아의 수를 조사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전담과목 담당교사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교원 배치 기준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교과전담과목 담당교사의 정원은 621명으로 2006년 3월 1일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47명을 배정받아 정원의 72%를 배치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전공 교과목이 따로 없으므로 각 교과목별 지도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교과전담 교사로 배치하고 있으나 학교에 따라 교과전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교과전담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전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주교육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학년도 교대 입학생부터 장학금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려던 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 대학 진학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대학교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수급 전망과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수와 장학금 지급 전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교육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흡연 방지 대책, 사회복지사를 통한 학생상담지도 실태, 학생지도 효과, 학생상담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6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도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기본 방향을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신고·대처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의 최소화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대책으로는 전 교원 및 학생, 학부모에게 집중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청 및 단위학교 내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례화, 학교폭력 대처에 따른 보상 및 조치 강화,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하여 단위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시스템 작동을 강화하며 학교 밖 폭

력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구역화 추진,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사회운동 전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치료시스템을 마련하여 범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사업으로는 학생지킴이 제도, 학교폭력예방 시범학교 운영, 감동생활지도 TFT 생활지도위원회 컨설팅,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 인성교육과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역별 교외생활지도위원회 운영, 학교폭력예방 대책 협의회 운영과 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찬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가·피해학생 선도·치료 및 보호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흡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흡연 음주 예방교육 지도교사 연구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흡연·음주에 대한 실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흡연·음주 예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호소력 있는 스타들을 참여시켜 흡연·음주의 폐해를 홍보하는 청소년건

강 테마콘서트도 계획하고 있으며, 흡연 예방교육 담당자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를 통한 학생상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를 통한 학생 상담은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원으로 6개 시범학교에 각 1명이 배치되어 일반학생과 부적응학생을 위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범학교 현황은 아래 참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운영 효과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적 접근성 강화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지도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사회복지의 실천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마련과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는 충주 칠금초등학교 사건 등의 문제점과 사행성 오락기 관련, 그리고 신흥고 학교 주변 환경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

셨습니다.

먼저, 충주 칠금초등학교 사건 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칠금초등학교 사안에 대한 전개과정과 처리결과는 이미 보내드린 자료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금초 사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담임교사가 성실하지 않거나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정도를 벗어난 지도방법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교사의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였고, 반성과 자숙하겠다는 해당 교사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 문백초등학교 영양사 관련 사안 발생은 일부 학생들이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편식하는 경향이 있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한 편식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

지 않고 강압적으로 지도함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식하지 않는 습관지도가 중요하며,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스턴트 식품과 과자류 등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편식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영양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편식에 대한 문제를 학생 스스로 인식하도록 편식지도 방법을 개선하고, 편식지도 시 교육적이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 실시하도록 학교급식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주 덕성초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해당 교사 2명은 이미 타 학교로 전보 조치하였으며, 당시 교장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인사조치 하였습니다.

청주교육청 담당과장은 일선 학교장으로 인사조치 하였고 교육장과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처분할 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강초 성추행 사안과 관련하여 축구코치는 즉시 해임조치 하였으며, 사안의 미흡한 대책으로 문제를 야기한 교장에게 책임을 물어 주의를 요하는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앞 문방구의 사행성 오락기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방구 앞의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자들이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는 단속권이 없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두 대 이상 설치한 경우 무등록 게임장 영업으로 금년도 20건 정도가 단속되었고, 단속 후 다시 설치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사행성 오락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문방구 주인들에게도 교육상 설치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안내장을 보내겠으며, 경찰, 교육청, 학교가 합동으로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고등학교 옆 호텔 신축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고등학교 주변 라마다플라자호텔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건립된 호텔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는 호텔건립 허가 당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학생 등하교 문제와 소음, 기타 부대시설 설치로 인한 학생의 환경저해 요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하여 청주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학생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과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와 접하여 있던 학교 정문을 20미터 이전하였고, 또한 후문을 설치 중에 있으며 학교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청주시 및 상당경찰서에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또한,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야외 이벤트 행사 등을 금지하여 줄 것을 호텔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호텔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호텔개관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훈 교육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보급현황과 옥천군, 청산, 이원지역 공동주택 신축 및 미사용 주택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보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20개 동에 170세대의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제천시에는 4개 동에 30세대(35명 입주), 보은군에는 2개 동에 10세대, 옥천군 청산지역에는 1개 동에 15세대, 영동군에는 5개 동에 39세대, 음성 감곡, 금왕지역에는 3개 동에 33세대, 단양군은 5개 동에 53세대가 각각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제천 청풍중학교에 9세대, 영동 상촌초등학교에 4세대, 황간초등학교에 2세대를 각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청산면, 이원면 등 통근거리가 멀고 거주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 의지 및 신축 가능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청산지역에는 1개 동 15세대의 공동주택에 4개 학교에서 18명의 교직원이 입주하고 있으나, 이원지역에는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에 주택을 임차하거나 청주, 대전 등지에서 통근하고 있는 교직원 중 주택 추가 입주 희망자가 청산지역 9명, 이원지역 4명 등 총 13명이 있어 앞으로 청산, 이원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중 2년 내지 6년 내에 개축시기가 도래하는 7개 동에 대한 주택 개축 시 공동

사택으로 건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청산초등학교 단독 사택 2개동에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사택 부족에 따른 수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옥천, 단양지역에는 원거리 통근자가 많아 공동사택이 78세대가 있음에도 상당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우선 활용 가능한 사택을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희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사택이 부족한 지역에 공동사택 확충 및 노후사택을 개축하여 사택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사용 사택 발생 시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독사택의 활용율이 저조해지는 실정으로 사택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공동숙사의 형태로 개축 또는 증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사택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파악하여 미사용 사택 발생 시에는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노후로 인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택에 대하여는 처분

또는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교육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학버스 안전요원 탑승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6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직원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총 165대 중 92대만이 교직원이 탑승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직원의 책임문제, 출퇴근 시간차 등 사유로 소규모 학교에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보호 및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직원이 탑승토록 지도하되,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교어린이회 또는 학부모 등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직원 보험 일괄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2005년 10월 10일 생명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전체 교직원의 의견수렴과 보험 일괄 가입 희망 여부를 조

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보장액 5,000만원으로 결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의견수렴과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보험을 일괄 선정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보장액도 5,000만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이 74%, 1억원이 24%, 2억원이 2%로 조사되어 5,000만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이 가장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보험과 비교하면 보장액이 1억원에서 교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5,000만원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보험금 납입액이 줄어들어 그 만큼 개인별 자율항목의 사용액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교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금년 1월 6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과 개인별 복지에산액 결정, 보험계약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보험 일괄 가입 등에 대하여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교직

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교육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고유가 시대에 도교육청의 에너지 절약 대책과 2006년도 단체협약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데도 소비되는 대기전력 방지대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20개 품목에 대하여 대기상태의 전력소비가 가장 적은 절전형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에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점심시간, 체육활동 등으로 각 교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전기 제품에 대하여는 전원 차단 조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청주, 충주, 제천시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한 전기료 연 평균액을 말씀드리면 연 평균 사용액은 2,660만원이고,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280만원, 중학교 2,490만원, 고등학교 4,3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청주, 충주, 제천시

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말씀드리면, 평균 9.7%로써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9.8%, 중학교 9.1%, 고등학교는 9.9%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단체협약안 중 학교장 자율경영 침해 사례, 업무파악의 부족으로 행정업무로 취급되는 사례, 시행중인 사항 또는 불필요한 협약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교섭의 대상 범위에는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학교의 여비나 학급운영비 등은 학교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학교 구성원 간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학교예산 편성지침을 통하여 학교별 예산사정 및 구성원 간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정하게 편성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원노조와 2006년도 단체협약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비지급, 학교운영비 집행 등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나, 업무 특성 파악의 부족으로 행정업무로 취급되는

사례, 이미 시행중인 사항 또는 불필요한 협약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례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의·조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서는 비정규직 계약 관련, 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계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3,597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로 약 411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참고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창의적이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학교 경영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인건비 등을 학교회계 이양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서 직종의 경우 총 75명 중 서원고 외 8개교가 275일 또는 245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당사자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재정 형편과 업무량 등 학교운영 전반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

하는 단위학교 자율경영 책임제 하에 학교장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국가·사회적인 문제로 정부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자치단체 등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비정규직 운영의 기본 방향, 처우 기준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7월까지 확정하고, 2007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법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어 향후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교육청에서도 향후 정부에서 마련한 비정규직 대책을 충북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비정규직이 충북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 홍보 및 재원현황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에 대한 안내문

을 새학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6일자로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안전공제회 코너를 개설하여 정관 및 규정, 보상금 신청 요령, 안전교육 및 참고자료를 탑재하여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재원현황을 살펴보면 회비수입 2억 2,842만원, 보조금 3억원, 수익사업 4억 9,980만원, 잡수입 1억 6,730만 1,000원, 이월금 39억 6,000만원으로 총 51억 5,55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액이 점차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액 5억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회비수입 2억 4,000만원으로는 3억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 납입하는 회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등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소방시설관리업 계약 기관을 2005년 107교에서 2006년 350여 교로 확대하여 순이익을 2005년 1,762만 9,000원에서 2006년도 2억 5,096만원으로 크게 증가토록 하여 재정 자립기반 조기 구축

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청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할 것인지 정회를 했다가 할 것인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남훈 위원 의석에서 “계속 진행하시죠”)

● 의장 고규강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수 위원 의석에서 “12시가 가까운 데 휴회했다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이 생각됩니다.”)

● 의장 고규강

또 다른 위원님.

(성영용 위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그럼 지금 2시에 교육감님이 나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의장 고규강

예, 예.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금 12시에 정회를 해서 언제 저기한다는 이

야기인지요?”)

● 의장 고규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10분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한 질의 응답을 하고서 식사를 하는 방법하고,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응답은 3시 반부터 하는 방법, 계속적으로 하다가 교육감님 질의·응답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 방법.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 의장 고규강

예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아니, 그런데 왜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론을 하시는지요?”)

● 의장 고규강

아니 지금 휴식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아까 이기수 위원님은 다시 점심시간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겁니다. 휴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논의하시죠.”)

(김남훈 위원 의석에서 “휴식을 하게 되면 이제 1시에 정회를 하게 되는데 휴식을 하지 말고 정회시간을 당겨서 12시 반이나 40분쯤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

까?”)

● 의장 고규강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계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의석 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훈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남훈 위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고규강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본인의 질문에 교육감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추가 질문하는 것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만 교육감님께서 내 주셨으면 감사하

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대입수능시험 장소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요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같은 학교 학생이 한 시험장에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특정 지역에만 수능시험장을 확대 설치할 경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시험장 지정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다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첫째, 부정행위 방지로 같은 학교 학생 40%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보은지역에만 하더라도 보은고등학교, 보은여고, 보은인터넷고등학교, 보은자영고등학교, 이렇게 4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행정구역상으로는 옥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청산고등학교는 보은지역을 경유해서 옥천에 가야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다섯 학교를 묶어서 시험장을 지정 운영한다면 이 40%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학수능시험 문제를 치른 학생들이 수능을 보기 위한 수수료,

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내 지역에서 보는 사람이나 보은 지역이나 또는 단양지역에서 이동해서 보는 사람이나 이 수수료는 똑같죠?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 **김남훈 위원**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추가경비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한다든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이나 또는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충청북도도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수능 지구를 신설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도 또 한 군대를 신설 지정했어요. 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개가 다 내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

지 않는다면은 우리 충청북도도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이제 보은지역을 신설한다든지 내년에는 단양지역을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경비를 제가 짚어봤는데요, 경비문제를, 한 개 시험장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옥천지역의 경우 청주나 큰 지역 말고 옥천, 단양 이런 지역에는 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00만원 내지 750만원.

이것은 그 소요경비가 750만원 정도 되는데 시험장을 바꿔서 치른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경비, 그러니까 감독관 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더 증가가 안될 것으로 보고, 다만, 시험장을 신설할 경우에 관리관 정도의 경비가 더 추가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장의 1시당 지금 700만원에서 75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800만원에서 8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 학교에 시험장을 설치했을 때는 아마 2,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충청남도, 그리고 전남이 신설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러한 학생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수차례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같은 학교 학생이 한 시험장에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원칙, 그리고 전후 좌우에 같은 학교 학생이 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주지구에 와서 시험을 보는 진천군 학생들이 4개 학교에 172명, 그리고 괴산, 증평지역에서 청주에 와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213명, 이것은 2006학년도 시험응시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충주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는 음성지역 학생들이 3개 학교 해서 311명, 그리고 제천지역에 가서 응시를 하는 수험생이 단양지역에 3개 학교 해서 159명, 그리고 옥천지역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보은군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은고등학교, 보은여고, 보은자영고등학교, 보은정보고, 이 네 학교를 합쳐서 147명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은고등학교 학생이 94명, 보은여고 학생이 48명, 보은자영고 학생 4명, 보은정보고 학생이 1명, 이렇게 해서 147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후 좌우에 한 명이라도 같은 학교 학생이 좌석배치가 되면 안됩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40%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칙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또 노력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후 좌우 40%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능히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청산고등학교가 만약에 보은 지구에 시험장소가 신설된다라고 하면은 청산고등학교도 그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은을 지나가면서 구태여 옥천까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시 조정하면 가능할 것이고, 해서 지금 또 교육평가원과 상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험 지구는 교육평가원에서 관여할 문제지만 시험장소에서는 교육평가원에 하등의 권한이 없어요.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시험장소를 설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입시험능력시험 장소 지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평가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

니까? 여기에.

시험지구를 갖다가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험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똑같은 시험수수료를 내고서 어떤 사람은 내고장에 편히 앉아서 시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수수료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 금액 내고, 또 정신적 압박을 받고, 또 경제적 타격이 있고, 이런 면에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단순히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시험장소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음향기기사든지 모든 여건 기구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소요될지 몰라도 지금은 각 학교에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추가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지역이 지금 단양에 이어서 학생수

가 그 다음 작은 학교로 지금 돼 있고, 지금 현재 보은지역에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수보다도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보은지역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청주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이제 11개 시·군에서 다 시험장을 설치해서 보는 방향이 가장 참 좋겠지만은 그 아까 우리 중등과장이 얘기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제시한 안중에는 보은에서 청주로 통학하는 학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시험장소를 우선 바로 보은에서 안 되면은 보은지역, 옥천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청주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뭐 청주에서 본다든지 하는 방안,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까지 포함해서 다시 철저히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감소되는 요인은 모든 교육환경의 여건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작게 말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부분. 시험을 보더라도 내고장에서 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보는 부분. 또는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학생수 위주로다가 교육정책을 펴다보니까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요인 하나가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지금 타 지역에, 인근 지역에도 지금 현재 전체가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이런 기회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학생들이나 지역사회 학부모나 다소나마 위안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해주신다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영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성영용 위원

네, 있습니다.

● 의장 고규강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관계에 대해서 이미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가 개선방안을 2년차부터 부가점을 부여해서 실시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셨는데,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우리 3년간 청소년단체에서 지도한 선생님을 2008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성영용 위원님하고도 대담하는 과정에서 그 3년씩 계속해서 단체를 맡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학교에서 맡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단체를 맡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도 단체를 맡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장학관한테 몇 분이 되고 몇 년 몇 년 통계를 뽑아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계획이 8년부터 돼 있기 때문에 그 8년 실시하면서 3년을 뭐 2년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2년차부터 해도 그 가산점을 다 따려고 그러면 6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의 체제는 8년을 해야지 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지도교사들한테 조그만 도움이라도 줘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좀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버스 안전요원 탑승 현황에 대해서,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안전요원 교직원들이 타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이 잘 지내서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건의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첫째, 선생님들한테 좀 힘이 들더라고 이 부분은 꼭 좀 안전요원 탑승 관계는 100%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향후 문제에 대한 대책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송대헌 위원

예

● 의장 고규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가운데.....

의장님, 이게 추가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는 거죠? 추가 질문은 또 별도 있는 거죠?

● 의장 고규강

예, 별도 있습니다.

추가.....

● 송대헌 위원

질문했던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문.

● 의장 고규강

예, 맞습니다.

● 송대헌 위원

한 가지만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준화 지역 내의 입시제도,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또 이것은 단시간에 교육감님께서 딱 하겠다고, 바꾸겠다고 하는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지금 우수 학생 10% 우선 선발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 가운데 선생님, 학부모 등등해서 설문 통계를 많이 이용을 하셨더라구요, 설문. 이렇게 평준화 지역 내의 입시제도에 어 떠냐 하는 설문 통계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죠. 우리 교사들은 어떤가, 학부모형은 어떤가, 설문하는.....

그러나 이 접근방법, 설문 통계에 대한 것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가 나쁘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둔 그런 학부모 같은 경우는 좀 선발했으면 하는 성향일 테고, 자기 자녀가 성적이 부진하거나 좀 중간 이하 하면, 아, 이거 차별대우 하는 것보다도 현재대로 그냥 문안하게 좋지 않겠느냐, 뭐 65점 몇 % 찬성,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조사하는 것을 설문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평준화 제도의 입시제도에 관한 문제는 설문의 접근방법보다는 그 지역 내의 중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지역 내의 또 학교를 자문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대표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해서 하나의 이 평준화 제도 개선위원회라든가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과연 공립 학교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도 진단해 보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안도 위원회에서 좀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실시해보고 해서.....

평준화 제도의 틀을 좀 교육부가 절대 깨지 않으려고 그래요. 시·도에 하나 있는 것을 깨려고 안 합니다, 도청 소재지 있는 부분은요. 교육부의 아주 확고한 방침이에요.

평준화 제도의 틀 내에서 입시제도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제가 억지를 썼습니다. 상위 10%를 우선 배정하는 것이 평준화 제도의 정신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렁뚱땅 했습니다만은 사실 위배됩니다, 선배정으로 위배거든요. 평준화 제도의 골격은 동일 학구 내에 있는 희망 학생들을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배정하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 배정하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나 동일 학구 내에 있는 학생의 우수 집단에 대해서 학교별로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정신은 평준화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균등하게 하는 제도를 우리 마련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은 당초에 평준화 정신을, 기본정신, 기본방향을 한번 상기시켜겠습니다. 마련할 때의 그 기본방향은 다섯 가지가 되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정신, 또 두 번째,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정신,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 및 실업교육을 촉진한다, 이제 특수 영재교육으로 변화가 되어 갔습니다만은 촉진하는 거, 네 번째,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신, 지역 간에, 끝으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 평준화 제도가 교육적으로 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공사립 간에 여러 가지, 먼저 시스템의 차이도 있지만은 많이 지원이 많이 몰리는 학교, 뭐 20 대 1 뭐 이렇게 많이 몰리는 학교, 또는 그렇지 않고 좀 적은, 학교에 결국 학교에 관심 있는 뭐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다 교육하고 교육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현 사회구조가 명문대니 진학 시점을 따지는 이 차제에서 우수아의 유치 문제가 아주 치열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수가 많이 몰려드는 학교에서는 우수아가 배정되는 확률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통계를 내봐도 알 수 있

는 부분입니다. 중학교의 지금 내신성적만 가지고 1등급, 2등급 가지고 선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는.

과거에 연합고사의 형태도 안 붙이고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입학생의 분포를 내보면 눈에 확 나타납니다.

그러면 평준화 정신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간에, 인문 고등학교 간에 격차를 해소한다는 정신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10%를 우선 배정하는 것은 사실 평준화 제도에 위배돼요. 그렇다면 10%가 아니라 우수 집단을 학교로 고르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중등교육과든지 도교육청에서 고심을 해야 됩니다. 고심을 하고 이런 문제가 처음 올해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벌써 수십년간 되풀이 돼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그런 문제 제기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담당한 중등교육과나 정책 부서에서는 과연 하위 집단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우수 집단을 학교별로 100% 균등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걸 평준화 정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평준화 정신에 부합되는 정신이에요. 아까 배경 설명도 했잖아요. 평준화 제도가 태동한 배경 속에 맞는 학교 간의 격차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 도리가 없다”, 추천 배정

되는데 북불북으로 맡여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현재 제도가 좋다고 한다고 치부해 버리면 백날 가도 안 됩니다.

물론, 제주도는 이와는 다릅니다만은 15등급으로 나뉘서 구간별로 급등 간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자기 학교를 희망한 학생을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추첨 배정을 하는, 그래도 지금 제주에서 아우성들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어제 제주도 제일고등학교 교장 강습 오신 선생님을 만나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선했는데도 불만이 많아 가지고 지난 1년간 거기 제주도 교장, 중학교 여덟 군데, 고등학교 전부 관계관, 학부형 해 가지고 1년간 협의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 우수자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했더니 현재대로 좋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개선을 못 했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우리 현안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공교육의 신뢰와 등등해서 교육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고심하고 더 우리가 위원회도 조직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해서 우수아의 학교별 배정에 대

한 입시제도의 평준화에 대해서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실까요? 교육감님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따 부언하실 말씀은 교육감님 하시고,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저는 교육국장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평준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고 모순점이 많다는 것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등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또 그 희망, 5지망까지 했다가 7지망까지, 그것도 개선의 한 방안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이것은 역시 소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 배정 문제는 고등학교 선후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 중학교에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공청회도 열어보고 개선위원회

같은 것도 조직을 하고, 또 설문지 조사도 급별로 상위그룹에 속하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을 조사를 해 보고, 또 하위그룹도 조사를 해 보고, 또 보통교육, 보통교육에 속해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또 선생님들의 의견도 집단적으로 들어보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감의 이것은 권한이라고 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0조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한 후에 교육감님의 지침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집행청에서 고심해 주신다는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의장님, 지금 보충질의는 교육감님이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죠?

● 의장 고규강

예, 맞습니다.

● 이기수 위원

교육감님, 그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배움터지킴이, 과거 스쿨폴리스라는 이름을 11월부터 배움터지킴이라고 명명한 모양 같은데 지금 충북교육청은 3개 학교를 시행하다 돌로, 작년 11월부터 3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금년 3월부터 2개 학교를 확대해서 지금 5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또 선생님들은 학교의 기밀이 혹시 누설될까, 혹은 학교의 교권이 침해될까, 여러 가지 우려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 효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학교와의 학교폭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폭력 감소 문제, 증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갖고서 확대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단계기 때문에 그 시행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

리의 교육청으로부터 지침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지침을 내렸으면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내리겠지만은 이 지침을 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혹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3개 학교, 그리고 지금 5개 학교가 실시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배움터지킴이로서의 할 일이 이미 모두 시달이 됐고, 그리고 또 이 분들을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서울에서 전국의 배움터지킴이, 이 분들 서울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학교에서 이 분들이 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일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모든 것을 교육을 통해서 전부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다시 필요하다면 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분들의 할 일은 이미 그

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미 다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행단계기 때문에 금년 11월 가야 결국은 1년이 되는데, 예산도 1,120만원 한 학교당 그렇게 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하셔 갖고서 여러 가지 네가티브한 면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이 학교폭력은 본 위원이 어제 실례를 들은 거마냥 학생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12번씩 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을 예산이라든가 그외 여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계속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이기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학교 지킴이가 5개 학교인데 현재 전통 있는 학교들은, 졸업생이 많이 배출된 학교들은 대개 보니까 졸업생들이 선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경찰서장 출신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정보화과장이 놓고서 제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교장실에서 그 성과 과정에 대한 것을 한번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방학 때 빼고 월 60만 원씩 지금 보수를 드리고 운영비로 2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학교를 결과를 보가면서 확대할 것인지 하는 것은 금년 말쯤 가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은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 이제 추가로 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질의는 앞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됐습니다.

농촌이 인구감소, 아동수의 감소에 따라서 농촌 학교를 백 수십 개 정도가 폐교가 되고, 또 농촌 학교의 학생수는 큰 학교야 한 150명 정도 되는 학교는 큰 학교이고 대부분 학교가 학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100명 이하는 분교로 하고 50명 이하는 폐교한다, 또 1면 1학교는 유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은 교육은 모든 것이 경제논리나 효율성만을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선진 미국이나 영국이라든지 학교를 본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의 사이즈가 거대해 갖고서 1,000명이 넘어간다는지 이렇게 크게 돼 있지 않습니다, 대개.

선진국일수록 학교가 아담한 가정처럼 돼서 학생수도 적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당 학생수도 아주 한 선생님에 대한 학생수도 아주 적기 때문에 가정에서 애들 지도하는 거와 같은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모든 시설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폐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인원수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는지 한다면 농촌의 이농현상을 자꾸 부채질해서 거의 농촌 학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심도있게 생각해서 아주 적은 학교를 효율적으로 본보기로 한번 운영을 해봄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우리 같이 그렇게 큰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지 않은 걸 본 위

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방침보다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갖고서 폐교 문제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생각했으면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그 폐교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폐교 대상이 되는 우리 충북 초등학교만 해도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68%인 13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하고 합쳐지면은 1면 1교가 되는데 지금 이 통·폐합도 문제지만 또 합쳐진다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을 때 대개 보면 장소는 위치는 초등학교가 좋고, 그 부지는 중학교가 큰데 어디다 합치느냐도 지금 문제가 되고, 또 합친다고 했을 때에 대부분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 중학교 학부형님들께서 초등학교로 합치지 않고 버스 타면 대개 읍 단위로 10분, 10여 분 정도 되니까 초등학교로 가는 것보다 읍 단위로 보내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지금 보은 삼승 초등학교 같은 데는 작년에 3학급으로 2복식 수업을 하다가 두 학급이 돼서 올해는 3복식 수업을.....

그렇게 자꾸 복식수업을 하니까 학부형

님들이 더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 교육감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장관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중학교 같은 데는 초등학교하고 똑같이 인원을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하여튼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모두,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 시겠지만은 아주 적어서 진짜 학생들이 수업활동 하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학교는 통·폐합이 시급히 돼야 되지만은 나머지 학교는 저도 심각하게.....

학교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따나 경제논리로만 풀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문화센터의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추진도 또 그 지역의 학생, 지역이 문제가 출생, 그 선생아가 아주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고려해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만약 10명밖에 안 됐을 경우에 2복식, 3복식, 학생들을 해 갖고서 1시간에 한 선생님이 들어가서 2복식, 3복식을 함으로써 수업의 효과,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통합을 요구하는 거지, 그것이 선생님이 더 소요 되겠지만은 경제논리를 무시해서 교육적인 효과만 따져 갖고서 그대로 수업을 계

속하고 정말로 가정에서 애들 개인 지도 하는 것과 비슷하게끔 해서 잘 길러준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큰 학교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가 없을 테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영용 위원이 안전요원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1년 전인가 이 안전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전요원은 앞으로 학부모이나 다른 분들이 안전요원으로 탑승해도 괜찮게끔 법을 개정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경상북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요원을 탑승을 안 했음으로 해 갖고서 아주 교장선생님이 엄청난 압박을 받은 예를 교총 회의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법을 개정하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안전요원을 탑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게 평소에 잘 운행이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탑승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는 상당히 큰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 도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교육경비는 2004년도에 31억 921만 3,000원을 지원 받았고, 2005년도에는 47억 5,297만 6,000원을 지원 받아 전년도보다 약 16억원 더 지원 받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최근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서비스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우리 충북 도교육청에서도 내 고장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정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옆 동네인 충남 보령시장은 학생 1인당 12만 2,000원을 지원해 주

었고, 태안 같은 작은 군에서도 교육장에
게 10억원을 지원해서 학생 1인당 10만
4,000원씩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북에서는 청원군이 1인당
8,000원입니다. 제천시가 8,300원, 도내
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음
성군이 6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타 시·도의 자
치단체의 지원에 비하면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특히, 시·
군 교육장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
셔서 적어도 우리 도내의 음성군 정도의
지원은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
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 교육감 이기용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번 5.31 지사 후보한테는 우리 부교육감
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공약에 우리
교육사항에 포함시키도록 얘기가 됐고,
또 시·군에는 교육장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진옥경 위원

네, 진옥경 위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도청에서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총액과 파견된 교육협력관의 역할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2005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회의록을 다시 보았습
니다.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집
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기록에 남아 있습
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이
제 학교용지부담금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추계한 것은 한
150억 정도인데 2005년도 넘어와서 더 견
한 부분까지 해서 211억 8,2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관
리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었어요.

도청에다가 자세한 해마다 징수액에 관
련한 자료를, 소상한 자료들을 공문 요청
해 주십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로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협력관이 도청에 가서 가지고 주로 학교부지에 관련한 업무를 이제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를 전출해 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시는 역할들도 하셨다, 얼마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을 때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신경전을 도교육청과 도청이 하고 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업무 간에 서로 연계나 기준에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직책으로 인해서 조금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1억 8,200만원이라는 액수는 분기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도청에서 받은 바 있으시면 받은 것들을 주시고요, 안 그러면은 다시 요청을 하셔서 소상하게,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4년 결산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 소상한 내역의 도표가 도의회 결산심의에도 첨부이 있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 최종적으로 통과된 액수에 대한 파악을 해 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아직 2005년도 예산이 확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감사 이후에 파악된 부분들까지 전부 하셔서 가지고 지금 이 액수가 나온 과정을 좀 밝혀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기용

제가 살펴보고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진옥경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요청을 드릴 것은요 당시에 받지 못한 공문입니다, 이것도.

서원고등학교 외에 2건을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한 공문이 있어서 제가 도교육청 측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청 측에 다시 그것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럼 도청 측에서도 그 공문을 달라” 그랬더니 그 공문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회의록에 나와 있는 액수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출했다는 액수하고, 이 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그 공문의 액수하고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2회에 걸쳐서 받았다고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번 온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문 요청을 했으니까, 도청에서 받은 공문,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을 도청에서 받았다는

그 공문을 다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측에서 준 그 공문도 아
울러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기용**

그 공문이 지금 현재 안 왔다고 하니까
촉구를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진옥경 위원**

그 회의록에 남아 있어서 제가 다시 확
인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배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당 축제의 행사 폐막식 주
관차 오늘 본회의 오후 17시 30분까지는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훈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저는 없습니다.

● **의장 고규강**

전반적인 질의하신 내용 전혀 하나도
없으세요?

● **김남훈 위원**

이따가 부감님 질문 끝나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의장 고규강**

지금 하는 것은 교육감님 아까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 **김남훈 위원**

아까 전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따
국·과장님들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지금 하시는 것은 부감님 것에 대한 항
목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 **김남훈 위원**

저는 항목이 없어요.

● 의장 고규강

예, 알았습니다.

성영용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성영용 위원

없습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 송대헌 위원

보충질문을 부감님이나 국·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장 고규강

아니 부감님

● 송대헌 위원

아, 부감님, 따로따로?

● 의장 고규강

예

● 송대헌 위원

예, 없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감님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 이기수 위원

예, 부감님 답변 항목에는 제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 의장 고규강

그럼 이상일 위원님 있으십니까?

● 이상일 위원

예,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수궁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2006학년도에는 서울대 합격자가 일부 사립고, 특히, 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느 한 특정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공사립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광고등학교가 2004, 2005, 2006, 3년간 20명 이상 서울대학을 넣었어요, 금년 한해만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어느 학교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청주 시내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 고등학교가 단 한 명도 서울대 합격자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 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의 성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대학에, 한의대라든지 또는 최근에 인기가 있는 치과대학이라든지 그런 데 가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편차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청주만 해도 평준화 지역 아닙니까. 평준화 지역이라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청주 시내에 있는 이 공립 쪽의 학생들의 속칭 말하는 우수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학교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고등학교였었는데 워낙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또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완전히 평준화가 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어느 한 학교로 집중적으로 몰리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특정 학교로 더 많은 학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럴 바에야 평준화 깨고서 비평준화로 시험보는 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빠진 답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물은 게 일반계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우대방안을 질문을 했는데 그 우대방안이 빠져있어요. 물론, 우대방안을 주다보면 실업계 학교는 실업계 학교대로 우리도 우대해 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명문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그것을 희망을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 가치관이 바뀌셨는지 저 단양이나 산골에 점수 많이 얻는 데로 가지, 유능한 교사가 일반계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합니다.

그래 지금 저 일반계고등학교가 나쁜 애기로 하면 3D 현상 중의 하나인 학교로 기피를 하고 있어요.

촌 중학교가 가장 인기있는 순위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인센티브라도 줘서 고쳐야 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어떤 임용제 청권이라도 줘서 일반계 인문계고등학교에 우수한 교사가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빠져있어요.

● 교육감 이기용

우리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희들이 현실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그런 이유 때문에 송대헌 위원님께서 성적 우수자 10% 모집, 이런 것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고등학교가 한 명은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학교가 그러니까 평준화된 지역의 대수가 셀수록 성적이 나뻑니다.

그래 지금 예술고등학교가 3년간 성적이 좋았는데 거의 1 대 1 수준이었는데 금년부터는 3 대 1 이상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지원자도 줄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그 인문 학교 우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이 시골 학교 가면 농진점수도 따고, 4시 반 퇴근이니까 청주 들어오시면 거의 6시가 됩니다. 그런데 인문 학교 선생님들은 그 6시 넘은 그때 식사하시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뭐 보충수업비는 조금 드리기는 하지만 한번 중학교에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으

면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에 안 가시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시면 고등학교를 그냥, 중학교 사정을 모르시니까 가시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그 부분도 엷어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제 입장에서는 그 읍 단위 충주고등학교 같이 그런 지역에 연구학교를 우선적으로 많이 이번에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들께서 도구교과의 선생님도 요청하면은 드리는 권한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보편은 만기가 돼서 나가는 선생님들의 50%가 되기 때문에 뭐 3년 있다가 한두 분 나가시면 뭐 한 명도 제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바로 시정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학교라든지 시범학교, 이런 쪽,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을 초빙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부감님께 독도교육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애긴데,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신뢰를 하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신뢰가 안 간단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이 교육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또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은 옛날에 했던 얘기가 흐지부지돼 버립니다.

옛날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만이었어요.

지금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용 자료집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언제 개발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에 쓸 수 있는 때가 오는 건지, 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연 일본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확고부동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지 사실 내용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케시마에서도 일본사람들은 다 지들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려서부터 독도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만이라도 확고하게 심어줬으면 해서 자료를 편찬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교육용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한번 우리도 검토해보고, 만약에 이게 부실하다거나 또는 차일피일 돼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그때 다시 올 10월달에, 뭐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교육감님께서 이상일 위원님께 답변하신 중에 도서 벽지 진흥법은 우리 교육감의 고유의 권한이 아니고 농진지역의 어떤 배치는 교육감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교육감님 하셔도 됩니다.

진옥경 위원님.

● 진옥경 위원

네

● 의장 고규강

부교육감이 답변하신 중에서 질의·응답 있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네, 있습니다.

진옥경 위원입니다.

브리핑룸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요, 처음에 작년에 행정감사 때 답변하실 때의 배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지금 행정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 보면 그것을 브리핑룸을 사용한 횟수를 마지막에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그 방을 사용한 것이지 그 시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시설을 사용된 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자실에서야 언제나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열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느냐를 질의한 것인데 그 방을 몇 회 사용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브리핑룸으로의 전환이 의미를 갖는가, 그것을 질의드린 건데 전혀 핏트가 다른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 부교육감 서명범

브리핑실의 지금 위치하고 당초에 그러

니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위치가 지난번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사유는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면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공간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를 했는데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브리핑실하고 그 다음에 기사송고실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러한 장소하고 한 실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 요 자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사 기자석,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들어와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브리핑을 받은 후에 아무 자리나 편한데 가서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구상하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기자실에는 어느 언론사 기자라도 자유롭게 들어와서 취재하고, 그 다음에 기사 송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브리핑룸에서는 대변인이나 아니면 공보감사담당관이 되겠죠, 주로.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보도 자료를 그 자리에서 뭐랄까 게시하시고 또 뭐 설명자료를 스크린에 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그 브리핑용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받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한 용도가 몇 회인지를 질의드릴 거예요.

● 부교육감 서명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횟수는 다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저희는 어차피 대변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로 과장님들이 내려가서 기자들한테 미리 몇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 때는 과장하고 담당자들이 같이 내려가서 거기에 모인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러한 형태로다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16회로 제가 보고드릴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탁자와 의자를 사용했느냐 말씀입니다.

그 소파 가 봤어요, 중앙에 소파가 여

러 조가 놓여 있습니다.

며칠전에 문백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와서 TV에 잠깐 언론 보도된 내용도 제가 보면서 주와 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자휴게실의 종전의 그런 어떤 용도가 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 켤의 의자와 뭐랄까 설명용 탁자, 스크린이 그 이후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냥 무슨 장식품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장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도교육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 기자에게 알려오는가. 브리핑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각 기관에서요.

● 부교육감 서명범

그래서 위원님, 저도 그 자리에 참석 못 했지만은 신문 같은 데 난 것을 보니까 문백초등학교에서는 와서 학부모님들이 그 소파에서 앉아서 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하면 그쪽 브리핑 의자하고 그쪽을 활용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본청 각 과 13회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제까지요?

저한테 답변주신 게 지금 두 달 동안

본청 각 과 13회고, 교육위원회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에서는 브리핑 시설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셨는가요?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시다만은 질의드립니다.

저는 그냥 편한 대로 거기에 앉아 가고 주로 하지 않는가. 또 13회가 실제로 그렇게 브리핑이 이루어졌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사진기록과 함께 이용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한 사진을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럼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13회를 모두 그렇게 사진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그 13회는 다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예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부교육감 서명범

예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기자실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야지 꼭 그것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만약 그 학교 문제라면 학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게 개방했다는 그런 의미를 그다지 크게 들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언론사간의 관계를 저는 올바른 파트너십을 가진 그런 관계 속에서 공식적으로 가야말로 어떤 술자리나 뒤에 어떤 정말 아이들이 보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능한 어떤 불식시키는 그런 형태의 기자실을 브리핑룸 전환으로 권유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냥 소파에.....

제가 갔을 때 어느 기자분은 완전히 쭈

그리고 거의 그 사이 못 주무신 잠을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듯이 그 소파가 기자휴게실의 용도 로써 기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지금 그런 어떤 올바른 관계 정립이랄까 이런 것이 완전히 말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그것들을 이용 하실 때, 지금 자연광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에 반사되는 것을 줄였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앞에 출입 뭐 이런 것이 문에 걸려서 스크린이 설치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들도 받았지만은 그것은 일종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운데 온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저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너무 웅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의 배치조차도 매우 웅색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임의 표집을 제가.....

갑자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질의를 드린 것은 LNG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주 대

상이 되는데, 도시가스의 형태로 그것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예, LNG는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청주, 충주 지역이 일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가스관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부교육감 서명범

예,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까지는 그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 충주 지역 25개 학교만 여기에서 해당이 되고, 그래서 매우 미약한 어떤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스관이 들어 있길래 나머지 학교에서는 그 저렴한 LNG를 쓰지 않고 LPG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부교육감 서명범

그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청주, 충주를 제외하고서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LPG를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지만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진옥경 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질의드린 것은 권장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학교 앞에까지 그 관이와 있다든가 해서, 그래서 많은 시설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 뭐랄까 이익과 그 다음에 투자를 대비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익이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에 이 도시가스를 산업용으로 적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예,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기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수학여행과 관련해서요 지금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내실있는 그런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제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자입찰제를 하시지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예,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그 정례적으로 가는 곳이 이제 대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행사마다 취급하는 그런 장소들도 이제까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차량을 임대했을 때 얼마고, 또 숙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왜 학교 선생님들이 미리 가서 사전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적정한 비용들을 공고를 하고 전자입찰 형태의 어떤 적정한 가격의 전자입찰제를 권장을 못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투명성을 담보하는 그런 제도로 하고 하면 지난번에 민노당의 모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매우 미약하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과연 있기는 한 것입니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셨을 텐데 혹시 우리 지역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수학여행을 간 경우가 있는지요?

● 부교육감 서명범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것들을 점차 지도해 나가겠다 하는 그 교육부 담당자의 이야기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준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거기의 비용, 그러니까 수학여행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그래도 먹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 비용을 들이면서 좋은 그런 내용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전부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내내 그냥 뒤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게 리베이트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수학여행 비용을 각급 학교에 했는데 날짜도 약간씩 다르고 가는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능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뒷돈이 오고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로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없다고 하시는데 적발된 사례가 없다 뿐이지, 지금 충청북도 제가 질의 부분에도 나왔지만은 충청북도 기사가 거기 경주엔가 가서 기자가 만난 충북에서 온 기사라고 할 때에는.....

그러면 어디 전라도에 있는 학교가 충북 차를 임대해서 갔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내실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고 지금 그냥 답변을 이제까지 없었다, 또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없다는 것과 같이 등식으로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조차도 없고,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만연해 있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 12월경에 서울에 갔다 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충청북도의 교장선생님 얼굴 가리고 책상에 다리만 있는 그런 말이 오고가는 부분에서 리베이트 오고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국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발되지 않아서 없다는 이야기로 하고, 앞으로 이것들도 예방하실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 아까 가스사용료 이것도 말

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그 어디까지 가가지고 가스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교육적으로 그 통계가 날 정도로 필요하신 겁니까?

● 진옥경 위원

네?

● 교육감 이기용

진 위원님도 지금 가정주부시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는 가스가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주와 충주의 사례를 말씀.....

25개의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교육감 이기용

거기 지금 청주, 충주는 들어가고 시골은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 진옥경 위원

제가 시골을 권장드린 게 아닙니다.

● 교육감 이기용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를 어디까지 가서 뭐 자료를 요구를 자꾸 하시는데, 참 교육적으로 필요하시니까 질문하시겠지만은 개략적인 것을 아시면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업무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업무를 줄여주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수학여행 그 관계

는 그 외국 가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고 지금 나머지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 자모님들 대표로 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그 수학여행 관계를 결정하고 계시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지를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부정한 게, 잘못된 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틀림없이 그런 다리 부분이 나타난 이러한 사진도 있고 그런데, 있을 텐데 왜 노력도 안 하고.....

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는 그런 점은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노력하는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기가 떨어지는 말씀이고,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 다시 한번 살펴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또 예전 행정감사 때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처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올바른 어떤 처리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그와 유사한 사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질의까지도 여러 가지 교사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교육감님이 아무리 권장하시고 말로 공문으로 나가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정책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지역이 미약하고, 앞으로 표준안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그 다음에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없는 것을 마치 뭐 끄집어내서 다 밝혀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제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부감님이 답변하신 취지가 매우 미약하게 지금 저한테는 전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약, 안전사고 등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린 전자입찰제나 이런 것

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검토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들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 부교육감 서명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진옥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부교육감 서명범

지금 조금 전에 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해외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입찰을 보는데 국내로 가는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리인을 안 내세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바로 직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직영을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학생 대표들 참여해서 직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실속있고 싸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비리가 발생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직영하는 것이 나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어떠한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가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러한 답

변을 드렸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 비리에 대해서, 수학여행 비리에 대해서 관행화 되다시피 했다는 어떤 그런 언론보도를 못 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만 예외라고 지금 강변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들의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학교하고 직영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련의 어떤 프로그램 전체는 아니지만 버스를 임대할 때에도 대당 10만원씩은 그 교장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다라고 전해 달라고 기자에게, 충북에서 온 기사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영으로 한다해서 그것이 막아집니까?

중간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아이들은 제주도나 바닷가에 가서 멀치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어떤 식단에서 생선이라든지, 바닷가에 가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의 어떤 그야

말로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까지 부족하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뭐랄까 전향적으로 도입해 보실 그럴 의향 같은 것들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진옥경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진옥경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의상

예, 저는 얼마전까지 일선 학교 교장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승진하기 전까지는 오래 몇 십년 동안 평교사로 수학여행 직영도 해보고, 또 위탁경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제도나 우리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학여행은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 그때 거의 다 위탁경영을 했습니다.

모순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은 모순점들의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그때 위탁했을 경우에 업체들의 횡포라고 할까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기사들 팀을 넉넉히

안 주면 소위,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 유행했던 짐바를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어떤 때는 심하게는 바퀴가 안 굴러가서 못 간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자 해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는데 부감님, 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그 제도적인 기구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 또 학생들 수학여행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수학여행지를 몇 개 선정을 해서 학생들 의견도 묻고, 학부모들 의견도 묻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가격까지도 통과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학교가 많고 한결같이 사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뭐 비리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향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 **진옥경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모범적인 몇몇 분들의 그 사례가 이 모든 여러 가지 위험성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것들을 권장을 교육위원이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이나 이런 것조차도 하실 의향이 없어 보이는 답변은 매우 무성의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아까 약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리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하실 어떤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남훈 위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의장님, 질문드리기 전에 교육국장님 소관하고 관리국장님 소관 같이 보충질의 드릴까요?

● **의장 고규강**

예, 괜찮습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국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질문드린 중에 연구시범학교 여비를 갖다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여비가 당초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답이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청이나 직속기관 또는 지역교육청, 이렇게 모든 여비가 재정이 열악해서 교육과학연구원과 같이 똑같이 업무지정 여비가 100%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금년도부터 여비가 인상이 되고.....

● 김남훈 위원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이것은 교육국장 소관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남훈 위원

예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시범학교 출장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당초 예산 성립부터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답변하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시범학교 지도 여비를 2006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했고, 1회 추경 시에 264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 재원의 어려움으로 교육사업비는 각 부서 기관에서 20% 이상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추진 여비는 50%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교육과학연구원의 경우 2005년도에는 전문직 및 일반 직원의 1인당 여비가 216만 4,000원으로써 타 사업소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2006년도에 3,185만 5,000원이 예산요구 총액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1,106만 5,000원으로 전체 규모를 조정해서 자체 사업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 조정해서 올라온 결과에 연구학교지도 여비가 자체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632만 5,000원이 요구됐는데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청주, 청원 근거리 따져 가지고 254만원만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소별 1인당 여비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이 1인당 169만원이고요, 단재연수원이 148만 5,000원이고, 중앙도서관 뭐 사업소 중에서는 교육과학연구원이 1인당 여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의 기본 업무가 연구학교 지도라고 저는 생각해서 개인별 기본 여비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업무지정 여비와 기타 여비를 구분해서 이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답변에서 50%의 기본 여비를 삭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업무 지정 여비는 타당성을 고려해서 전년도 대비로 해서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여비는 50% 삭감이라 다 놔두고 어째 이 업무 지정 여비만 100% 다 삭감했느냐. 거기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듣기에는 업무 지정 여비가

100%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연구학교 지도 속성상 이것은 3,4월달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 단계부터 지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246만원인가 세워놓으시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비라고 하는 것은 48교 종결보고회 때 참석하는 여비로 짜여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5만 5,000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청주, 청원을 갖다가 다니고 그리고 거기는 2만원씩 해서 나머지 3만 5,000원이 될 테죠. 그걸 갖고 원거리 관내 여비 이외의 것을 주면 된다, 이런 계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연구학교 분포 현황을 보니까 청주가 초·중·고 해서 40, 그 다음에 청원이 9개 지역입니다. 그래 49개 지역이고, 그리고 전체 연구학교 총 수는 1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정 업무 여비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이제까지는 초등교육과하고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이 연구학교 지도방법이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교육과학연구원의 업

무가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로 침해를 당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 업무가 전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어왔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국장님 사실이에요?

● **교육국장 박의상**

예

● **김남훈 위원**

그렇다면은 더 오히려 업무 지정 여비를 더 확대해서 드려야 될텐데 더 깎았다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그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여비에서 50%가 아니라 80%를 깎았더라도 재정 형편이 곤란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업무의 속성상 업무여비가 깎인다고 하면은 그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우선 그 아까 우리 기획관리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우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선은 자

기내들 기본여비를 가지고 쓰고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조정을 하면서 그 시범학교 운영 여비를 갖다가 당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범학교 운영 지도를 나간 다든지 할 때 만약에 여비가 떨어져서 못 나간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감님께서서는 아주 합리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연구학교 지도 여비 분야에 대해서 들은 정보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네. 여하튼 지금 부감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연구학교를 우리 장학진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 고생은 연구원에서 하고, 뭐 결정적인 게 있으면 이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와 겹쳐서 능률이 없겠다 해 가지고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합을 시켰는데, 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그것을 짜면서 원장님 말씀이, 우리가 그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

면서 오전 오후를 잘 조절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 인근 연구학교 갈 때 진로지도도 그 지역으로 해서 한번 여비를 줄여 보겠노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상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교육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이원화되었던 연구학교 지도방법이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업무 본연의 부서로 이렇게 이관하신데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도 다들 환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결론적으로 답변에서 예산삭감에 따른 연구학교 지도 방안으로 연구사 개인 기본 여비를 포함하여 운영후 부족 예산은 추가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정 목적 여비는 이미 추경을 하면은 그 시기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연구학교에 지정은 꼭 해야 되겠고 출장은 가야되겠는데 여비를 이것저것 다 끌어다 쓰고 나중에 해서 하면 그 때는 이미 추경예산에서 하면 늦는다 이 애

기요. 지금 1차 추경 겨우 끝났고, 앞으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재정이 없어 갖고서 자금이 없어서 2차 추경을 어느 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듣고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실시 현황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전자결재 한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지역교육청, 본청 감사 때는 그런 일이 없고, 지역교육청 감사 시에 출력을 해서 다 내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 때.

그렇다면은 일선에서는 이중적으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자결재는 전자결재 대로 하고 그것을 서류를 또 다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경감이 아니라, 더군다나 요새 혁신담당 부서가 생겨서 아주 공문이 말도 못하게 공문이 일선에 접수된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전보다는 문서가 줄은 것이 아니라 더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혁신'자가 안 붙으면 공문이 아니다 할 정도로다가 혁신에 대한 공문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선에서 감사 때 이렇게 이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관리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 사항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현장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일정 부분 저희들이 출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전부 다 지참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일선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미리 출력을 해 놓는 것은 있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서 직접 출력을 시키고 합니다.

● 김남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고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이 본청과 같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전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내용도 저희

들이 필요하면 출력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일선 직원들이 혹시 미리 해 놓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가서 출력하면 상관이 없는데, 출력해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리고 이 확대 보급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은 도교육청의 정책이 아니라 희망, 권장 사항으로 이 전자결재를 도입하고 계시는 겁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 전자결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를 갖다가 전자결재를 보급할만한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 우리 학교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학교에 먼저 지금 단계적으로다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지, 앞으로 다 갈 겁니다.

● 김남훈 위원

그래 희망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다가 충청북도 전역에 실시 확대 보급할 계획이시죠?

● 부교육감 서명범

2007년까지 다 합니다.

● 김남훈 위원

2000 몇 년요?

● 부교육감 서명범

내년까지입니다.

● 김남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사택 보급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이 오지 벽지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는 직원들을 위해서 공동사택을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직원의 환경 내지는 근무 여건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 보급 시기가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서 시급을 요하

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어느 때 그 지역을 간 적이 있는데 이 청산고등학교의 경우 그 지역의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지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일반 고등학교가 되니까 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을 선생님들이 시켜야 되겠는데 자율학습을 10시, 10시 반까지 하다가 다시 아침에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그때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공동사택이나 이런 데서 기거를 하고 싶어도 사택이 지금 현재 월등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초등학교보고 양보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중등도 이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간학습 지도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원지역에 상황을 보더라도 저쪽에 영동 쪽에 대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 이원초등학교 있는 직원들, 이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옥천서방을 얻어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선생님들이 안정되게 거주를 해결하셔야지만 학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싶어서, 다소 교육적인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측면에서 빨리 좀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면은 감사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저기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마침 어제 옥천에 학부모회가 있어서 어제 의회 끝나고 갔다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일부러 제가 청산을 들려 왔습니다.

청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르고, 운영위원장님, 교장선생님들하고 그 애로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여관에서 기거하신다는 선생님도 계신다는 것을 듣고 저도 참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6실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 초등학교에 공동사택이 서 있는데 그 옆에다, 터도 좋고 그런데 그 6동 지으려면 3억 가까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거 제가 어제 가서 느끼고 내년이고, 금년에 추경 재원이 없겠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그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 올려서 그거 한번 바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광**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 **의장 고규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기획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한 두 분 걸 다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대책을 물었는데 몇 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업별 분포는 잘 봤습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위원은 소속 및 관계 기관 공무원과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장이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들 동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학교장 또는 시만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으며, 추천 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추천에서 제외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 후에 업무 관련 위원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성영웅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거 점검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분들을 해촉을 해서 우리 환경 위생 정화위원으로서 적절한 신분이 와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제 얼굴도 알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지역 교육장님도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도교육청에서 재촉구하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예, 알겠습니다.

● **성영웅 위원**

다음 교원자격연수 여비에 대해서는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시켜서 아주 잘 됐다 고 얘기를 드렸는데, 잘된 부분을 얘기해주셨어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일반연수 여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불평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불평의 소지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를 한번 넣어주면 어떨까, 이 교원자격연수 여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학교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약간 집행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해 주시면은 집행하는 면에서 상당히 원활한 집행과 또 행정의 모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에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격연수비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여론의 소지가 없고 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연수비에 대한 것은 학교자체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딱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예산 형편상 타절률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는 차이가 안 납니다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일이 길면 받는 수혜자에게는, 연수 기일이 길면 그 차이가 많

이 나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여비지급 기준에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게 예산 기준하고 예산 편성 단가, 이런 것들을 대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집행기준을 해서 지급하고, 어느 학교는 편성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그나마 학교 나름대로 타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활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송대헌 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 되겠네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초등학교 교과전담제에 대한 이야기입

니다.

아까 답변에는 72%가 지금 교과전담제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학교 현장의 현황을 알아봤더니 학년초에 교과전담제 배정할 적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희망 접수를 하는데 희망을 안 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친밀감이나 그쪽에 보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희망을 결국 안 하다보면 교장선생님께서 사정해서, 음악 좀 맡아주십시오, 때로는 영어도 맡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참해서 양해를 구하다시피 해 가지고 교과전담제 배정을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의 소질이나 취미 같은 것까지 고려가 돼야 원래 취지, 전공과목까지 돼야 이게 취지에 맞아서 이 당초 교과전담제 취지가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해 준다고 하는, 뭐 전공을 따지기 전에 맡아보겠다는 얘기만 들어도 고맙다는 교장선생님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아까 답변 가운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귀에 속 들어오는 말씀을 했어요. 인센티브제를 뭐 교과전담을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생각나는, 앞으로 구상하겠다는 뜻인지, 좀 그런 생각나는 인센티브를 구

상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조사를 미처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교과전담제 주 과목은 영어하고 예·체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영어과목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출신 중에서 초등교사 임용고사에 응시를 해서 초등교사로 임용된 분들, 그중에 영어를 전공한 분들은 기꺼이 영어 교과전담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쪽에 주가 되겠는데, 이런 쪽에서 아마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고민은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유인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국장님은 깊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지금 교과전담제 맡은 사람의 1주당 수업 시수하고, 물론, 학년별로 다를 테죠,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는 주당 시수가 대략 어

는 정도라고 보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저도 한 두서너 달까지 일선 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년초에는 교과전담을 배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행히 내가 해 보겠노라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 교장선생님 펍 행복한 선생님이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첫째, 교과전담을 하면 담임수당이 안 나갑니다.

담임수당이 없습니다, 담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 송대헌 위원

실례지만 담임수당이 얼마죠?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선생님들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담임 선생님들은 이 교실 저 교실 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은 첫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수를 20시간을 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담임선생님보다 시간수를 줄여주는 거,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시간수를 조금 혜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수나 무슨 도움이 되는 거에 조금씩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고, 뭐 수당 같은 거 주는 것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책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연수 혜택이라든가 시간수를 줄여주고, 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마다 교과전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공간을 만들어 드려라 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이 이미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을 겪어 봤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담임은 자기 반에서 죽 수업을 하지만은 교과전담을 맡게 되면 이반 저반 다녀야 되는 애로, 또 1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런 경제적인 부담,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하고 사제지간의 정, 학부형과의 관계 등등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에서 더 인센티브에 연구를 하시

고, 지금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30시간씩 말으니까요. 유인체제가 될 것 같은데, 교육부 정원이 75%밖에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학교별 학급수하고 제정해야 할, 가르쳐야 할 전담교과수하고 해서 20시간을 맞추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전담교과를 줄이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사람 수에다가 맞춰서 시간을 20시간에 맞추다보면 꼭 해서 영어를, 사실 영어 같은 것은 많으면 두 사람이 더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한 학교에 한 사람만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검토가 우리 전담교사에 대해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부적응아 관계인데, 제가 유치원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노력 끝에 법으로 되어서, 우리가 늘 단위 기관의 승격으로 됐다는 거. 지금도 많은 부분이 초등 교장선생님 밑에 병설이 되어 있는 유치원이 같이 들어 있고 하지만은 법적 기구로서 유치원이 하나의 그 유치원이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랜 숙원이었어요. 그래서 원장, 원감도 되고, 독립원사도 돼서 독립하고 싶은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지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경제가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개왈 다 유치원 보내요.

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유아원부터 조기교육 붐이 불어 가지고 유치원을 안 보내는 가정이 없어요. 농촌에는 안 되지만 농촌에는 거개왈 보냅니다. 그래 이제 보편화 됐어요.

그 아이들이 초등교육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아동수요는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또,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좀 뭐 운영위원회라든가 선거권도 달라, 우리도 뭘 해 달라, 지금 뭐 법청원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유치원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각종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권 부여 문제도 논의가 벌써 되고 있고 청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 기관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선생님들의 생각 속에는 그저 어리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또 지능발달 분화가 많이 안돼 있으니까 그저 적당히 가르치고, 교육과정도 적당하게 해도 별 문제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꾸로입니다.

어렸을 때 조기에 바른 치료를 하고 결점을 보완을 해 줘야 그 아이가 평생 잘 자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 같은 게 완전히 큰 다음에 그걸 바로 세우려면 뿌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 나무나 꽃은 야들야들 할 때 잘 잡아주면 평생 모습을 그대로 갖추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조기교육의 중요성, 습관의 중요성이 논의되는데, 부적응아 문제, 제가 유치원 원장님하고 많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학급당 5 내지 10% 정도가 유치원 중에서 아주 문제다, 이런 애기입니다.

초등, 중등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아원 아이들도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장난감을 함부로 내던지고, 옆에 아이를 못살게 굴고, 한시도 가만있지를 않고 뭐를 갖다가 때려부수기도 하고 이래서 유치원을 갖다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할 적에 늘 그놈들이 싸워서 남을 갖다 핏퐁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보통 30명이면 두서너 명은 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발전과정의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표현을 쓰면은 과잉행동장애아라고 하는, 영어로는

ADHD라고 그래요, 과잉행동장애아, 주의결핍증 뭐 환자라고까지는 못하지만은 주의결핍증이라고 그래요.

사회성이 부족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한 시도 남한테 말썽을 부리는 유치원 아이 들이예요. 그러면 이 애들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걸 학부모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유치원 원장님은 그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부형님들은 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느냐고 말여,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학부모를 인정을 시키려고 하면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아이들 두서너 명씩을 딱 뽑아가지고 아동심리검사나 아동행동검사라고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딱 보이면은, 아,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때는 인정을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 말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검사가 무료가 아니고 25만원이랍니다.

이것을 교육감께서 지원을 해 줬으면.

청주 시내 유치원이 100여 개 되죠. 그러면 한 학급에 두서너 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기에 우리 장애아 검사를 해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우리 공립학교의 유치원에 심리 치료나 놀이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담원을 하나 설치해서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서 상담하고 검사받고 치료받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건의였습니다.

우리 초등교육과가 주관인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우선 겉으로 보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에 대한 판정이 지금 몇몇 유치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검사하는 것이 제도화 내지는 크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각종 심리검사나 적성검사 쪽에 세부적으로 전문기관에 요청하면은 많은 돈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신발달, 신체발달에 대한 장애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해서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지금 현재 공립에 24개 29명, 사립에 27개원에 39명, 이렇게 분산해서 총 51개원 68명은 분산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금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행동장애라

든가 주의결핍증,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해야 되는 어린이 발달이나 유아기에 해 주는 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 노력을 해 보는데 현재 체제로는 거기까지 가 있는 공립유치원은 없고 사립에서도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꾸준한 노력을 해서 한번 저희들 자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예, 노력하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제가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고자 제가 굳이, 이 항목이 뭐 엄청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의미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초등교육만 중요하고 중등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특별히 유아 과잉행동장애아라고 하는, 나도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지만 ADHD라고 하는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국장님께 추가 질문할 내용은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기수 위원**

예

● 의장 고규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
다.

국장님, 제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중간에 의심나는 부분과 또 질의할 부분
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에 72페이지 보면 감동 생활지
도 TFT 해 갖고서 그게 지역별 생활지도
위원회, 위원회 컨설팅, 학교폭력 예방
우수 사례 공유, 이것을 TFT라고 하는 겁
니까. 왜 TFT가 뭐의 약자입니까? 어떤
약자를 TFT라고.

● 교육국장 박의상

Task Force Team입니다, 전담팀입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 특색사
업을.....

● 이기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국장 박의상

예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폭력
예방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다음은 흡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을 보면 흡연예방을 내용을 읽어

보면 책자를 예방교육 지도교사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끝에도 그렇게 끝났
고, 청소년 건강 테마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교육 담당자 워크숍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하
나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계획
한다는 얘기는 플랜(Plan)인데 그러면 지
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흡연은 학생 정서
건강에나 또 육체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
향을 주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전부 계획
하고 있다 하면 진행도 아니고 계획하고
있다면은 언제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구상중인데 이런 식의 답
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답변하는 그 표현이 잘못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청소년 건강 테마 콘서
트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테마 콘서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을 드리면 이것은 흡연예방 프로그램으로
아주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
로써 KBS방송 총국과 우리와 함께 이걸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이행하는 프로그
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방송 언론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시청자들이나 수요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매스컴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를 했고요, 내용은 가수들을 초청해서 가수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출도 하면서, 가수들이 또는 연예인들이 금연한 그런 체험담이라든지 또, 흡연이 얼마나 인체에 해롭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그 소개를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흡연, 그 직원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소라든지 이런 상담 전문 요원도 참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기회 있는 대로 지도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흡연체험 코너라고 해서 니코틴을 체크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흡입기로 불면은 그 구체적인 기구는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직접 체크를 해보고, 또 간단하게 흡연의 해로운 점을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구들을 갖다놓고 하는 프로그램,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표현상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그 테마 콘서트는 한

실적이 있어요?

● 교육국장 박의상

예, 작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금년에는 안 했죠?

● 교육국장 박의상

금년에는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9월달이 아니고 수능이 끝난 직후에 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뭐니까, 그와 같이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 물론 그때그때는 영향도 있겠고 효과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걸 교육청에서는 이벤트성으로 가수들 불러놓고 담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계획보다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학교 단위의 무슨 사업이라든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이 추진돼야 되죠, 가수 불러다가 노래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해서 이거 담배 피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담배를 피움으로써 건강상에 어느 문제가 있고, 암의 발생요인이 많이 되는데 바람물질이 얼마나 그 담배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걸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분석해 갖고서 그것을 하나하나 연속적으로 주입을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금연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실제 금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가수 불러갖

고.....

● **교육국장 박의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 **교육국장 박의상**

지금 테마 콘서트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흡연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약물 오남용 금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생활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흡연 예방교육 지도교사 연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TFT를 구성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11개 시·군에 생활지도 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위원장 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는 의무적으로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우리 TF팀이 하는 일은 우리 교육청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생활지도를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의 계획을 전달을 함과 동시에 각 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그 지역환경에 맞는, 협동으로 생활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TF

팀이 지금 3개 시·군만 남고 경찰 해서 위원회를 돌면서 지금 9개, 증평까지 해서 9개, 여덟 개 시·군을 돌았습니다. 3개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우수 사례도 발표를 하고, 또, 워크숍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면에 치중을 해서 생활지도를 방침을 뒀서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을 논의하고, 생활지도, 여기에서 흡연, 금연지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첨가해서 제가 잠깐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각 학교에서는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금연침을 맞고자 하는 아이들은 무료로 금연침을 맞도록 안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충북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지금 전부 다 알려져서 익히 알고 있는데 충주의 대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배꽂초 하나 없는 학교, 클린스쿨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여러 해 동안 금연교실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각 학교에서는 정말로 여기에 선생님들이 정열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교실은 지금 엄청 많은 성과를 현재 얻고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훌륭한 지속적인 효과를 얻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한 계획이다, 계획이다는 전부 진행 중인 것을 계획이라고.....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아닙니다.

금연교실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어디까지가 계획계획 하는데, 다 계획으로만 답변을 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냐는 얘기죠.

계획이면 아직 시작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럴테니까 여기 세 가지가 다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고, 어디까지는 앞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 교육국장 박의상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정해도 되면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확대 운영에 대

한 문제입니다.

이건 오래 전에 마스크에서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이건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파견돼서 그것을 컨설팅을 했을 때 학부모나 또는 선생님들이 컨설팅 했을 때보다 더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를 거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부족으로 더는 할 수 없다, 이런 안타까운 방송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교육부 지원 예산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방송내용과 같이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돼 있는지요?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통계를 다 뽑아보지 않았습시다만은 거의가 다 저희 충청북도와 같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 그 활용 프로그램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예산 부족으로 앞으로 더 확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나왔습시다만은 아직 저희들에게 문서상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에 세 학교, 한번 연구시범 학교로 지정이 됐을 때는 2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에 세 학교가 작년에 세 학교, 그리고 작년에 세 학교 해서 작년에 여섯 학교가 시범 운영됐고, 금년에 세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작년에 했던 청주 원봉초, 청중, 충주 예성고, 여기는 시범 학교는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 내년 2월까지의 예산은, 시범학교는 아니지만 지원해 주겠다 해서 시범학교는 세 학교가 있지만 결국은 여섯 학교에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한국 청소년 상담원의 예산에만 현재는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는데 이게 효과가 크다면 분석해서 자체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효과 큰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효과 없는 사업은 줄이더라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예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드립니다.

●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상일 위원

예, 관리국장님 소관 조금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94쪽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각급 학교의 에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점심시간, 체육 활동 등으로 각 교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전기제품에 대하여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이랬는데, 그 에너지 지킴이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지정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각 과에 두 명씩 지정을 해서 점심 때 남아서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이것은 도교육청 얘기하는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 이상일 위원

일선 학교에.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일선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도를 하

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에너지를 절약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학교에 운동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가보니까 대개 그래도 우리나라 학교들이 남향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4,5월은 햇빛이 강렬해서 점심 때쯤 되면은 오히려 전등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지킴이 지정은, 물론, 이 관공서는 잘 됩니다.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은 잘 되는데 일선 학교에 좀더 전파되도록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에 연간 전기료 평균이 2,280만원, 중학교가 2,490만원, 고등학교가 4,380만원, 고등학교가 수업시간이 많으니까 더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10%만 절감을 해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여행을 갔다가 동포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독일 가서 살면서 습

관이 됐는지 초등학생까지도 있는 불을 다 꺼버려요. 수시로 들어갔다.....

아, 저렇게 교육이 무섭구나.

독일은 우리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풍부하고.

그래서 우리도 온 가족이 절전하는 모습, 이것은 학교 구성원도 학생들도 대낮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누가라도 끄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평소에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요새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혁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나라도 철저히 절약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혁신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이라는 것이 맨날 위에서 뭐 해라, 뭐 해라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혁신, 서로 동참해서 나부터 하는 혁신, 가능한 작은 것부터 에너지 하나 절약하는 것도 혁신의 하나로 생각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도교육청과 교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제가 우려되는 바가 22조 2항 5호에 외부강사, 특기·적성교육 실시 시 강사의 계약, 관리, 수당 지급 등 금전 관련 업무는 교사에게 부과금지, 그

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그 끝에 금전 관련에만 포인트를 맞추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앞에 강사를 계약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이쪽에 둔다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는 대부분 사교육 시장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프로그램의 수준별 구성을 위해서는 수준별에 맞는 강사를 선택해야 하고, 또 그런 강사의 선택, 계약, 관리마저 교육행정직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렇다면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일반 행정직에 방과후 학교나 특기·적성 교사의 관리 업무까지 맡긴다면 학교당 2,3명 정도의 작은 인원이 근무하는 일반직 업무가 너무 폭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업무가 많다고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하다보면은 일반직 공무원을 더 증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정원은 자꾸 늘릴

수 없으니까 어떤 형태가 생기느냐 하면, 방과후 학교를 위탁 관리하는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한 인헌중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영리 법인 회사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 방과후 수업은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왜 하느냐, 일반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위탁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월 4일 전국의 교육감님, 교육장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2대 공적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이상일 위원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위탁 운영한다면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사교육비 절감이 아니라 새로운 사교육비 시장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단체협약이 학교장의 자율경영을 침해하거나 또 업무 특성 파악의 부족으로 행정업무로 취급되는 사례, 또 이

미 시행 중인 사항, 또는 불필요한 협약 내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단체와 조급 힘이 들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5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질문은 지방교육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래 계획 및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써 이번 행정질의는 작년 감사와 올해의 행정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 제4대, 4년 동안의 그런 감사와 질의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이후에 반영하는 그런 이정표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정말 그야말로 의욕이 과잉되다시피 집행청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수고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신 집행청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육국 소관에서 답변해 주신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문제부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충주 칠금초등학교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지금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시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사의 그런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신뢰를 잃은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그 학교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다는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 학교 홈페이지 트래픽이 굉장히 마비가 될 정도로 여러 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답변을 제가 즉 읽어봤습니다.

칠금초등학교 최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작년 감사 때의 이행 결과까지 일관되게 교육청은 매우 편파적인 태도로 문제의 교사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존경받아야 한다는 당위는 저 자신도 교단에 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제나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을 수시로 때려서 몇 년 전부터 그런 무리를 일으켜 왔고, 학부모들의 그런 잠재적인 불만을 키워온 교사에 대해서 답변에 담임교사가 성실하지 않거나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정도를 벗어난 지도방법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감정적인 폭력이나 체벌과 교육적

지도 간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가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교육을 위해서는 이에 못지 않게 선생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은 징계 일변도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지도한 과정에 따라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선생님께서 정말로 그 방법상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그만큼 정상 참작을 했다고 할까요, 해서

앞으로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로 개전의 의지가 없고 구제불능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런 교사는 교단에 서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은 당연히 응분의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학생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전체 우리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일벌백계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라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잘못된 것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그 징계할 그 대상은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일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조사된 것 외에 그 선생님이 잘못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토로한 내용 중에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서요.

그럴 때 세 가지는 인정하고 한 가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머리를 뒤통수를 때린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런데 그 답변경위서에 보면은 그냥 머리를 쥐어박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경미한 주의 처분인데 이것은 교육장님이 내리신 겁니까?

일단 답변해 주세요.

주의 처분은 교육장이 내리셨습니까?

● 교육국장 박의상

네,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교육장의 거짓말이 전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그리고 제가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늘 저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부모와 통화를 하면서 학교측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은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여러 가

지 논란이 홈페이지상으로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서 찾기가 어려워서 아주 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유난히 별난 학부모가 그냥 문제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올라왔는데 어쨌거나 이것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학부모와 학생들의 그 증언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의 경위서, 그것에서 세 가지 인정한 것만을 했지 단 한 가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징계합니까?

이것이 증징계냐 경징계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사나 교육자의 거짓말이 공적인 거짓말이 아무런 잘못이 되지 않는 이런 풍토 속에서 그것이 교권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이 내부에서는 교권교권 하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가장 사회발전에 더딘 집단이 교사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일가친척 모임에서도 가장 대화에 빠지는 집단이 또 교

사라는 이야기조차 듣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거짓말로 그것이 무마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까지 수도 없이 되풀이 돼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시고 지도·감독하실 때 고려하시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문제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지금 4년 동안도 그렇고, 그 이전에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있을 때에도 학생 체벌에 관해서 했을 때.

작년에 덕성초등학교 문제 연관된 분이 장학사로 계셨을 때에도 그 문제를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완전히 없었던 일로 그렇게 그것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그 선생님은 교단에서 떠나셨습니까만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할 수 없는 무력감에 굉장히 그것이 우리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아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 안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범적으로 하신 분이 많으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걸리지지를 않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80%가 교육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교사평가를 원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왜 학교, 교육청 단위에서는 이런 어떤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 대한 정직,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처럼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있는 어린이를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애들을 등이나 머리를 때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공작물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다고 충주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정도의 그것으로 경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어떤 호소가 교육청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이 부분에 대한 교권에 대한 옹호만을 계속해 왔던 그런 자세들이 이제까지 우리 학교에 대한 불신

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키워왔다는 것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생님에 대한 처분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선생님은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학부모 요구 때문에 담임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통해서 열흘 동안의 장기휴가를 내고 장기근속휴가입니다, 그것을 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병가를 두달 동안 내서 방학 동안에 있는 다음에 교장의 직권 내신으로 다른 학교로 전출 가겠다는 요지의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각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그 각서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냥 선처를 바란다, 아니면 자숙하고 있다, 반성한다 하는 내용의 각서라는 등, 그 다음에 학교의 관계자 분은 그 안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처분에 관련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각서였다고 하는 이런 차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선생님은 다시 2개월 동안에 다시 유급휴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아이와 학부모 때문에 그야말로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수가 그렇게 높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 물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징계가 아니고, 특히 또 경징계도 아닌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두달 동안 편안히 쉬다가 다른 학교로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써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을 바로 잡으신다는 말입니까.

저로서는 이 처분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미 다 난 결론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향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재발할 때 저는 우려만큼은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몇 번이나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몇 년이나 계속될 것인가를 저는 우려합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천 문백초등학교 영양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어제 그에게 갑자기 처음에는 그 영양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더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어떤 분들인지는 몰라도 영양사라는 분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면서 전부 그 영양사를 옹호하는 그런 글, 교육적으로 정당했다, 영양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으니 상을 줘야 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가 보면 영양사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항의성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의 답변은 그래도 그런 어떤 집단의 반발이나 또 그런 강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지도해서 발생했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논할 때 폭력과 그리고 교육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위적 강제와 아무리 그것이 권위적 강제가 교육의 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용인받을 수는 없는 것이 새시대의 어떤 논

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덕성초등학교 사안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해당 교사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징계를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야말로 그것을 지연 보고를 했다든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가 한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어떤 처분이 부당했다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담임선생님이나 그 미술전담 선생님에 대한 처벌이 온당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최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계속 올리다가 8월달에나 돼서, 이게 5월달 발생한 사건입니다, 8월말이 돼가지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이 저한테 전달이 되면서 이것이 허위라는 것이 청주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감사 중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허위 감사록에 대한 처분을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되

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육위원회 행정질의에 대해서 이런 답변밖에 주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교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인사조치 하였다는 부분도 경고가 지도·감독 소홀이고, 보고 지연이고 그렇습니다, 그 해당 교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사조치로써 그러면 그 허위 회의록에 대한 처벌을 갈음하셨다는 말씀인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의상**

우선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과정을 일일이 낱낱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진옥경 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 개인, 교육국장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호되게 혼나고 있구나, 고개를 못들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진옥경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를 못들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정말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사안이 엇그저께도 발생

했다고 해서 사안보고가 들어오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이런 정도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정말로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가슴으로 뛰고 발로 뛰니다.

다만, 일일이 정말 구석구석 뒤져보지 못하는 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마지막에 질문하신,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될 답변을 원하시는지.

● 진옥경 위원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학년초든지 이제 해서 외부 인사까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해 학생 부모, 피해 학생 부모들 간에 그리고 학교 측의 어떤 협력체를 구축한 다음에 그 문제들을 그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쳤다든지 하면 그 분쟁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성초등학교에서 그때 발생한 5월 6일입니다, 작년. 딱 이맘 때군요. 그것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지 않

았어요. 그리고 그 법률은 이미 전 해에, 2004년도에 국회를 통과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일선 학교에 공문 시행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즉 불 적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은 그 당시에 제가 행정감사시에 그것들을 걸쳐놓고, 행정질의군요, 8월말에 있었던 정말 교육청에서는 정말 천무후무한 그런 제가 실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커다란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이 본회의장에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연필 깎는 칼로 조금 허리를 찔렀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이 언론에 이튿날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아이가 수술 받은 자국이 어마어마한 사진이, 뒷모습이 찍힌 것을 보고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수술받기 전에 찍은 사진, 그것을 의사선생님이 주셨다해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는 정말 여러 해

동안 자주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던 그야말로 요보호 학생이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그 회의록을 작성을 했어야 할 수도 불구하고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8월 30일날 행정질의 시에 그 회의록이 없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하기 바로 직전에 계속 집행청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그날 아침에 저한테 회의록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 다음에 담당선생님, 그리고 뒤에 여러 번의 제출이 있었지만은 9월달까지 이어진 그런 자료 제출에는 거기에 학교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구성원인 학교운영위원장은 전직 교육장이셨습니다. 그분의 도장, 그 다음에 모든 교사들의 도장이 찍힌 허위 회의록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또 그러한 발언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회의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그것을 작성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육위원이라는 직책의 앞에다가 그런 학교를 거쳐서 청주교육청과 도교육청을 거쳐서

교육위원 앞에 그런 허위의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독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왜, 제 혼자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능멸하는 처사예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가짜로 도장을 찍어서 만든 거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그것은 엄연한 공적인 거짓말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징계의 양형에 따르자면은 그것은 성실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벌이 없다는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신건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 **진옥경 위원**

아니 여기에 왜 답변합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제가 양해를 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청주교육청 관리국장으로서 이 사안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변명사항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말씀을 들어보세요.

● **진옥경 위원**

아니, 징계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경고 인사조치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경고는 이 허위 회의록까지 포함해서입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지도·감독 책임을 물은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고규강**

총무과장님 앉으시죠.

● **진옥경 위원**

어디에다가 지금 그런 거짓말을 답변하십니까, 지금.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주셨고, 또 일부 격려 말씀도 주셨습니다.

진 위원님께서도 수천 장에 걸친 우리 복사물이 우리 진짜 우리 직원들이 밤 새워 가면서 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주셔서 정말 저도, 우리 직원들도 그 말씀을 듣고 피곤이 풀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전부 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면 충청북도교육청은 맨 사고가 나고 은폐하는 집단으로 알고 쉽고, 저는 그런 걸 은폐만 하는 사람으로 알기 쉬운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칠금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진 위원님 실제로 만나보셨습니까?

● **진옥경 위원**

어느.....

● **교육감 이기용**

칠금초등학교 선생님 만나보셨습니까?

● **진옥경 위원**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그런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인정하고 한 가지는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도 만나보시지 않고 단정적으로 그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단정해서 말씀을 주시고.....

● 진옥경 위원

경위서가 있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또, 처분이 주의니 뭐 이런 거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진짜 사고 하나 나면은, 그 선생님도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선생님이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라는 것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선생님이 무슨 징계를 받았다, 우선 사랑하는 가족, 자기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그 주위에 징계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어떤 면으로 교사로서는 치명타입니다.

또, 먼저 번에 진 위원님이 인사조치를 하는데 시에서 시로 가는 게 무슨 그것이 좌천이나, 경고성 인사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먼 단위에서 시로 오든, 시 단위에서 먼 단위로 가든 원하지 않는 데로 가면 이것은 대단한 좌천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사실은 그런 사건 때문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역량이 발탁이 되는 기회가 늦어진다는지 늦춰진다는지 하는 것은 그분들이 평생 교육계에 봉사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큰 타격입니다.

이것이 그 징계를 얼마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학생들이 우리의 목적이고 주체지만은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도 주체입니다.

이 선생님이 어떠한 지도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퇴출 대상 그런 행위가 아닐 때에 너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또 그리고 아까 뭘 자꾸 은폐니 이러는데, 우리가 물론 사실규명, 보도 같은 것은 정확히 하지만 그것을 널리 안 알리려고 하는 것은 그 극히 일부 선생님의 비리 때문에, 비행 때문에 나머지 훌륭한 선생님께 누가 될까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떠한 사고를 공정하게 처리 안 한다든지 그것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현재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제 의지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의 인격을 그렇게 뭐 이런 자리에서 그야말로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무안하게 만들 의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답변에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한번의 행정감사가 있었고, 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을.....

그것이 곧 지금 우리 이기용 교육감이

나 서명법 부교육감 체제의 어떤 지학, 이런 것들을 드러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로 참 저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은 교사 자신이 지키는 것이고, 또 일부 부적격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것을 드러낼 때 선량한 많은 교사님들이 그야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그렇게 강변하셔도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그런 처사라는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교육자는 더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다니까?

개인적으로 거짓말 하고 싶은 유혹들도 있고, 때로는 사적으로 그야말로 가벼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고가 있고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 적발된 것과 같이 처벌돼서야 되겠습니까?

음주운전도 그것이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충주교육청에서 같은 칠금초등학교 문제였던 몇 년 전에 충주,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운행 10부제를 위반해 가지고 그걸 주의를 여러 사람이 받은 것을 보면서 이것은 교육청이 매우 그 선생님들의 권위적으로 임하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법적인 어떤 것들을 위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주의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칠금초등학교 선생님이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심하게 하고,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했던 일과 똑같이 주의란 말입니까.

이것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그런 사안인데 음주운전, 그 경미한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10부제 위반에 저기하는 감사 당일 날 갔을 때 적발된 그야말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은 그 주의와 어떻게 똑같이 주의라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저는 교육자적인 어떤 그런 태도나 이

런 것을 위반한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중징계를 내려야 되고, 음주운전이나 그야말로 10부제 위반 같은 경우들은 약한 것들을 내릴지언정 이것이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 **교육감 이기용**

저는 지금 진 위원님이 우리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음주운전하고 그거하고 지금 비교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 음주운전 사전에 측량하는 거하고 우리가 선생님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 **진옥경 위원**

같은 주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 **교육감 이기용**

아, 글썄 처분은, 음주운전은 아예 돼 있는 거고 우리 선생님의 그 행위는 그것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본인이 자인을 했고, 하나는 안 했다고 해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학생 징계도 그렇지만 선생님 하나 징계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볍게 못합니다. 그걸 다 참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게 징계를 한 것이고,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이 형량이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 가족이나 주위나 친지들에게 미치는 그 타격이라는 것은 주의, 그 음주운전 때 주의 받은 거하고는 그 차이가 큼니다. 같은 주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것은 쉬쉬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주의 받은 거 누가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교육자의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허위에 대해서도 전혀 처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교육자가 자기 명예를 자기가 지켜야지 그럼 누가 지켜줍니까.

교육청은 그런 어떤 거짓말 하는 교사의 명예까지도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권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게 부끄러우면은 정직해야 할 순간에 정직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용인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어쨌거나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

인사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건환 총무과장님, 예전에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계셨고, 김천호 교육감 계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충북여중 사안이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요.

교사에게 경고조치 내렸다, 경고조치 내렸다 하는 그런 답변을 저한테 하시려고 일어서셨습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그게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제가 여쭙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 총무과장 신건환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결과 처분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장선생님에 대한 경고 처분의 이유도 제가 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답변을 안 들으시면 질문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 들으시려면요.

● 진옥경 위원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

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어디 했습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경고 인사조치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

● 총무과장 신건환

경고 인사조치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어디 경고 인사조치입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그리고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는 충북교육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발전하려는 숭고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와서 간담회 때 사안보고 드렸고,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이상 그 외 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매년 누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충북교육을 걱정하시고서 발전방안을 논하시려고 하는 의도인지 저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 진옥경 위원

경고 인사조치를 며칠자로 내리셨습니

까?

● 총무과장 신건환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지금 여기에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교감선생님도 받으셨고, 교장선생님도 받으셨어요.

● 총무과장 신건환

글쎄, 그 사안을 작년에 보고드리고 행정감사에 다 받은 사항 아닙니까?

● 진옥경 위원

그런데요 글쎄 그 허위, 행정감사 때 밝혀진 사안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시 처벌을 내려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 회의록에 대해서 그러면은.....

● 총무과장 신건환

기관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을 다 물은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애입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저희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고규강

총무과장님 앉으세요.

● 진옥경 위원

계속 제가 물고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른 징계, 처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발된다는 겁니다, 저는.

● 교육감 이기용

적절하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죽어간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공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 교육감 이기용

그런 말씀 그건 사과하세요. 어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죽어가긴 뭐가 어떻게 교육이 죽어갑니까?

● 진옥경 위원

공교육이 죽어간다는 말씀을 인정하기 싫으시죠?

저는.....

● 교육감 이기용

어떻게 공교육이 죽어간다고 하십니까, 교육이 죽어간다고 그러십니까?

● 진옥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저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 의장 고규강

진 위원님.

● 진옥경 위원

지금 오늘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질문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욕신각신하기 싫고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교육청 담당과장은 일선 학교로 인사조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징계나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이기용

없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인사조치도 처벌에 들어갑니까?

아무런 징계 없이 행정처분 없이 인사조치는요.

● 교육감 이기용

인사조치도 처분에 들어갑니다.

● 진옥경 위원

처벌에 들어갑니까?

● 교육감 이기용

예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처벌인지 아닌지 정기인사 때 그냥 발

령한 것인데.....

● 교육감 이기용

그것은 책임자인 제가 결정합니다.

● 진옥경 위원

예?

● 교육감 이기용

인사권자인 제가 결정해서 합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결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징계의 어떤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안 띠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 진옥경 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합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교육감이 처분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교육감 이기용

다른 사람한테 그건 안 알립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말 씀이지요.

● 부교육감 서명범

아니 지금 그러한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인사를 인사권자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데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렇게 할 것은 저는 아니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서 그 자

리에 그냥 뒤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인사조치를 시키면 그것도 역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 진옥경 위원

그 근거를 주십시오.
저한테 인사조치.....

● 교육감 이기용

근거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근거 없습니까?
(침묵)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과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처분할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 제가 그 저한테 준 그런 자료와 교육에 보고한 자료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할만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후에 제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이 회의록 뒤에 첨부되고, 서면답변서를 받았습시다만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로 보낸 것뿐이고, 그 다음에 저기하지 않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서면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에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그 근거를 대 보십시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 고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과 반복된 말씀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학교 해당 과장하고 담당 장학사를 처분을 못 내리는 이유는 해당 학교에서 그 폭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인양 서류가 작성돼서 청주교육청에 왔기 때문에 청주교육청에서 그것을 1차 교육청에서 진단하고 추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작성 당사자인 학교장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서 경고 인사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것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때 적발된 내용은 다른 거예요.

● 총무과장 신건환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진옥경 위원

요지를 모르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 총무과장 신건환

다시 한번 말씀, 무슨.....

● 진옥경 위원

보고내용에 문건이 있습니다.

모두 몇 장입니까?

덕성초등학교 학생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입니다.

이것에 대한 처벌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 **총무과장 신건환**

경고조치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진옥경 위원**

처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대로 넘어갑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 보고내용 몇 장입니까, 총.

● **교육감 이기용**

처벌하지 않을 사항을 처벌 안 하는 것도 그 일의 처리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글썽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까?

● **교육감 이기용**

처벌대상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 **진옥경 위원**

거짓말인데 왜 그것이, 거짓으로 교육 위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교육부 보고내용과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달라서 감사 때 지적했는데.....

● **교육감 이기용**

저기 위원님, 보고라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이 그걸 드렸습니다.

교육부에 보고하고 위원님께 드렸는데 그 지휘관은 지휘 감독 처분해서 인사조치 했지 않습니까.

● **진옥경 위원**

무엇을 인사처분 하셨습니까? 누구를 인사처분 하셨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요.

담당자, 담당자가 저한테 주셨지만은 이것이 다릅니다, 내용이요.

이것은 허위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과 똑같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부 보고내용은 모두 총 아마 앞에 거까지 해 가지고 여덟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첨부 문건으로 해 갖고 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맨 앞장만 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두 장이 그냥 누락돼서 저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맨 첫 장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유서 참조라는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고 저한테 그 뒤에 부분도 같이 누락했다면 고의적인 허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지요?

● 부교육감 서명범

아니, 진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충분히 다 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진옥경 위원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서면답변으로써 뒤에 첨부하셨습니다.

메일로 보냈고, 오늘도 그 서면답변서 뒤에 그 첨부 문건을 보면은 메일로 보냈다 하는데 메일이 아니라 팩스로 보낸 것이 여기 다 표기가 돼 있고, 시간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얼렁뚱땅, 그때 교육감은 모르실거다, 갑작스런 사안이라 모르실거라고 분명히 대답하시고 추후에 조사해서 답변해 주겠다고 서면답변으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더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안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그냥 두루뭉실로 그 교장선생님이 뭐 보고 지연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서 도 교육위원한테 제출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 의장 고규강

저, 신 과장님.

위원님이 누구한테 답변해 달라고 할 때 일어나서.

위원님께서 누구 답변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을 하면 얘기를 하세요.

● 진옥경 위원

그것이 왜 다릅니까, 두 개가?

교육부 보고내용과 교육위원한테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지금 뭐 첨부서류가 빠졌단 말씀입니까?

● 진옥경 위원

뒤에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빠지면은 실수로도 누락됐다고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 장에, 자세한 것은 뒷 장에 첨부 문건 참조라고 해 놓고 뒷 장은 두 장이나 되는데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 부교육감 서명범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보고한 문건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세 장짜리인데 한 장만 갔다, 그 말씀이십니까?

● 진옥경 위원

글쎄, 한 장이 왔는데요 맨 첫 장 밑에

보면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유서 참조라는 문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한 장이 아니라 한 장 이상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요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유서라는 참조, 이 부분이 아예 첫 장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수의 누락이. 이것은 고의적인 그야말로 조작이라고 봅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메일로 받으셨습니까? 메일.

● 진옥경 위원

메일 아닙니다, 팩스로 받았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게요,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부감님께서 더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시고, 결국 여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질의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처벌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중등 파트에서 위원님께, 저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초등이고요, 그 당시에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전창동 초등교육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봐라, 이것은 그냥 그대로 했는데 두 장이 빠졌을 뿐이다,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서면답변이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메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회의록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으로요.

이것을 누가 교육청 바깥에 가지고 가서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뒤에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별 사안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 지체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도 주의처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6개월을 남기시고, 정년 6개월 남기시고 자진 명예퇴직 하셔서 가지고 그냥 물러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 문제 아닙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위원님, 그럼 그 자료를 주시면은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복사해 주십시오. 저도 이 자료는 한부 밖에 없습니다.

● 의장 고규강

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정회)

(18시 14분 속개)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셔서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유서 참조. 그런데 왜 사유서가 안 붙은 가짜 서류를 썼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서면으로 답변 받았습니.

● 부교육감 서명범

글쎄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진 위원님께

서도 그렇게 말씀 들으셨죠?

뭐냐면, 교육부에서 이 사안이 나와 가지고 해당 과에서 개요를 보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지체사유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보낼까요 했더니.....

교육부에서 지체사유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국에서 거의 매일 사안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그 개요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 사안이 어떻게 발생을 한 거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보고가 왜 늦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필요 없다 해서, 그럼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앞장만, 그러면 앞장만 보내라 해 가지고 앞장만 보낸 거고, 그렇게 앞장만 보냈기 때문에 진 위원님께서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니깐 교육부에 실제 보고한 것도 실제 한 장이고, 뒤에 것도 만약 보냈다면은 그것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유서 참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거짓으로 해 가지고 진 위원님께 제출한다면,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유서 참조,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 위원님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도 앞장만 보냈기 때문에 진 위원님께 앞장만 제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제 원본 주십시오.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부 보고내용은 어떻게 된 문건입니까?

제가 맨 나중에 덕성초등학교 상해 사건 사건보고 한 장짜리는 저한테 준 거고, 나머지 이 네 장은 교육부에서 받은 겁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네 장을 교육부에서 받았다고요?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교육부에 간 문건을요.

교육부를 경유해서 받았습시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육부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그렇게 부감님이, 그렇게 책임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 부교육감 서명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알고서 우리 진옥경 교육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 진옥경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 부교육감 서명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한 담당 장학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진 위원님,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 가져올 때까지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진옥경 위원

이것이 정리가 돼야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서대로 지금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짓말이 아닌 증거를 대실 수는 없겠지요.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질의에 대한 집행청의 태도에 너무나 제가 절망합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추후의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을 묻지 않

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은폐와 축소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사안에 따라서 다 인정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작년 부강초등학교 성추행 사건도 그 당시에 진행중이었던 사안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코치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은폐 축소의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원봉초등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원봉초등학교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며칠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과정상에 은폐 축소의 의혹, 그 다음에 얼마전에 또 청주남중학교 코치가 학생을 구타해서 허리를 못 쓰게 되고 그 6개월 후에 학부모가 구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구속이 아니라 고소를 하면서 해임된 그런 사건의 과정들, 이런 것에서 전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어떤 직무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변하셔도 이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크고 작을 수는 있고 학교에서 빈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앞으로는 더 그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가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야말로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사들, 그리고 시교육청, 도교육청까지 전부 절대로 거짓말을 용인하지 않는 이런 일벌백계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들은 전부 그런 학교 사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진 위원님, 시간이 저기니까 질의를 계속하시고 문서로 받으실 수 없습니까?

● 진옥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문서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하신 문건 잘 받았는데요, 제가 또 관련해서 학교 예·결산서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요 지금 이 답변서에서 분석을 나름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교육부에서 나온 어떤 표준안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학교가 8개의 학교, 총 8개의 학교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9개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명칭을 거론하겠습니다.

서원고등학교 영양사, 사서, 옥천고등학교 사서보조, 괴산고등학교 사서보조, 청주여고 사서, 진천중 사서보조, 충주여중 사서보조, 진천 한천초 사서, 미원초 사서, 영동 인터넷고등학교 교무보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서나 사서보조는 365일 기준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245일이나 또 335일이나 이런 형태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나름대로 무엇이 이렇게 비정규직들을 분노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추경이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랬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다.

답변에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교육부에서 권장안이 내려오고, 기준안입니다, 초·중등학교 회계 직원 계약관리 기준안,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 대다수의 도내 학교들이 전부 여기에 의거해서 비정규직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유독 이 학교들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발휘가 되고 그 다음에 종전보다도 못한 계약조건으로 이 비정규직들이 계약을 마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도교육청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예산을 다 썼고 총액으로 썼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교장들이 재량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터치 못한다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쪽 자료들을 받아 본 바로는 2005년도, 2006년도 학교별 학교 운영 기본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그 액수가 거의 비슷하게 각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일선 학교로 내려간 것으로 도표화 돼서 저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집행되지 않는 것은 어쨌든 도교육청이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일선 학교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발휘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예산을 주면서 학교 너희들 잘못했다, 왜 가련한 1년차

리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마 음대로 할 수 있다, 재량권이니까 교육위 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왜 주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안 은 아마 최대치를 정한 그런 기준안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도 그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 거기 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 실정 에 맞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 하에 비정규직의 업무량이라든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시다만은 재정형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어떤 구성원이라든 가 또는 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학 교 책임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 영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원고등학교 사서 문 제가 문제가 되고 여러 명의 사서 분들이 교육청을 찾아오셨을 때 저한테 제출하신 서원고등학교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 내 역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액 중에 학교운영비 지원 조정에서 보면 1억 2,522만원이 지 원 조정된 것으로 저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학교예산서를 전부 다른 학교도 비정규직 현황을 보기 위해 서 예·결산서를 제가 전부 요청을 했습 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서 전에 2006년도 서원고등학교 학교운영 기본경 비 지원 내역에서 보면 운영비 조정액이 1억 4,430만 9,000원으로 다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지금 그 편성기준이나 모든 것에 대해 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학교의 재량사업 편성권 을 주면서 총액 경비를 줄 때는 학교에서 교과활동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비라든지 그 시설관리 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법

정 경비라든지 해서 총 기준 재정 소요를 따집니다.

기준 재정 소요를 따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체 수입이 없으니까 기준 재정 경비대로 주고, 육성회비가 있는 학교는 육성회비 수입액을 감안해서 그 차액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은 학교장 자율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진옥경 위원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진옥경 위원님께 고대도 말씀을 여쭙지만 이 사항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교육감님 면담에서 이 사항이 충분히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보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상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동 항목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 총무과장 신건환

뭐가 상이합니까?

그 자료가 그러니까.....

● 진옥경 위원

제 말씀을 뭘로 들으십니까.

질의도 안 듣고 답변하십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아, 화내시지 말고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 다 드리겠다고.....

● 진옥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그 예산 내용은.....

● 진옥경 위원

학교운영지원비 조정액이 처음에 저한테 제출한 액수와 그 다음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그 도표와의 표기된 액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 총무과장 신건환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자체 수입이 있는 학교는 당초 책정한 거에서 자체 수입을 감해서 저희들이 총액 경비로 학교에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 운영비 조정액, 그 조정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글쎄 조정액이 자체 총액 경비를 산출하고서 자체 수입이 없는 데는 총액이 내려가지만 자체 수입이 있는 데는 자체 수

입을 감하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 진옥경 위원

차액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요 저한테 제출한 차액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문건이 다르면서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그러면 다시 실무진에게 확인, 말씀드리고 지금 245일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누차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 계약은 쌍방입니다.

계약 상대자가 있는 거고, 과연 그러면 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기관에서 한 것은 모두가 잘못됐고 진 위원님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대로 실정이 있는 거고.....

● 진옥경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약자의 편을 들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 당사자는 학교에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임무나 역할을 다 했는지도 판단을 해보야 할 것이고, 또 구성원 간에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본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245일로.

● 진옥경 위원

여기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에서 교특으로 내려간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불한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예산을 책정하기는 기준 재정 소요 기초자료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12명이 내려온 것도.....

● 진옥경 위원

여기 인건비와 퇴직금이 분류돼 가지고 계까지 해서 항목별로 나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글쎄요, 그것은 책정 기준입니다, 집행기준이 아니고. 지금 목적경비에는 해당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책정해서 내려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은 이런 차액이 나고 학교 현장에 제가 서원고등학교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않으십시오.

갔을 때 학교에서는 터무니없는 문건이라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쓸 예산은 태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는 이런 책정의 근거, 이런 것들이 전혀 학교측에는 먹혀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그런 어떤 지도 감독을 위한 장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학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어도 그야말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항목에 의거한 정확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신건환

그 답변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진 위원님께서 용어 해석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준안하고 집행 기준하고는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기준안입니다, 집행 기준이 아닙니다.

용어 해석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길 건의 말씀드리고, 지금 고대 말씀드린 기준안 대로 못된 학교가 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9개가 맞습니다.

한 학교는 충주에 있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기준에 없는 학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책정한 기준에 있는 학교만 해서 8개고 해서 한 학교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사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 24개교입

니다, 기준안 대로 책정이 안된 것이.

그러면 그 답변드린 대로 구성원의 의견과 예산 기준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책정된 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준안이 아니고 집행 기준을 내려보낼 것입니다.

● 진옥경 위원

집행 기준이든 제가 액수의 다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 총무과장 신건환

그것이 기준안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학교예산서에서는요 그보다도 못한 액수들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비지원 내역으로써 일단 나온 것이 학교예산에는 이렇게 적게 반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그래서 제가 고대도 외람된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기준안하고 집행기준의 차이점은 실제로 각론에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우리가 공문서를 내려보낼 때는 그러한 총액 경비를 산출하기 위한 산정기준입니다, 산정기준. 집

행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24교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양사, 사서,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보조, 비단 서원고등학교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액수의 다과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했죠.

● 총무과장 신건환

지금 액수와 관련된 거죠.

245일하고 365일은 보수의 연봉 차이가 큼니다. 일수를 줄였다면 연봉을 줄였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려간 액수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학교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도교육청에서 얼마가 책정이 돼서 내려갔는데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 책정해야 되는 365일 기준으로 할 때는 학교 자체 부담이 다른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거냐 말씀이죠.

● 총무과장 신건환

아니 글썽 예산편성권이 학교장에게 있으니까 학교장이 타 경비액에 가감을 해서 충분히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보세요.

지금 제가 그 편성기준안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조항들이 쪽 있지만은 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칙에 보면 작년에 그 계약했던 기준보다 기준이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을 적용한다라는 부칙까지 들어 있을 정도로 비정규직의 어떤 그것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에서의 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365일 하다가 올해 245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부칙에 나간 사항은 첨부물입니다.

첨부물은 첨부자료로 끝나는 거고, 모두 표지 공문에 보시면은 교육부에서 이런 안을 개정해서 송부하오니 시·도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실정에 맞도록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첨부물은 거기 딸려가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아십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아니 타 시·도교육청하고는.....

이게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타 시·도교육청하고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주면서 시·도교육감 자체.....

● 진옥경 위원

교육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때 그 기준안에 못미치는 사안이 있느냐 하면서 엄청 놀라고, 그런 사안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학교재량권이니까 우리는 보호 못하겠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답변은 뭐냐 하면 향후에 뭐 나라에서, 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2007년도나 이런 정도에서 보호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이 위로는 정부 탓을 하고, 아래로는 재량권이라는 이런 명목으로써 그 와중에 비정규직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어쨌거나 저는 이것들을 그냥 항목별로 전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고 싶었지만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위원님들의 성화가 빗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차원, 그러니까 청주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것은 비정규직들이 전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달라, 이런 문안을 넣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저는 청주교육청은 매우 모범적으로 지금 그것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거의 되어 있고, 지금 8개, 9개의 시·군교육청에서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잘 계약된 문건들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몇 개의 학교들을 재량권으로 미뤄버릴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들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약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조치들을 행정적인 조치들을 만들어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대.....

● 진옥경 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 의장 고규강

앉으세요, 앉어.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대헌 위원

예,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 의장 고규장

송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먼저 하시죠.

● 이기수 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하고 답변하느라고 위원님들이나 집행청 관계관께서 굉장히 수고를 하며 지루할 걸로 생각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기 신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요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의 사기가 추락했을 경우는 절대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사기를 항상 진작을 시켜줘야 한다는 내용을 저

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가르쳐 주는 가장 은혜스러운 분들이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한다든지 하면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격언에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다 보면 애를 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잘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쳤을 때 그것이 감정적으로 그것을 그 처사를 학부모들이 항의한다고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뭘 믿고서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합니까?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선생님이 있고, 열의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와 같은 열의를 가지고서 학생을 지도하게 분위기를 만들려면 학부모나 집행청에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억울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게끔, 열 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명명백백히 교권을 보호해 줘야 하는 데는 교권을 보호해 줘

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학부모가 잘못 했을 경우는 학부모한테 항의하고, 선생님이 물론 잘못했을 경우는 그런 선생님은 퇴출 대상은 퇴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대통령이 선생님들이 가장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교권 옹호와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이기용

고맙습니다.

● 의장 고규강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권은 교사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 지식들에 대한 어떤 모든 가족들에 대한 그야말로 양육할 수 있는 원천이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야말로 진상조사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편파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교권은 편파적으로 해서 지켜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저는 교사 하나하나를 매도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교사 집단이라고 할 때 이런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우리나라 교육에 매우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학부모들이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한 시민의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떳떳하게 키우려는 자세들을 확립해 나가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다른 위원님.

● 송대헌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은 이대로 매듭짓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우선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질의에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이 있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공교육의 내실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입시제도도 따져봤고요,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쪽에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육국장님께 좀 들려볼까 합니다.

제가 우리 전국에 있는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강원도하고 광주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광주에서도 여덟 군데, 강원도에서도 동이나 서나 해 가지고 유치전이 활발해요.

왜 이렇게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열을 올리는가. 물론, 영재교육 차원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봤더니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가 대원, 대일, 명덕, 서울외국어, 이화외고, 한양외고, 6개가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에 2006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진학현황을 봤더니요 그 여섯 군데 합쳐서 서울대가 계로, 뭐 낱낱이 어느 외국어는 얼마라고 안 하고 합쳐서 서울대가 203명이에요, 연세대가 585명이에요, 고려대가 563명이에요, 이화여대 186명이에요, 서강대 기타 등등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적인 우리보다도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이래서 지금 보도나 신문에서 명문고가 됐다 해 가지고 심지어 서울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특별 과외도 있고, 특별 반 편성도 있고 이런 붐들이

조성이 되었어요.

그럼 서울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외고나 경북외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대전외고까지도 아주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외국어고등학교에 넣을까 하고 고심하는 현상이 현주소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를 맡기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는 어떠한가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어요.

진학이 전부 이 학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진학 현황으로 봐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도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그렇다면 전국의 외국어고등학교가 다 명문고로 선호하는 학교인데 왜 우리 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는 그 반열에 끼지 않고 여기 자체 분석, 학교의 자체 분석에 나온 현황분석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적 우수 학생이 본교 진학을 기피한다든가 청주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제고에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학력제고를 통한 학교의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고 지금 자체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을 선도하고 이끄시는 이기용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외국어고등학교의 활성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다른 시·도는 왜 이렇게 활발하고 선호하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갖은, 학부모들이, 수요자들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는 왜 진학이나 또 수요자의 만족도가 많이 미치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실무를 잘 아시는 교육국장님이 활성화 방안을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진옥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기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권 하면 대단히 중요하죠. 또 어제 질문에도 모두에 다양화된 사회에서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이 혼재돼서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이 가치가 혼돈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진 위원님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많은 열정, 이것이 둘 다 다 우리 동료 위원들 두 분 다 오늘 장시간 했습니다만은 충북교육을 걱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정질의도 하고 하니까 아마 공방이 더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질의도 하고, 그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모두가 질의하시는 진 위원님이나 우리 답변하시는 집행청 관계들이 우리 충북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다만, 우리 집행청에서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어요.

많은 논의의 초점이 보고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정확치 못하다 하는 쪽의 논의와 그렇지 않다, 이런 쪽의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 교훈삼아 들을 부분이 있죠.

우리 유명한 황우석 박사가 저질렀던 그 실험의 결과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서 엄청난, 국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시다.

특히,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집행청에서 허위 보고를 하고 거짓을 했다고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런 시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청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진실된 것이 서로 보고되고, 서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생산적인 장이 됐으면 하는 감회를 하나 갖는데,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권의 문제, 급식의 문제입니다. 첫머리는 돌팔매질한다는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만은 아주 파렴치한 선생님이 아닌가 했다가 어제 보도에 보면은 자기 양심고백에 의해서, 또 교육자구나, 좋아요, 어느 거 하나는 진실이겠죠.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단, 그

리한 것이 크게 보도되고 서로 어떤 한 쪽에서는 질시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옹호하고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급식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을 걱정하고 지도하겠습니까.

아까 모 위원께서는 교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다 공감합니다.

스스로 지키는 것이죠.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 교원도 신이 아니고 교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활하는 생활인이거든요. 세파를 따를 수 있고, 자기 처자식도 거느리고 주변사람들한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좌천이나 당하고 또 정말로 첫머리에 얘기했지만 파렴치한 사람이라서 퇴출이나 당하면 가족은 누가 벌어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좀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인 원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 어떠한 보도나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사실에 입각해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아주 중심체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존경하는 송대헌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해서 소상하게 여러 가지 그 여건이랄까 문제점들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애초에 충북에 신설할 때 그 뜻대로 특수목적에 지향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쪽으로 교육을 해서 사회 진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라든지 우리 교육수요자 학부모 어머니들의 정서는 오로지 일류대학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에 1994년이래 보면 그 응시제한을 만들어놨습니다. 연합고사 170점 이상이라야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두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미달이 돼서 스페인어과 20명, 러시아과 20명 통합 운영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더 정했습니다. 연합고사 170점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서 역시 교과 통합 운영을 했습니다.

중국어, 불어 이것도 미달이 돼서 17명, 16명 이런 상황이었구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96년 3회 때는 연합고사 160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 운영마저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999년에 비교내신제라고 하는 특목고 학생이 진학을 할 경우에 주는 인센티브 제도마저도 폐지되는 바람에 청주 외국어고등학교의 인지도가, 선호도가 매우 낮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만 놓고 본다면 그 이미지 제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서부터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고심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역대 교장선생님들이 걱정을 해서 그 지원자격 제한을 뒤야 되겠다, 우선, 200점, 300점 이하 짜리는 못 오는, 그것은 선후를 따지고 우선 학력제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이런 학교에서들은 소위 일류 명문대학에 몇백 명씩 넣어서 명문학교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 공식 석상에서 드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교과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간판은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지만은 실제로는 입시,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위주의 교육만 가지고 되느냐.

우선 우수 학생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청주 외국어의 경우에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이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에 편중돼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이원화해서 입시위주의 일반계고등학교 쪽, 또 정말로 순수 외국어 쪽의 교육과정을 짜는 방법,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목적을 살리든 또 정말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일반계고등학교로 변형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입시지도를 통해서라도 우선 이미지 제고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그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숙의를 해 보고 발전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 방향으로 계획을 해 볼까 합니다.

● 송대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저도 질문하면서 대안을 했던 것을, 대안으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까만은 아까 인문계고등학교도 입시방안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형방법에서 좀 제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영어과 같은 것은요 영어과 같은 것은 첫머리에 정원이 2004년 70명에 113명 하던 것이 2005년에는 정원 60명에 319명이 응시를 하고요, 지원을 하고, 2006년에는 60명 정원에 261명이 지원을 했어요.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수한 아이들의 선발 문제인데 우리 나머지 다른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전형 플러스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제도를 하는데 유독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만 일반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시제도도 유인체제를 강구해 주시고, 또 교육감께서는 특단의, 좀 활성화하려면 재정 지원이라든가 학교의 과가 할 수 있는 원어민부터 교육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특수목적고등학교 한 학교 운영하는데 일반계 학교의 여러 개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만은 더 배전의 예산지원과 또 학교와 우리 중등장학과 기획팀하고 같이.....

나 또 이 장학에 대해서도 하나 이게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장학지도 하면은 우리 충북에서 컨설팅 장학이나 초청장학이나 맞춤형장학이라는 참 좋은 내용이 많더라구요.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근사한 장학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학의 궁극의 목적은 제일 핵심은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현장의 교실수업 개선이 첫째이지만 요즘은 패턴을 바꾸어야 할 맞춤형장학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장학지도를 나가시기 전에, 학교에서 아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뭐가, 학교에서 외국어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명문학교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또 인문계고등학교 같으면 우리 입시제도의 방안에 이런 고심이 있어서.....

그런 주제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그런 주제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절한 장학관님이나 장학사가 학교에 나가서 수업지도는 물론이고, 컨설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학교의 고민거리를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학교가 제일 고심하는 부분을 받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학으로 발전해야 되는.....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재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 거냐, 아,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

이 꼭 필요합니다 하면은 좀 그런 지원도 하고, 선생님 배정 관계, 그 과가 여러 과가 있어요, 러시아부터 일본어, 그러한 과도 좀 협의하시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청주 외국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말미에 했던 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교육감 이기용**

오늘 우리 행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좀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까지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흐트러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아주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의 보호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사건 사고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요새 신문지상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아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문백초등학교는 지금 특별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결정돼 봐야 어떤 얘기가 나올 테고, 지금 저어간에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학부모님과 선생님 간의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제.....

금년에도 강화할 계획을 세웠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님과 유대라든지 학부모 교육을 강화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은 앞으로는 더욱 사건이 나면은,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서로 어떤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서로 상생의 계기가 되도록 제가 내거는 화합이라는 이러한 제 소신이 굉장히 지금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생각도 갖고, 더 많은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주시고, 저희들은 더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관계서 30만 우리 충북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질의를 했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프랑스, 36년 간 평준화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 프랑스의 사회는 학교를 졸업하고 경쟁 상태를 무서워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 국가가 독일, 일본도 평준화 교육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수월성 교육에 바탕을 둔 경쟁체제의 교육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도 10년, 2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시대에 우리 충북의 30만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발전해 가는 체계가 이 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평준화 문제 때문에 그 성적을 학교 명칭을 안 쓰고 구하려고 그랬는데 입수를 못했습니다.

평준화하고 하는 것은 모든 학교의 수준이 고르게 돼 있는 상태, 이것을 평준화라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평준하게 모든 학교에 배정했을 적에 도교육청에서 학교별 학력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을 적에 어떻게 이것을 장학을 하고 어떻게 교육행정을 수행하는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중등 했다고 하는데 없답니다, 그 자료가.

전체적인 도시와 농촌, 이런 포괄적인 저기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학생이나 도교육청이나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우리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도교육청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것을 제보해 줌으로써 학교 간에 평준화 교육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수준이 다르다면은.

또 학교 간의 경쟁력을 통해서 어떠한 학력의 질적 제고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대단히 궁금하고, 작년도에 성영용 위원님이나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금 6개 시·도가 학교성적 플러스 학력고사를 봐서 10% 내지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목표, 또 학교는 학교와의 경쟁을 통해서 선생님이 중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타 시·도 6개 시·도를 한번 잘 참작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상일 위원님께서 우리 교직원체와의 교섭 협의회에서 분명하게 학교에 교장의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침해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개념입니다.

자율에는 매우 교육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창의력, 21세기는 창의력이 모토가 되는데 자율을 찾을 적에 거기에서 상상력과 사고력, 이런 게 창조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교 고유의 권한을 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침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한 학교 매일 찾는데, 모든 인간은 욕구 충족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떨어졌을 적에 학부모들 여기 와 데모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거기에 노력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는 것인데, 행복한 학교 이렇게 됐지만, 물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이런 곳에 갔을 적에 행복한 학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요자에게 선택의 권리, 권리를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의 종합적인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진옥경 위원님께서 도교육청에서 주신 문건하고 교육부에서 얻은 문건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2일 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청에서는 이번 교육행정 질문 중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 등이 충북교육 시책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함께하는 교육감도 도약하는 충북교육을 위해 펼치고 있는 많은 교육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9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송대현 위원)

(11시 00분 개의)

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직원 법무규제 담당관 워크숍이 오늘까지 개최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서도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 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

● 의장 고규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주요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이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4조에 초·중·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하였고, 제5조에 본청에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 심의회는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청주교육청의 경우 교육장과 각 국·과장으로 기타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 주사, 업무담당 장학사를 각각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등을 정하였고, 안 제30조에 폐교재산 대부 요율을 현재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34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연간 감액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2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제1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되어 있으나, 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동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면서 시행령 제7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잘못 표기된 내용으로서 위 제1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까지를 삭제하였고,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에서 괄호 현황파악 괄호 달고의 조문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청에서는 금번 조례안의 장, 절, 각 조문의 띄어쓰기, 고유명사 사용 등의 오류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서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질서를 위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헌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왜 이러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그제는 아이들에게 식사지도가 잘못 되었다 하여 선생님이 학부모와 아이들이 던지는 돌팔매를 사정없이 맞더니, 오늘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기에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선생님.

교육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래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자궁심을. 선생님이 무역을 숨쉬고 있는지, 명예를. 선생님이 무엇에서 보람을 찾는지, 제자의 커가는 모습에.

이것이 모두 헛소리인가요.

부모님!

내 아이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어떤 아이로 키우려 하십니까.

맑은 미소짓고 고운말 쓰고 예의바르며 글 쓸모있는 당당한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교권이 무너지면 아이도 무너지고 학부보도 무너지고 우리의 장래도 무너집니다.

이제 네탓 내탓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교육이 무너지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여운 우리 아이의 장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어제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충북교육이라는 큰 짐을 수레에 싣고 가파른 산을 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심정으로 선생님, 교육가족에게 다시 잘해 보자고 호소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십시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 진옥경 위원

제 어제 오늘의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관련이, 의사진행발언하고.....

● 진옥경 위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 진옥경 위원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질의 장 안팎은 그야말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증폭된 자리였습니다.

교육과 반교육이 뒤섞여 우리 고장은 크나큰 교육갈등의 고장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교육자 여러분!

적어도 주요한 공무에 관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안에 관해 거짓을 옹호하지 마십시오.

흰 것과 검은 것을 뒤섞고 옥과 돌의 가치가 뒤바뀌어서는 교육의 도시 청주, 충절의 고장 충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을지언정 아이들 앞에 정직하려는 뼈아픈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학부모 여러분!

오랜 동안 축적된 교육문제들, 화날 때도 많습시다.

그러나 참된 목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참된 방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구성원 다함께 선량함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다 진실하고 이성적으

로 대응하시자고 간곡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태는 교권이 붕괴되는 것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의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면서도 우리 충북교육이 제대로 내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충북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하지만 교사의 권위는 지켜져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며 교사는 사랑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분위기 조성이 진정한 학교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참담한 현실을 누구의 탓을 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용 교육감님!

교사가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는 교육현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91회-제4차 본회의]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 및 제191 연합니다.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

(11시 17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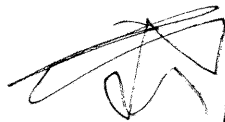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6. 6. .

의 장 고 규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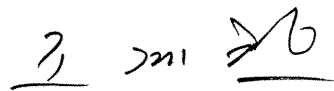
위 원 이 기 수



위 원 이 상 일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6. 5. 15.~5. 19.(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월 15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6. 5. 15. ~ 5. 19. (5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5월 16일(화)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5월 17일(수) 10:00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5월 18일(목) 10:00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집행정답변)	
5월 19일(금) 11:00	[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191 - 1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6년 5월 4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1
----------	-------

제출연월일 : 2006. 5.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자 함

□ 주요내용

- 가. 초·중·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과 대장가격 2천만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함(안 제4조)
- 나.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으로 구성하고, 지역교육청 심의회 위원을 교육장과 각 과장(청주교육청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장학사(청주교육청 각 과장)로 구성함(안 제5조)
- 다.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 금액과 징수 방법, 감면규정 등을 정함(안 제22조)

라.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함(안 제30조)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안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함(안 제34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②제1항 규정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

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운영지원과 세입관재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 담당주사, 각 업무담당 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 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 시험기관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⑤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 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임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율은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효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효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31조(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합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

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전세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 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탁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3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청사관리

-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중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계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기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사용료 관련 규정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대부(사용) 중인 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출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대부료(사용료) 산출 시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 여 징수할 수 있음				

관계 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제14조(사용료)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제30조(대부기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연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39조(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잡종재산의 신탁) ⑥그 밖에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공유재산 대장관리 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1조(변상금)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②제1항의 보상금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할 수 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079호, 2003. 8. 6)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②연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2 (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연간감액비율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3)

서 면 답 변 서

위원명	자 료 요 구 명
진 옥 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학교용지부담금액 및 추진 공문 사본2. 브리핑실 사용현황 사진 자료3. LNG 사용 학교 현황4. 청주 덕성초등학교 학생 시안에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 보고 내용

질문제목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사항
질문위원	진 옥 경 교육위원
소관부서	학교운영지원과

< 질 문 >

-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시 제출한 자료 중 도청 자료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사유는?
- 학교용지 부담금 시군별·분기별 징수 현황과 사용현황을 도청에서 받아 주시기 바람

< 답 변 >

- 작년도 제출 자료 중 2002년도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발송되어 도청에 접수된 공문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사본을 찾을 수 없다하여 전산으로 관리되는 접수대장을 송부 받았음
- 학교용지 부담금 시군별·분기별 징수현황과 사용 현황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도청에서는 시군별·분기별로 자료를 정리하기는 불가하다는 유선통보와 함께 연도별 현황만 회신 받았음

※ 붙임 : 관련자료 사본 1부.

“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우 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 ☎ (043)290-1279 / 전송 (043)291-8927
 학교운영지원과 과장 조 계 환 사무관 서 재 문 담당자 조 현 봉

문서번호 학운 13330 - 1549

시행일자 2002. 9. 6.

경유

수신 충청북도지사

참조 문화관광국장

보존기간	교 육 감		
공개여부			
부교육감	조현봉		
기획관리 국 장	조현봉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현봉		
관재담당	조현봉		
기안자	조현봉	합조	
심사자	서재문	심사일	2002. 9. 6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요구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오니 귀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학교용지 부담금 요구 현황

지구 별	학교명	개발사업 승 인 일	면적 (㎡)	계약금액 (천원)	부담금 요구액	계약일	개 발 사업자	개교
흥덕구가경 1택지지구	가경고	02.10월중 (승인예정)	13,259	6,243,831	3,121,915	01.12.29	주택공사	03. 3.1
흥덕구가경 1택지지구	용암고	96. 12. 6	14,987	5,553,000	2,776,500	01.10.18	토지공사	
흥덕구가경 1택지지구	성화초	96. 12. 5	12,031	3,994,560	1,997,280	02.7.26	주택공사	04. 3.1

지구별	학교 명	개발사업 승인일	면적 (㎡)	계약금액 (천원)	부담금 요구액	계약일	개발 사업자	개교
홍덕구가경 4단지지구	죽림초	'96.12.5	12,992	4,282,668	2,141,334	'03.년 계약예정	주택공사	'05. 3.1
홍덕구가경 4단지지구	죽림중	'96.12.5	12,110	5,702,752	2,851,376	'01.12.31	"	'03. 3.1
금릉지구	탄금중	'98.5.23	11,469.8	2,999,210	1,499,605	'01.6.29	토지공사	'03. 3.1
계			76,848.8	28,776,021	14,388,010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수신 (28)

HOME > 등재정보 > 다 冊 冊 단 장 > 수신

문서정보 검색 첨부기연

화신

상태	제목	문서번호	접수번호	접수자	기안부서	문서종류	수신일시	접수일시
<input type="checkbox"/>	학 교 용 지 부 담 금 ...	학문 13330-1549	11	심은정	총무교육청	대외문서	2002.09.10 11:12	2002.09.10 11:12
<input type="checkbox"/>	2002 후반 ...	문예86534-1686	12	유호재	문예/예술담당	대외문서	2002.09.23 16:21	2002.09.23 17:11
<input type="checkbox"/>	'학 교 용 지 학 보 ...	시총81471-417	13	심은정	교육인적자원부	대외문서	2002.08.21 16:07	2002.08.21 16:07
<input type="checkbox"/>	간 부 공 무 원 학 ...	기획01600-746	14	유호재	기획/엑스포지원팀	수신문서	2002.08.20 20:05	2002.08.21 08:52
<input type="checkbox"/>	학 교 용 지 부 담 금 ...	민원58500-1630	15	심은정	총무도금고	대외문서	2002.08.01 11:25	2002.08.01 11:25
<input type="checkbox"/>	학 교 용 지 부 담 ...	문예86534-1394	16	강학두	본관1총 민원과	대외문서	2002.07.17 13:42	2002.07.18 14:13
<input type="checkbox"/>	2002 후반 ...	총무12100-1494	17	유호재	문예/예술담당	대외문서	2002.07.15 16:04	2002.07.15 17:13
<input type="checkbox"/>	2002하반기 ...	민원58500-1383	18	노경철	총무/총무담당	수신문서	2002.07.08 10:40	2002.07.08 11:10
<input type="checkbox"/>	학 교 용 지 부 담 ...	민원58500-1144	19	강학두	본관1총 민원과	대외문서	2002.06.15 09:24	2002.06.15 09:27
<input type="checkbox"/>	학 교 용 지 부 담 ...		20	강학두	본관1총 민원과	대외문서	2002.05.13 16:35	2002.05.13 16:35

1 2 3 4

“최고의 행정 최상의 서비스 행정서비스현장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취 급

우편번호 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 전화 043)290-1279 / 전송 043)291-8927
학교운영지원과 과장 조계환 관재담당 서재문 담당자 조현봉

문서번호 학운81471-140
시행일자 2003.01.23 (1 년)

보존기간	교 육 감	
공개여부	공개	2003-01-22
기획관리국	전결	10:12:00
과장	조계환	
관재담당	서재문	
기안자	서재문	협조
제목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학교용지확보비확보요청심사일	2003/01/23

수신 충청북도지사
참조 문화관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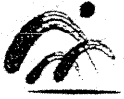
제목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학교용지확보비확보요청심사일

1. 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및 경비부담의무에 대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학운13330-1549('02. 9. 6)호로 요구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하오니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내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도 확보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천원)

지구별	학교명	개발사업 승인일	면적	계약 금액	부담금 요구액	계약일	개 발 사업자	개 교 일
가경4택 지지구	서원고	'02.11.4. (고시일)	13,259	6,243,831	3,121,915	'01.12.29.	주택 공사	'03.3.1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수신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장(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자료 요청 회신

1. 의사과-791(2005.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로 협조 요청하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자료는 귀 위원회의 집행부서인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공문 사본 : 따로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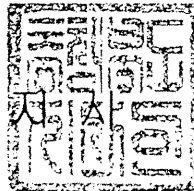
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지출내역(단위:천원)

구분	순수징수금액	교육청 전출액	시군징수교부금	반환금
계	21,182,462	3,121,915	323,082	6,143,436
2002	2,370,660			
2003	4,373,504	3,121,915		209
2004	11,280,385		323,082	8,713
2005	3,157,916			6,134,514

다. 향후 계획 : 현재 감사원심사청구심의 처리결과 및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및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 결과에 의거 반환할 계획임.

붙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공문 사본 1 부. 끝.

충청북도



*지방건축주서로 김시중 건축문화과장 전갈 10/14 황봉수

참조자

시행 건축문화과-9317 (2005. 10. 14.) 접수 ()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4323 / 전승 043) 220-4319 timebell@cb21.net / 공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



충청북도교육청

수신자 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

(경유)

제 목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현황 의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진옥경위원이 제18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불임과 같이 자료 요구가 있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학교용지 부담금 분기별 징수 현황 1부. 끝.

충청북도교육감

★충청교육진흥추진위원회
주사부 윤도환 관재담당 김대희 학교운영지원과장 10/19 지부기

협조자

시행 학교운영지원과-12145 (2005. 10. 19.) 접수 ()

우 361-7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 <http://www.cbe.go.kr/>

전화 (043)290-1278 / 전송 (043)292-7730 / - 456 - rman60@cbe.go.kr / 공개

학교용지 부담금 분기별 징수 실적

○ 년도

(단위 : 천원)

시·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비고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합 계						

※ 년도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충청북도교육청

수신자 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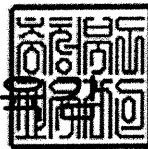
제 목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자료 협조 요청

1. 충북교육 발전에 협조에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니
2006. 5. 26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식 3부, 끝.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
주사보

국문본

세입관재담당

신승건

학교운영지원과장

05/22

신승건

협조자

시행 학교운영지원과-5782 (2006.05.22.) 접수

우 361-7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 <http://www.cbe.go.kr/>

전화 (043)290-2594 / 전송 (043)290-2744 / email: sky0810@cbe.go.kr / 공개

학교용지 부담금 총괄

(단위:만원)

연도별	징수금	교부금	반환금	전출액	잔 액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 징수금에는 이자발생액 포함
- 교부금은 시군징수교부금 포함
- 전출액은 교육청 교부금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현황

년도

(단위:만원)

시군별	징 수 액				이자액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합계						

※ 연도별(2002-2006)로 작성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 현황

년도

(단위:만원)

시군별	사 용 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교부금	반환금	액출액	교부금	반환금	액출액	교부금	반환금	액출액	교부금	반환금	액출액	교부금	반환금	액출액
구분															
구분															
계															
구분															
구분															
계															
구분															
구분															
계															
구분															
구분															
계															
구분															
구분															
계															
구분															
구분															
계															

※ 연도별(2002-2006)로 작성

변화와 실천으로 으뜸 충북을 !



충청북도



수신자 충청북도교육감(학교운영지원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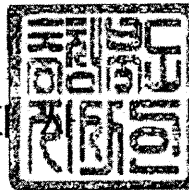
제목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자료 송부

1. 학교운영지원과-5782(2006.05.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현황을 따로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현황 1 부. 끝.

충청북도지



★지방건축주사보 김시종

지방건축사무관 라시찬

건축문화과장

전결 05/26
황봉수

협조자

시행 건축문화과-5204 (2006.05.26.) 접수 학교운영지원과-@N ()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4323 / 전송 043) 220-4319 / timebell@cb21.net / 공개

학교용지 부담금 총괄

(단위:만원)

연도별	징수금	교부금	반환금	전출액	잔 액
2002	237,066				237,066
2003	449,885	15,699		312,192	121,994
2004	1,140,364	32,308			1,108,056
2005	357,186	10,966	642,650		- 296,430
2006	2,115				2,115
합 계	2,186,616	58,973	642,650	312,192	1,172,801

- 징수금에는 이자발생액 포함(과오납반환은 감액)
- 교부금은 시군징수교부금임
- 전출액은 교육청 교부금
- 반환금은 위헌결정 후 정송기간내 감사원등에 이의신청하여 반환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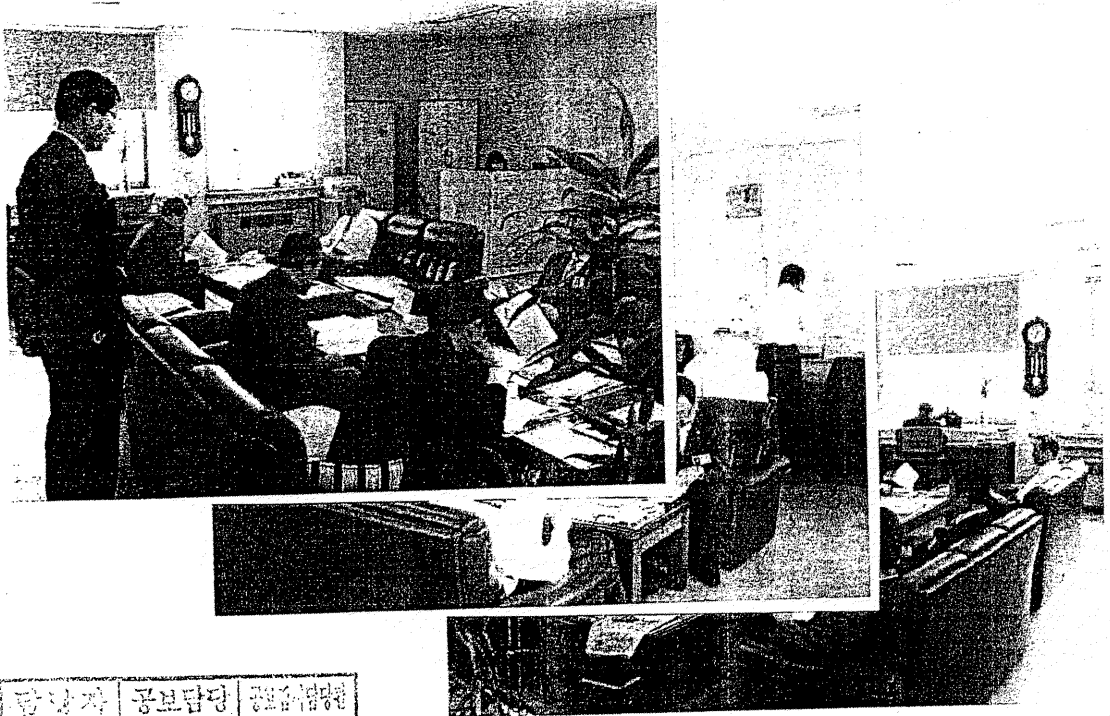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5. 3.(수) 13:00 ~	자료설명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출석	기자	김영재(한빛일보), 박재천(연합뉴스), 맹석주(CBS), 김정호(뉴시스), 이태문(문화방송) 계 : 5명	
	관계 공무원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김규완, 고웅식, 구본학 계 : 4명	
브리핑내용	제목 : 인도네시아 반텐주지사 일행 충청북도교육청 방문		
	o 보도자료 참고		

관련 사진



담당자	공보담당	관심담당
<i>이재신</i>	<i>음영호</i>	<i>김규완</i>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통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4. 20.(목) 11:00 ~	자료설명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출석	기자	김영재(한빛일보), 장병갑(동양일보), 맹석주(CBS), 김정호(뉴시스), 박재천(연합뉴스), 안정환(충북일보) 정철(서부경찰서)	계 : 7명
	관계공무원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노진국, 김규완, 박종원	계 : 4명
브리핑내용	제목 : 전교조 충북지부 불법 농성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 발표		
	o 보도자료 참고		

관련 사진



담당자	공보담당	공보계담당관
<i>Amel</i>	<i>Amel</i>	<i>Amel</i>
<i>Amel</i>	<i>Amel</i>	<i>Ame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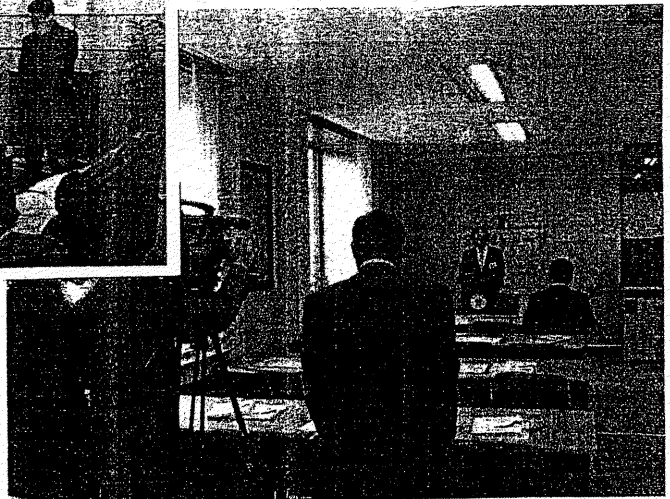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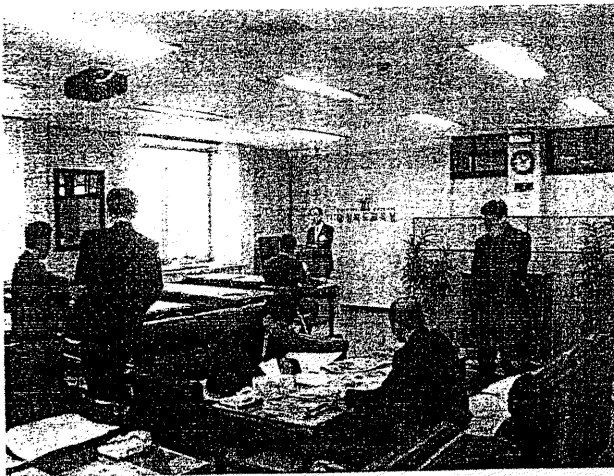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4. 11. 11:00~	자료설명	중등교육과 장학관 손영철
출석	기자	이태문(MBC), 안정환(충북일보), 김영재(한빛일보), 박재천(연합뉴스), 김정호(뉴시스), 이재기(동양일보)	
	관계 공무원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브리핑내용	제목 : 논술지도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 논술지도 위해 도교육청 나서 ○ 주제별 논술준비 YES!, 책자개발 보급 ○ 논술 교육중심 연구학교 6개교 운영 		

관련 사진



담당자	공보담당	필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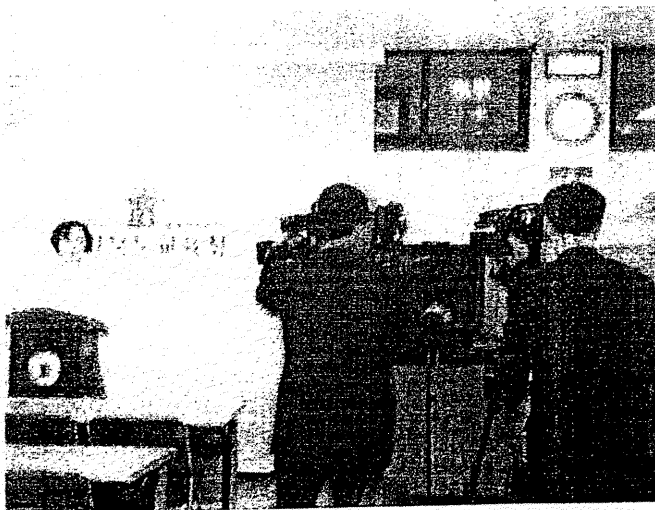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4. 5. 11:00~	자료설명	총무과 5급 이영희
출석	기자	이태문(MBC), 충북방송(팍근단), 김영재(한빛일보), 김정호(뉴스스)	
	관계 공무원	계 : 4명 계 : 0명	
브리핑내용	제목 : 맞춤형 정보 무료서비스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정보 시계에 맞춰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무료 제공 ○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서비스 신청 ○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 련 사 진			



담당자	공보담당	공보재담당
<i>김정호</i>	<i>이영희</i>	<i>김정호</i>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4. 3. 11:15~	자료설명	총무과 4급 신건환
출석	기자	이태문(MBC), 김영재(한빛일보), 김정호(뉴시스), 맹석주(CBS) 계 : 4명	
	관계 공무원	공보감사담당관 계 : 1명	
브리핑내용	제목 : 교육감 관사 매각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사 매각 안 교육위원회 임시회 의안 제출 ○ 덧붙임 : 설명자료 1부. 		

관련 사진



담당자	공보담당	공보감사담당관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4. 3. 11:30~	자료설명	총무과 5급 김성곤
출석	기자	이태문(MBC)	계 : 1명
	관계 공무원		계 : 0명
브리핑내용	제목 : 교육감 관사 매각추진 계획(MBC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사 유지의 경제성과 효율성 검토 ○ 건물 노후도가 심해 수리비 과다,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개조비용 과다 등으로 매각 추진 		

관 련 사 진



주최	공보담당	공보책임자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Initials]</i>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총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3. 30. 15:50~	자료설명	공보감사담당관실 5급 엄종복
출석	기자	이태문(MBC) 계 : 1명	
	관계 공무원	계 : 명	
브리핑내용	제목 : 공직자 반부채 척결 나서(MBC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 전문성을 높여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도 높여 ○ 7개 부패취약 업무 등 부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업무 및 제도 개선 추진 		

관련 사진



담당자	공보담당관	담당자명
<i>김민</i>	<i>김민</i>	<i>02852</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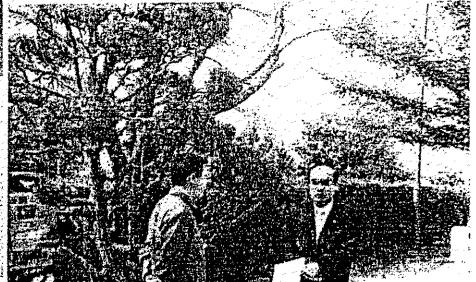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3. 30. 15:10~	자료설명	초등교육과장 장학관 김주환
출석	기자	이태문(MBC)	계 : 1명
	관계 공무원		계 : 명
브리핑내용	제목 : 방과후 학교 운영(MBC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관 련 사 진



담당자	공보담당	재무행정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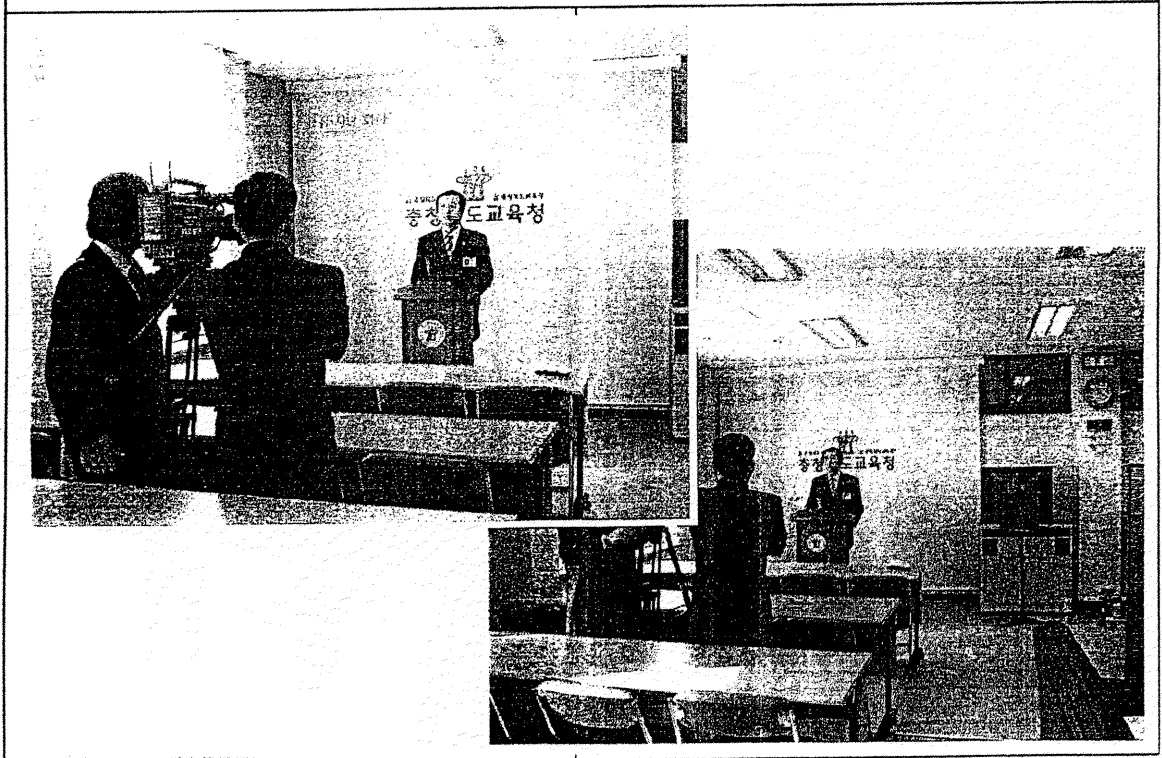
관심사랑 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3. 27. 17:00~	자료설명	평생교육체육과 5급 함정기
출석	기자	이태문(MBC),	계 : 1명
	관계 공무원		계 : 0명
브리핑내용	제목 : 충북도내 학생 중 건강 이상자 전보다 줄어(MBC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혈액, 척추측만증 검사 결과 이상자 종전보다 줄어 ○ 심전도 검사 결과 유증상자는 다소 늘어 ○ 금년도부터 종합검진 체제로 전환 		

관련 사진



Handwritten notes in a grid format, possibly a checklist or record of the event. The text is illegible due to cursive hand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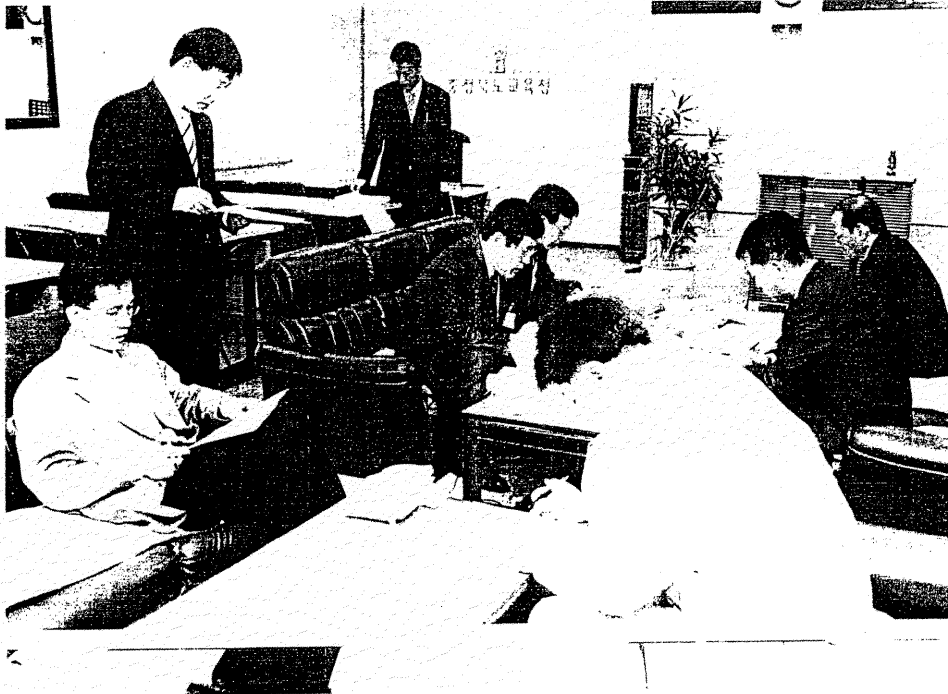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3.27.(월) 11:20~	자료설명	기획관리과 5급 김석재
출석	기자	김영재(한빛일보), 맹석주(CBS), 이태문(MBC), 박근만(HCN충북방송)	
	관계 공무원	공보과장, 공보담당, 기획관리과장, 이재현	
브리핑내용	제목 : 2006.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제1회 추경예산 1,221,524,084천원 편성(기정대비 5.6% 증) ○ 덧붙임 : 자료 1부. 		

관련 사진



473 - 473 - 473

11/11/11

Handwritten signatures and initials are present over the stamp.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3.27.(월) 11:00~	자료설명	평생교육체육과 6급 이정우
출석	기자	김영재(한빛일보), 맹석주(CBS), 이태문(MBC) 계 : 3명	
	관계 공무원	공보과장, 공보담당, 오세경 계 : 3명	
브리핑내용	제목 : 시·도교육청 노조위원장 국회 항의방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2일 시·도교육청 노동조합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회 방문 ○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직선제 개헌 관련 항의 방문 ○ 덧붙임 : 자료 1부. 		

관련 사진



담당자	공보담당	일시
이태문	- 474 -	2006. 3. 27
1210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3. 20. 11:30~	자료설명	총무과 4급 신건환
출석	기자	김영재(한빛일보), 김정호(뉴시스), 맹석주(CBS), 이태문(MBC), 계 : 4명	
	관계 공무원	공보과장, 인사담당 계 : 2명	
브리핑내용	제목 : 교육행정직 임용시험 공고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직 소요예정인원 100명 ○ 소수직렬 임용시험 충북도청 위탁 추진 ○ 덧붙임 : 자료 1부. 		

관 련 사 진



담당자	공보담당	권희영
475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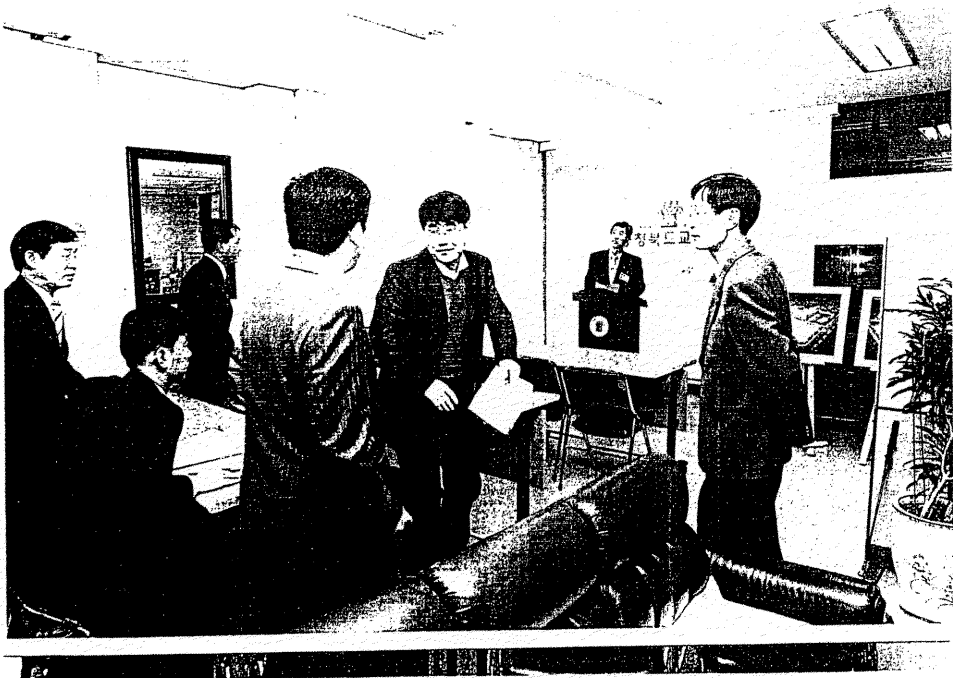
관심·사랑·화합

충북교육홍보 언론 브리핑

[홍보! 조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일시	2006. 3. 15. 13:30~	자료설명	시설과 5급 박민수
출석	기자	장병갑(동양일보), 안정환(충북일보), 김영재(한빛일보), 김정호(뉴스스), 맹석주(CBS), 이태문(MBC), 권기현(KBS), 계 : 7명	
	관계 공무원	공보과장, 공보담당 계 : 3명	
브리핑내용	제목 : 학교 신축사업 민간투자사업 방식 첫발 내 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개교 예정 고등학교 3개교 BTL방식으로 추진 ○ 총 민간투자비 242억원 		

관련 사진



담당자	공보담당	관공서장
-----	------	------

- 476 -

LNG 사용 학교현황

학교급별	청 주	충 주	증평군	비 고
초등학교	경산초, 경덕초, 진흥초, 개신초, 동주초, 용성초, 주중초, 봉덕초, 산성초, 죽림초, 울량초	칠금초 탄금초 용산초 금능초	증평초	충 주 시 는 L N G 를 2005.10월부 터 사용
소 계	11교	4교	1교	
중 학교	남성중, 수곡중, 경덕중, 원평중, 서경중, 금천중, 원봉중, 중앙여중, 가경중, 대성중	충주중 충일중 칠금중 탄금중		
소 계	10교	4교		
고등학교	청주여고, 충북고, 청주외고, 주성고, 흥덕고, 중앙여고 충북체육고, 서원고			
소 계	8교			
특수학교	맹학교			
소 계	1교			
합 계	30교	8교	1교	39교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진 옥 경	소 속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	-----	-----------

□ 질문 요지

- 청주 덕성초등학교 학생 사안에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 보고내용

□ 답변 내용

○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발송한 사실은 없으며, 2005.5.11(수) 자세한 사안내용이 언론보도된 날 교육인적자원부 김학일 연구관으로부터 아래사항을 개인메일(김학일)로 보내라는 전화를 받음 (통화자 장학사 신정휴)

- 전화요구내용 : ① 사고발생개요 ②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알린 시각과 방법 ③학교에서 병원으로 이동 방법 ④학교 측이 병원으로 한일 ⑤교장의 보고가 늦어진 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위 요구 내용을 청주교육청으로 의뢰 한 후 자료를 보고 받아 위 5개항 외 붙임자료의 송부 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 김학일 연구관과 확인한 결과, 연구관으로부터 붙임자료는 언론내용으로 잘 알고 있으니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김학일 연구관 메일(hagil@moe.go.kr)로 붙임자료 없이 보냄

○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낸 메일과 동일한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은 별첨사유서 참조】 라는 문구를 생략하여 제출하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FAX(043-543-3130)로 보내드렸고, 위원님께서 자료로 주신 복사본(교육부 보고 내용)은 '덕성 학생사안 결과 보고' 요구 시 위원님 요구로 일체를 위원님께 제출한바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에는 김학일 연구관 요구 내용 개인메일(김학일 연구관)로 1회만 보냄

○ 궁금한 사항: 위원님께서 초등과장님께 제시하신 교육부 보고내용 복사본은 교육부에 메일로 보고된 내용에 담당장학사 자필로 기록된 사항 과 TO : 027893542 , 027883542 전화번호, 통화결과 「서울문화방송송신부 027893542」 이고 027883542는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FAX 번호인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라서 이 사실이 궁금한 사항이오니 선처 바랍니다.

(별첨 4)

제191회 임시회

조례 심사 보고서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 5. 1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5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5월 15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5월 15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5월 1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개정이유

-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초·중·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집중재산의 관리 및 대부과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함(안 제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으로 구성하고, 지역 교육청 심의회 위원을 교육장과 각 과장(청주교육청 각 국장) 및 각 업무 담당주사, 업무담당 장학사(청주교육청 각 과장)로 구성함(안 제5조)
-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 규정 등을 정함(안 제22조)
- 폐교재산 대부효율을 현재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함(안 제30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안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함(안 제34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 가. 안 제32조(토석 채취료 등) 원상복귀 조항이 없는데 원상복귀 조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계약서 작성시 명시토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의견은 추후 검토하겠음
- 나. 미등기된 교육재산이 손실되는 사례가 있어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 다. 안 제48조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대한 기준은
 - 청사의 위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 발생시 마다 기준제시, 추후 충분히 검토
- 라. 어떻게 전문개정이 되었는지 여부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각 시·도가 유사하다고 봄
- 마. 조례의 장, 절, 각 조문의 띄어쓰기, 고유명사 사용 등의 오류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바.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중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은 꼭 두어야 하는지 여부
 -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함, 삭제하여도 무방함

사.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중 (현황파악)을 삽입한 이유

○ 표준안에 포함되어 소송이나 분쟁 때문에 삽입, 법체계상도 가급적 사용

아. 안 제13조 제2항 중 “다만,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에 대한 집행청 견해

○ 장래를 대비하고자 함

자. 임대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지방재정 관련 법률이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안 제4조에 초·중·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 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하였고,

○ 안 제5조에 본청에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는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청주교육청의 경우 교육장과 각 국·과장으로, 기타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 주사, 업무담당 장학사를 각각 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또한, 안 제22조에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등을 정하였고,

○ 안 제30조에 폐교재산 대부 요율을 현재 재산 평가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 하였으며,

- 안 제34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 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 제2항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제1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서 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 동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 12. 30 제정 공포되면서 시행령 제7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잘못 표기된 내용으로서 위 제1호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까지를 삭제하였고,
-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과약)”에서 괄호 현황과약 괄호 달고의 조문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 또한, 집행청에서는 금번 조례안의 장, 절, 각 조문의 띄어쓰기, 고유명사 사용 등의 오류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해 주시길 당부

5.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수정이유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동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12.30 제정·공포되면서 시행령 제7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까지를 삭제하고자 하며,

-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에서 (현황파악) 조문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수정주요골자

-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을 “삭제” 함.
-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중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에서 (현황파악) 을 “삭제” 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6. 5. 19.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로 동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12.30 제정·공포되면서 시행령 제7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까지를 삭제 하고자 하며,
-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에서 (현황파악) 조문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을 “삭제” 함.
-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중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에서 (현황파악) 을 “삭제” 함.

3. 수정안 : 따로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을 “삭제” 함.
-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중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에서 (현황파악) 을 “삭제”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5. (원안과 같음) <p>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가. (원안과 같음) 나. (원안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5. (원안과 같음)
6. (원안과 같음)
7.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5.
삭 제

④ (원안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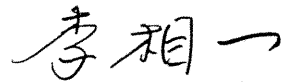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6. 5. 19.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간사

성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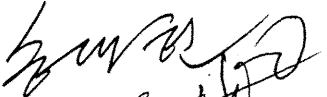


위원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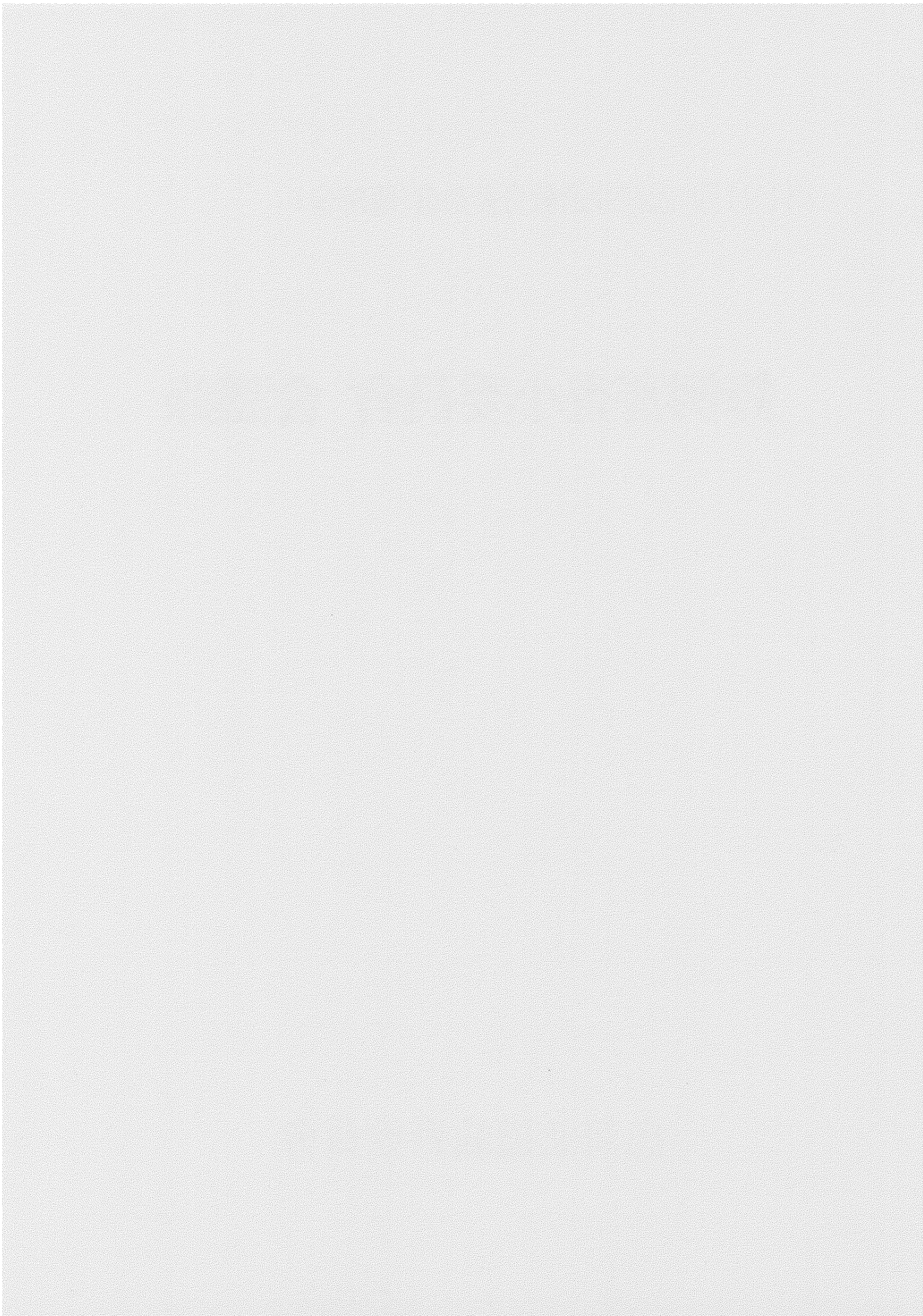
진옥경



第19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497
II.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501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555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5일 (월요일) 11시 24분

議事日程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4분 개회) 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이상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상일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소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26분)

● 위원장 이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현 위원

성영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본 조례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8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과 5월 16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6일.....

지금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 보고 싶습니다.

시간을 몇 시로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저기 내일 소위원회 개최시간을 몇 시로, 지금 11시로 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 어떠신지?

● 이기수 위원

11시 만약 1시간 해서 좀 부족하든지 하면 점심 먹고 조금 1시간 더 하더라도.....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11시로 해도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월 16일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성영용,

위 원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6일 (화요일) 11시 03분

議事日程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개정하고, 그 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부 표준안을 기본으로 수 차례 행정실장 및 경리담당을 대상으로 조례개정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도보와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를 거쳐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회를 거쳐 금번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하고,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으로 구성하고 청주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국·과장으로 기타 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 주사, 업무담당 장학사로 구성하며,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징수기준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 규정 등을 정하고,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며, 사회복지사회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조례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거죠?

● 위원장 이상일

네, 일문일답 식으로

● 이기수 위원

한 번 질의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 위원장 이상일

네

● 이기수 위원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제7765호와 대통령령을 근거로 해 갖고서 아마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물론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겠지만 공유재산관리위원들이 그 조직이 대개 공무원들로서 도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하고 과장님들이 이렇게 되고 청주시는 국·과장님과 해당실무의 장학사 및 주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건 왜 제외시켰는지, 그렇게 우리 행정공무원들만 해 갖고서 위원회 구성한 건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취득이나 처분하는데 있어서도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위원들이 들어와서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다 우리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업무담당자들이 가장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법령관계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솔직히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각 시·도가 공히 공무원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여러 가지 임무니 구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걸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게 의무조항이 없다든지 하면 이 위원회 자체를 구성만 해놓고 1년에 한 두 번도 회의를 안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생길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갖다가 취득한다던가 처분할 때 심의해야 되고 또 어떤 용도변경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연간 상당한 많은 회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간 여러 회 개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지만 그냥 실무협의회로 해 갖고서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재산관리는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같은 경우에 표현을 말입니다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0으로 하면 그걸 100분의 1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왜 10배로 늘어 갖고서 꼭 1,000분의 10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대부요율을 정할 때는 법령상 법령이 1,000분의 얼마를 이렇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위법령에 이렇게 따른 겁니다.

보통 저희들이 대부요율이라던가 이런 걸 결정할 때 다른 법령에도 보면 천 단위로 이렇게 1,000분의 얼마.....

● 이기수 위원

1,000분의 10이라는 얘기는 100분의 1인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근데 1,000분의 10, 20 이렇게 결정이 되면 100분의 얼마를 해도 되는데 대개 보면 1,000분의 15도 있을 수 있고 25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위를 약간 높여서 이렇게 법령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는 14페이지 말입니다 보면 토지의 토석채취 등 이렇게 해 갖고 그걸 임대해 줬을 경우에 이걸 채취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라는 의무조항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거 토석만 채취해 놓고 원상복구를 안해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육재산을 이용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걸로 봅니다.

제가 며칠 전 지방뉴스에서 그걸 들었습니다마는 충주지역에 농토에다 토석을 채취해 놓고서 원상복구를 안하니까 허가해 놓은 시 쪽에다가 주민들은 이 부분을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 시 쪽에서도 허가만 해줬지 어떤 뭐 다른 구속력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난처해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난감해 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교육재산에서 토석 같은 걸 채취하고 했든지 하면 반드시 원형으로 복구해 놓은 조항이 조례 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상회복은 반드시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

됩니다.

근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로는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상회복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구절이라도 조례 속에다가 그걸 담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조례는 한번 제정해 놓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모든 계약은 도교육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잡종재산 이든지 이런 경우에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상에 도교육청에서 직접 개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 속에다가 담아야만이 계약 당시에 그것을 유념해 갖고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는 빼고서 나머지 계약당사자들끼리 그걸 권고해 갖고 한다고 하든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몇 줄이라도 그 부분을 삽입시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 해 주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계약으로 이렇게 정할 사

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쪽 해와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약에 명시할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을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가 이걸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이것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계약들이 도교육청이나 그 외 시·군 교육청정도지만 이게 교장까지 포함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선 계약서에 충분히 담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냐하면 페이지 25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금 63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육당국에서 알지

못하는 재산을 신고를 해 갖고서 그걸 우리가 다시 찾게끔 되는 이런 경우인데, 지금 1호를 보면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하는데, 만약 이걸 신고한 분한테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그 이상은 안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예, 필지별로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필지별로, 그런데 정부 대통령령에 본다면 말입니다 그 한도액을 1,000만원까지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만원까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고 또 이걸 10분의 1이상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200만원을 준다면 사실 2,000만원 신고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정부 대통령령을 보면 말입니다 10분 1까지 줄 수 있게끔 한도액을 정했는데 1,000만원까지 봤고, 그러면 이게 2억이나 3억이든지 한 10억 넘어가는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도 200만원도 기껏해야 2,000만원 미만 하는 분도 200만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이걸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 대통령령에 정한대로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요율은 말입니다 가액에 따라서 10분의 1이라든지 뭐 100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갖고서 규정해 갖고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지, 대통령령에 1,000만원을 규정한 것을 우리는 200만원으로 다운시켜 갖고 그 이상은 안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면 문제가 있는 듯 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한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각 시·도라든가 교육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도별로 형평을 기하도록 해서 일단 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타 시·도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보상금을 높여주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부라든가 건의를 해서 좀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

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없었어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이기수 위원

근데 정부는 1,000만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는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1,000만원까지 되어 있는 걸 교육부에서 그걸 하향해서 200만원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도 1항에 보면 총 보상금을 1,00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있거든요, 다만 하위 각 항에 가서 필지별로 이렇게 200만원으로 정해서 다섯 필지일 경우에 1,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까지 줄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 이기수 위원

필지가 여럿 일 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이기수 위원

그런데 한 필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이

됐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도.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폐교재산에 관한 대통령령이지만 연간 감액비율을 우리가 이거 아마 임대했을 때인 것 같아요, 1,000분의 700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본래 우리가 임대한 것을 70%를 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는 사항인데,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그렇게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 대통령령에 의하면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법령에 맞게

1,000분의 70으로 이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준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상위법령에 글썄 대통령령에 보면 그렇게 70%까지 감액을 1,000분의 70이라는 얘기는 70%.....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7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기수 위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얘기이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여유 있게 줬다면 우리는 그걸 최대한도로 준 얘기겠지 리미트를 준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는 조례에 정할 때는 이걸 줄여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거기 그렇게 정했다고 해도 1,000분의 70으로 이렇게 정해서는 이게 너무나 융통성을 준다고 해도 지나칠 정도 아닌 얘기에요, 나는 70%을 감액해 준다는 얘기는 감액을 하더라도 너무 큰 폭이 아니겠느냐 이걸 뭐냐하면 재량권을 준다고는 하겠지만 이걸 잘못 우리가 법 적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1,000분의 70 거기까지 이렇게 크게 확대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줄여서 1,000분의 한 300이든지 400이든지 이런 범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1,0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 심의위원회이라든가 이런 데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여기서는 얼마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여기서는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어떤 폐교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항은 여기에 삽입되어 있지 않죠, 우리 조례에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조례에는 1,0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기수 위원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거 아니예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700미만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도록.....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1,000분의 700을 넘지 않게끔 한다 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1,000분의 500이라든지 1,000분의 400이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런데 재산을 대부해 줄 때 보면 여러 가지 재산의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또는 대부해 주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정해 놓을 경우에 효율적인 어떤 대부를 해준다던가 할 때 좀 혹시라도 장애요인을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걸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대통령에 표시한 것이 70%까지 감액해 준다는 얘기는 지나칠 정도 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맞게끔 그걸 제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을 듯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그때 회의를 개최해 갖고 거기서 결정한다는 것보다도 그걸 조례로써 그것을 제정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하여튼 검토를 하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득이 해서 꼭 대부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면제를 해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대부해야 될 그럴 필요성까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대한 30%까지는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걸 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앞으로 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재산이 미등기함으로써 그것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교육재산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본 위원이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 갖고서 기부채납 재산인데 그거를 등

기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손 이름으로 그 선친은 죽었고 기부채납한 본인은 돌아가셨고 나중에 그 후손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니까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갖고서 경매에 부쳐져 갖고 경매로 넘어간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것을 다시 학교로서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니 공시지가로 밖에 매입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갖고 동창회에서 돈을 보태 줘 갖고서 나중에 그것을 매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같은 것을 다시 확인을 해 갖고서 등기 안된 부분은 전부 우리 교육재산은 등기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고서 그런 일이 없다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예를 제시하니까 그 학교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몇 년 후에 영동교육청을 가니까 163건이라는 그 교육청 감사에도 없다는 답변을 듣고 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160건 이상이 됐는데 군청 공무원이 다 그 학교출신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어 갖고서 넘겨주는 걸로 됐다는 나중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어렵지만 등기 같은 것 전부 해놔서 우리 아까운 교육재산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결

다시 한번 그런 작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부탁 겸 바람이니까 국장님 한번 좀 유념하셔서 갖고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제48조 청사의 설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대한 기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기준제시를 청사를 신축할 때마다

사항별로 전부 제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제시가 이미 만들어진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기준제시가 이게 잘 이루어지면 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청사의 위치라든가 또는 청사의 규모라든가 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신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기준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정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감이 청사를 신축할 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요번 조례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 김남훈 위원

글쎄 기준제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청사를 갖다가 설계할 때마다 건마다 기준제시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면 그 기준제시를 그때그때 다시 마련해서 사전에 예고한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각 호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갖다가 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편은 1호에서 7호까지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준제시를 그때그때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래서 기준제시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차라리 기준제시라는 말을 갖다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때그때 어떤 청사를 설계하려면 기준이 있을 테죠, 제시하는 바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겠는데 여기서 기준제시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그때그때 미리 사전에 기준제시가 이루어져야만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안별로 발생 시마다 기준제시를 별도로 만들어서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규격화되고 어떤 당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7개

각 호를 갖다가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한 사항인데 요,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 설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상황 여건이 변화되는 걸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혹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관련한 자료들을 좀 촉박한 시간 내에 보느라고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부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을 이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전부 개정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검토하기로는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대전교육청에서 4월 21일날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청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통과된 지역도 있는데 우리 개정조례안은 무엇을 저본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또 어느 분이 무슨 변호사가 관여하셨습니까 아니면 법률자문을 받으셨는지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에 관한 법이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게 2005년 8월 4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가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맞는 그런 안을 기본 안을 만들어서 행정실장이라든가 또는 각 업무담당장자를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의견수렴을 이렇게 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개정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3월 달에 입법예고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입법예고 할 때 저희들이 다른 의견을 거기에 어떤 다른 의견이 없어 가지고 당초에 만들어진 개정안을

최종 확정을 해서 요번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한은 각 시·도가 대부분 이렇게 형평에 맞추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안을 모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기본 열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특징을 이제 또 가지고 있어요 충청북도 조례에서는, 그래서 일단 제가 조례심의를 여러 번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례의 요건 그러니까 총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장 그 다음에 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장이나 그 다음에 장 안에서 조는 간격을 행을 띄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준 거는 이것들이 다 붙어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칙과 제1조가 붙어있고 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바뀔 때마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하고 13조가 붙어있고요, 이거는 본래의 어떤 규정이나 혹은 법, 시행령에 쓰지 않는 조례나 이런 것들도 전부 양식이 다 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올 때 이렇게 붙어왔습니다 내내 이런 것부터 양식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는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교육청 그걸 보니까 오자도 한 글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보느라고 봤지만 촉박해서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단어들을 긴 단어를 붙여서 쓸 때와 그 다음에 중간 중간을 띄어서 쓸 때의 어떤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명칭으로써 고유명사로써 쓰일 경우는 전부 붙입니까?

이것들이 혼재 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은 전부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띄기도 하고 이런 식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용어를 통일한다던가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하실 때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전부 띄어쓰기를 보느라고 봤는데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이하 등 이거는 그 앞의 수치와 붙여쓰니까, 띄어쓰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건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어떤 법령

제정할 때 어떻게 띄어쓰기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이 지침들이 대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충실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게 그냥 부분 조례안이라면 제가 고려했는데 전부 개정을 하는 바에는 그 법제처의 사용 조례안의 어떤 기본 요건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법 부분에서도 고려를 하셔서 가지고 조례를 올리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가장 지금 뭐랄까 대전교육청 빼놓고는 먼저 어쨌든 제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그냥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칙에서 정의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본청에 대한

조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33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런 대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20조 규정이 의사국장까지 전부 걸리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조 규정은 시·도에 두는 교육감에 대한 것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문맥을 보실 때 20조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하면은 전부 의사국장까지 20조가 걸리는 것처럼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전 같은 경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하고 또 33조 및 지방교육 이렇게 해서 모두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교육감인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교육감

을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교육감과 해가지고 그 이하는 교육감에 대한 보조기관이라든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렇게 말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과는 그러면 그 뒤의 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20조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감과로 끝나는 거죠.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네

● 진옥경 위원

그렇다면 그것들은 이미 축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관서에 있어서도 대전교육청의 조례를 보면 각종 학교에서 끝납니다. 제1관서에서 각종 학교로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끝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이거를 전부 포함시키는 것과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제1관서는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학교는 포함이 되고 고등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까지 포함이 되고 본청의 직속기관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정한 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것들을 넣는 것이 더 포괄적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네

● 진옥경 위원

제2관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마찬가지로입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조 위임사무가 있는데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항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그 앞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이나 업무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은 6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그 생략할 수 있는 부분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임사무라 해 가지고 아직까지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는 대목에서 갑자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보다는,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이런 용어로써 전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용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들이 나오고 다음에 나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체계상, 저희들이 위임사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위임해 주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까마는 위임사무라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다 보면 그것이 앞에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뒤에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부득이 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진옥경 위원

그 1항과 3항에서도 다가 있고 거기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이라는 부분이 또 나오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하면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또 포함됩니까? 그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이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건 6조 2항에 보면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 조에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뒤에 표현하게 되면 뒤에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또 앞에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중으로 이제 규정되는 그런 사례가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1,2,3,4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넣게 되면 또 앞에 그런 부분들 또 다시 표현이 되는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마다 다 그걸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중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는 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 그 6조 2항에 보편은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이 있고 그 앞에는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가 또 있거든요, 그것과는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별개죠.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대장가액 2,000만원으로 규정을 하면 4조에서 규정하면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죠.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다 같이 규정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것이 포괄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를 들면 6조 2항의 4호를 보면 가, 나, 사항이 다 언급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한 재산의 취득·처분 쪽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 번 똑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이런 쪽으로 표현을 같이 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 다항에서 지금 단 교실은 제외한다라는 부분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나요?

그러니까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건물 및 공작물의 관호하고 단 교실은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구태여 필요 없는지요?

제가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가 더 어떤 부분에서 충족된 그런 표현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실이 제외됩니까, 안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여기 보면 행정재산이라든가 보존재산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교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분하는 경우는 이미 학생을 가리킬 수 있는 교실로써는 활용을 다하고 그걸 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런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라향으로써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이라고 하는 규정을 넣은 데도 있습니다. 괄호하고 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넣고 있거든요, 역시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 위임하는 사무 안에도 그것이 라향으로 들어 있고요, 이것이 필요 없습니까?

실무적인 부분에서 실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글쎄 대전시 조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도 안대로 규정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다던가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진옥경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꼭 넣어야 되었다 하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예측해서 이거를 넣어주는 것이 좋으면 넣어야 하

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자문을 구했다던가 하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했고 또 입법예고도 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안을 정한 거구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안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여러 시·도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조례를 정하게 되겠는데 그런 조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다른 사례가 또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

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심의를 위해서 어쨌든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는 집행청 아닙니까, 그러면 저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문안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운영 면에서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회가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요, 여기에 지자체에서는 어떤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하는 그 대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제5조입니다. 5조 1항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하나의 목적이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심의기구냐 자문기구냐 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할 거냐 자문기구화할 거냐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자문은 물어서 그 다음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심의회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자문이고 심의회는 거기의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것이 들어 있으면 자문기구라는 의미 같이 느껴지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따른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마 도에서 그런 사항을 봤다면 글썽 왜 봤는지 저희들 모르겠는데 법령에 저희들이 맞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그걸 조례에서 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의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문기구입니까, 심의기구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마 요 사항을 넣은 이유는 이게 심의회에서 모두 의결해 가지고 그대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이런 사항을 충분히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감한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의견을 주면 최종 결정을 그 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표현을 이렇게 자문에 응한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법으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기관의 장이 거기에 대한 귀속을 받는데 요 사항은 최종 결정권자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로 이렇게 법에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구속력을 심의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묻는 겁니까? 그거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겠지만.....

● 진옥경 위원

안따라도 그만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따른다고 하기보다는.....

● 진옥경 위원

글쎄 그 자문기구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그것이 있는 것이 맞아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그 심의회 규정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혼돈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실제 어떤 상황에서 심의회 저기하고 교육감의 어떤 생각과 서로 다를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구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제가 볼 때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의견들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으로 결정될 안이 단일 안이 아니고 혹시 2개 아니면 3개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 좋은 안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하나 하고 판단은 최종 결정권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이것을 상위법에 있는데 이것을 썼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의회 위원이라는 것이 위원구성을 위원장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국장이 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이렇게 다릅니다 서로, 그런데 그렇게 직책이 부교육감이 될 때와 안될 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게 더 효율적인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물론 어떤 신속성을 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획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획관리국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상위직에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은 부교육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재산처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한 단계를 거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잘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육청 산하에도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나요, 도교육청 말고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지역교육청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역교육청심의회 위원장이 교육장이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교육장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럼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교육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5조 4항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쪽해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하고 거기 2번에 보면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문을 요구하고서 또 자기가 거기 심의회에서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건 거기서 위원장 입장에서 교육장은 어떤 전체적인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는 지위에 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렇게 해서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관의 장으로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어떤 지위가 처리하는 지위가 틀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된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둬니까, 다 본인이 총괄해서 하고 하면 되는 걸 굉장히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청북도 조례에 보면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의 업무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런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따로 이렇게 본인이 자문을 요구하고 또 본인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때로 보시면 굉장히 뭐랄까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것이 심의가 필요한 것인데 위원장은 가장 막강한 어떤 저기를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기관장의 어떤 의견과 상충되거나 그걸 갖다가 사전에 회수하기 위해서 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안을 제시를 해주면, 최종 기관의 장이 그걸 가지고 최종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어떤 안으로 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충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대전에서도 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도요, 교육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뭐 하러 구성합니까 이런 것들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항에서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다음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유재산심의회라 하면은 위의 본

청과 또 뭐랄까 중복되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그냥 이하 심의회라고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4항의 1번이 심의회 위원은 하면은 마치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혼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청에 있는 것과 지역교육청에 있는 심의회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앞으로 심의회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타 지역교육청에 있는 그 심의회는 원래 명칭대로 다 이렇게 약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 진옥경 위원

교육장 소관이라고 쓰면 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교육장 소관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죠.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넣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왜냐 하면 제가 불적에 밑에 심의회라는 것이 본청 이하 심의회라 한다 하는 본청 공유재산심의회인 줄 이해하게끔 오해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앞에 제2조 정의에 보면 그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원장이 교육장이 되거나 위원장이 부교육감이 되는 이 구조를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부교육감은 어쨌든 최고 책임자이고 총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위원장이 전부 여기 부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내내 똑같다면 위원회가 불필요한 것이고요, 기능을 하게끔 한다면 그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아까 시민단체들이 들어가야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도 각종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도 하셨지만 외부인사들도 없는 이런 전부 국·과장들이 들어있는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 진옥경 위원

아직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러시면 저기 벌써 12시가 지났는데 나머지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해서 적당한 선에서 질문을 중단하시고 점심을 잡수시고 오후에 하시도록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요 답변만 들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한 게 아니고 표준안을 저희들이 충실히 따른 의미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 진옥경 위원

교육부에 전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진옥경 위원

그런데 대전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표준안이 되면 물론 시·도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그렇게 정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그대로 표준안을 따라서 그 조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신 사항과 같이 한번 처음 전부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들이 상위 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들이 요번에 제정이 되면 한번 종합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대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종결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오후에 시작될 때 충청북도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찾으셔서 갖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는 걸로 오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 1시 30분

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고 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럴만한 기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로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저희들은 매주 한 3회에 걸쳐서 간부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선 다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도 조정위원회를 보니까 거기서 하는 역할이 어떤 공유재산심의뿐이 아니고 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매주 한 번씩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런 역할을 하는 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어떤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문안에 있어서 총칙 제6조 보편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라고 제목을 붙일 바에는 어떠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이 그 문맥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어디에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미 종결된 심의를 보고하는 형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오히려 공유재산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업무라는 제목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기술하는 문안을 이렇게 규정을 딱 지어 놓는 것은 조금 너무 단정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문안은 정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목을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안으로 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요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표준안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정해야 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표준안에 맞도록 함으로써 타 시·도와 형평이라든지 이거와 기하고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 사항도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문안을 좀 부드럽게 한다던가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요 사항 자체의 특별하게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진옥경 위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런 자연스러움이라든가 조례를 어쨌든 뭘 만든다는 것은 최대한 뭐랄까 형식적인 부분들까지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줄을 행간을 뚫다던가 아니면 오·탈자 띄어쓰기 이런 것까지도 완벽해야 된다는 완전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안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라고 할 때는 어떠한 기능을 한다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서술하는 것이 어울리지 거기에서 심의사항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마치 회의

록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종결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어떤 논의과정에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6조 2항의 1번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넣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작성 초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 오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5조의 3 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15조의 4 제2항으로 그렇게 조정이 지난번에 됐는데 저희들이 그걸 미처 나중에 확인을 못해서 그대로 들어갔고요.

근데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4 제2항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구태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제외하는 쪽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이라고 2번에 되어 있는데 그것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규정과는 중복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규정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시행령 규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례 안에서는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상위법.....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면 상위법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와 공유재산의 증감이라는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라는 문안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태여 뺀 이유는 무엇인지요?

규칙으로 이제 그 서식을 정할 때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재산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재액 보고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까, 일부만 공개합니까? 아니면 이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증감이라든가 현재액 보고를 할 때에는 어떤 공개하는 사항 외에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공개하는 사항만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 할 때 이것은 붙여씹니까, 띄어씹니까?

공유재산 관리대장 혹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런 것이요, 이런 걸 고유명사로 써야 되는지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기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저기 하시기 어렵다면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시면 이것들을 수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서 3항이 있는데 3항의 5번입니다. 소송 등 재산소유권 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렇게 괄호하고 현황파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 시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라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현황파악이라는 괄호 안의 글이 구태여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잠깐 확인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게 대전교육청 안에 이게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들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조례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최소한 말씀인데 그 사항은 일단 교육부 표준안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다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그 사항은 어떤 소송이라든가 어떤 분쟁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산현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 사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별 문제제기하지 않고 바로 포함을 시켰거든요. 다른 재산보다도 더 이렇게 그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조례에서 괄호 안에 넣을 때는 단서조항을 넣는다든가 뭐 이럴 때 주로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뜬금 없이 이 괄호가 들어가 있

는 것이 조례의 형식에 맞습니까?

저로서는 참 납득이 안됩니다. 제목에 괄호가 들어간다는가 뭐를 포함한다든가, 단 어떠한 것을 제외한다든가 이런 외예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근데 저희들이 물론 법 체계상 가급적이면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단서조항을 둔다든가 해가지고 대개 풀어서 이렇게 쓰는 게 대부분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로도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현황파악이라는 걸 넣었는데요.

● 진옥경 위원

상황을 파악해서 쓰라고 하면 현황파악이 당연히 전개가 된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런 의미에서 썼는데 좀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2장입니다. 거기 14조에 보면 제1항 네 번

째 줄에 보면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법령 규정에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총괄 재산관리관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이 기획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관리국장으로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괄하시는 분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제가 명칭이 익숙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나오는 명칭이거든요, 총괄 재산관리관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총괄은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이라는 이름으로 쪽 서술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총괄 재산관리관이라는 그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그 앞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갑자기 여기에서 총괄 재산관리관이라는 명칭을 협의해야 될 대상으로서 기술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재산관리관은 각 본청에도 있고 각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소속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다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산관리관이 있거든요.

근데 본청에 있는 재산관리관은 그런 다른 소속기관이라든가 이런 재산관리관과 달리 총괄 직위에 있는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산관리관을 교육감이 총괄을 하면서 1관서의 것들은 관서장이나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또 이렇게 교육감과 교육장이 다시 재산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근데 총괄 재산관리관이라는 명칭은 지자체에서만 그러니까 도지사를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총괄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관리관은 어떤 분임 재산관리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주임 재산관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씩 그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더라도 역할이나 기능이 조금씩 틀립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라 하더

라도 전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재산을 총괄적 직위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기에 때문에 그 사항을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도청이나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는 총괄 재산관리관이 도지사라는 말이죠.

제가 어저께 쪽 살펴볼 때는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도지사가.....

● 진옥경 위원

총괄 재산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군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도지사가 아마 지정을 해서 거기도 아마 기획관리실장이나 누가 아마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글썄 제가 혼돈한 것은 지자체에서는 도지사가 총괄관리자를 임명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서 보면 교육감이 공유 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는 부분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거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어떤 관직을 지정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고 거기서는 재산관리관뿐이 아니고 무슨 회계관계라든가 일반회계 예산이라든가 경리업무라든가 이런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관직 지정관계가 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법 조항을 따른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저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와 통보는 같은 용어입니까?

보고하여야 한대와 통보하여야 한대가 있는데 그런 어떤 미세한 차이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고는 상급관청이라든가 상급자한테 하는 것을 대개 보고라고 하고, 통보사항은 상급관청에 알리는 사항 상급자한테 알릴 수도 있는 거고 꼭 보고가 아니더라도 또 같은 등급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알리는 사

항 그런 부분을 주로 통보로 많이 쓰고, 보고사항은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보고한다고 할 경우에 보고라는 그런 문안을 쓰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제14조 2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고가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제가 볼 때는 재산관리관 입장에서는 똑같은 재산관리관이기는 한데 다만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통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무방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항에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꼭 있어야 됩니까?

없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14조 관리 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재산일 때 이것을 구

태어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은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조항 3항을 넣음으로써 보다 관리에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빨리 진행시키고 싶은데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서 제19조 관리 및 처분에서 재산관리책임 공무원이라는 말과 재산관리관이라는 말과는 다른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재산관리관이 있어도 그 밑에 재산업무를 담당한다던가 해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국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라 하더라도 밑에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 책임을 맡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21조가 있습니다. 21조에 8번 사용·수익허가의 8번입니다. 제가 재

산관리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뒤에도 보이는데요, 8번 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한 개인에게 그것들을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런 항목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좀더 뭐랄까 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이렇게 용인하지 않는 문안으로 지금 작성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어떤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직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항이 규정 하나하나 목으로다 각 호로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8항을 둔 거거든요, 8호를.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재산관리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떤 권한이 많이 부여된다던가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문안들은 뭐랄까 완화

시켜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권이나 이런 것들은 발휘해도 안 좋고 또 한 개인이 직책 속에서 너무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들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예,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왜냐 하면 그 뒤에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22조가 있죠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충청북도에서 첨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8항까지의 내용들은 타 지역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어떤 행정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허가를 득 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 저희들이 요번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요 사항을 포함을 해서 그 동안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22조 제2항에 보면 별표에 정한 시설사용료라는 것이 있고 뒤에 별표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그

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지역과 어떤 교육 기관이 좀 그런 목과의 그런 어떤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실도 사용하는데 2시간까지는 5,000원, 4시간 초과하면 15,000원 이렇게 보통 교실까지도 저기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22조 3항에 보면 실제 소요경비 같은 것들도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항에서도 또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또 1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에도 5항에서는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또 재산관리관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것들을 별표에다가 또 여러 가지들을 첨가해서 부과하는 형태로 지금 이것이 일시 사용·수익허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항에서 보면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도 보면 6항에 2번을 보면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 가지고 또 다시 재산관리관이 어떤 자의성을 부여하는 개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어떤 주민참여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관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드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은 사용료를 저희들이 교육부 표준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금액으로 최소 금액으로 저희들이 정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 진옥경 위원

이 별표도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예, 표준안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 가장 우리가 낮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책정하게 되면 어떤 주민들한테 또는 학부모들한테 또는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정하고, 대신 모든 사항을 갖다가 다 조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에는 부득이 어떤 재산관리관이 심의를 한다던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재산관리관이 필요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저희들은 좀더 높였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활동이 우선 시 되

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사용하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재산을 학생들이 교육할 때 지장 없도록 관리를 잘 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득이 주민들이라든가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어떤 공공목적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또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어 가지고 다 각도로 이걸 갖다가 적정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지금 만약에 교육과학원 안에 강당이 있지요, 그 무슨 강당은 아니지만 시청각실 형태로 있는데 그것들을 빌릴 때 같은 지역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시설료를 받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이제 어떤 교육활동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정 부분을 감면 해 가지고 최소 금액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 교육과학연구원에 갔을 때도 제안 말씀 드렸을 때는, 그런 지역의 어떤 교육이라는 관점을 지역사회교육 그런 것까지 포괄하는 좀더 폭넓은 형태로 만약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필요할 때에 무상으로 제공하시고 연대를 높이시라고 권유를 들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부딪힙니다. 가서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이럴 때 보편은 공공목적에 건전한 목적이다라고 단체들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대여하는 어떤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래도 돈을 받아야 한다 또 빌려줄 수 없다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런 형태의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또 높은 어떤 그것들을 굉장히 열악한 어떤 상태에 있는 단체들이 물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행정 뭐랄까 교육청의 재산이라는 차원에서 관리라는 차원에서는 더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산관리관의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항을 넣게 되면, 매우 이것이 자의적인 어떤 해석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날 소지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일단 아무리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의 재산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수행하기 해서 그 기관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목적에 부합이 되고 꼭 건전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요청한다 하더라도 해도 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행사가 중첩이 되면 우선 내부적인 행사가 우선권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니 여기에서는 지금 사용료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용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이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빌려준다 하더라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책임자가 과연 이 사항을 어떻게 지금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면제를 감면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몇 %를 감면해야 된다는 이렇게 사전에 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진옥경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의 교육부 표준안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이 일시 사용·수익허가 부분에 아예 빠져 있는 지역들도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이런 단서조항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래도 그 동안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요번에 포함을 우리 교육청이 특색 있게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례가 너무 많은 것들을 제안하게 되면 그것이 지금 갑갑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본 방향을 개

방에다 둘 것이냐 아니면 수익에다 둘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저기를 다시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해야 맞는다고 생각해서 요번에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재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은 주로 개방하는데 측면을 많이 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 어떤 수익을 꼭 목표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하다 보면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빌려줌으로써 그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어떤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번이 조례를 특히 포함을 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냥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규정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기존의 어떤 관행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뭐랄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로 인해서 아예 규정이 되면서 징수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폐교재산 대부요율에 관련한 것인데요, 잡종재산에 4장에 말씀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30조 6항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하셔서 종전에 1,000분의 30분을 했던 것들보다 요율을 지금 낮췄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번 조례안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줄곧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이 폐교를 좀더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에서의 요구이기도 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일반 교육목적으로 혹은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규정을 어느 정도는 단서를 넣고 그 다음에 일반 폐교를 사업장의 연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영동의 그런 무슨 포도주 저기 생산을 한다던가 교육 목적 외의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평정가격을 요율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하고서 각 호에 가지고 몇 개의 예외조항 그러니까 교육목적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문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예외조항으로 해서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 지은 대전 같은 경우가 보다 더 교육적이고, 한편으로 그 시설운영에 폐교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저희들이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요, 요 부분은 종전에 저희들이 1,000분의 30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시·도 보다 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번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동안에 너무 높다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이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 동안에 공시지가라든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 가지고 어떤 폐교를 대부하

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양 측면이 다 있어서 요번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게 됐고요, 특히 대개 시골에 농어촌에 있는 폐교를 보면 대부분 옛날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부를 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되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같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환원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낮게 이렇게 10%정도를 인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하고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낮게 하면서 어떤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크게 과거보다 1,000분의 10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뭐 그렇게 낮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사람을 그것을 갖다가 대부를 받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할 경우에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좀 높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1,000분의 30이상으로 되어 버리면 처음부터 아예 대부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너무 높다고 거기에 경쟁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게 몇 번 입찰을 붙여도 안될 경우에는 유출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최소 금액으로 오히

려 수의계약을 하는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낮게 하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우선권이라도 우선 순위라도 좀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어떠어떠한 것들을 우선 순위로 한다 하는 부분들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같은데 보편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뭐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던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한다던가, 어떤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000분의 10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 진옥경 위원

그거는 수의계약 가능하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33조 2항에 또 괄호가 나왔는데 부지면적을 산출 이하 같다고 되어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요 이하 같다가 꼭 필요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 부분들이 옆에 조항에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기재하게 되면 법 체계상 중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간략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표현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기술인데 이렇게 여기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냥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하는데도 이하 같다가 필요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만약에 그걸 안 넣게 되면 밑에도 그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면적 산출하는 것은 다 위에 한번 정한 것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33조 4항에 공공면적 비율을 30%를 적용한다 하고서 그 산식이 있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조례 안에 커다란 산식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지 곱하기 기술로 했을 때는 그냥 문장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A 라는 것이 있으면 A를 길게 쓰고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위에 것 대부분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그 다음에 쓰고 나누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되는데, 이렇게 뭐랄까 복잡한 긴 문장들을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몇 분의 몇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식을 사용한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안 자체 굉장히 너무 길다 보니까 요걸 풀어서 쓸 경우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것을 산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인들이 표현을 알아보기 쉽도록 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문안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 쓸 때는 어디서 곱해지는 건지 나누어지는 건지 이런 사항들이 잘 쉽게 나타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청을 교육정보원의 부지에다 하겠다는 언론 기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타당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기사였는데 지금 당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사의 설계 48조입니다. 청사의 설계는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하는 부분에 아까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 기준에 의하면 설계하여야 한다는 지자체의 조례 안에는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별표로써 그것이 여러 가지 표준 설계 면적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있는데 왜 이것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48조 청사의 설계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까 김남훈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요 사항은 앞에 각 호에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교육감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이.

어떤 표로다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되면 앞으로 청사를 설계할 경우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오히려 그 제약 때문에 청사를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현실에 맞도록 그때 당시를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어떤 청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지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안 했거든요.

왜냐 하면 그거는 앞에 1호부터 7호까

지 충분히 그런 사항들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은 들어 있고요, 표준설계 면 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교육감 재량으로 넣는 것은 저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말이죠, 어째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도 같은 경우는 도는 도 본청건물하고 의회건물 뭐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서 각 교육청, 학교, 직속기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규정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그때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떤 청사로서의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청의 기본적인 직무

관련 일인당 면적도 있고 부족 공간 면적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조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닙니까, 교육부에서도 이게 나와 있지 않나요, 표준안예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일반 지방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아예 청사가 거의 대부분 규격화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이런 걸 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할 수 있는데, 저희 교육부 계통에는 각 기관마다 각 형태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으로 일괄되게 딱 정하기가 어려워서 교육부에서도 그걸 정하지 못하고 이런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관사관리가 있습니다. 관사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 55조 2번입니다.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등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1급 내지 2급 관사에만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 다른 안에 비해서 이것은 일반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화재보험료나 건물수선 유지비까지 전부 포함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3번에서 보면 1급, 2급 관사에 한하는 부분에서도 취사용 가스사용료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도 이해적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운영비라는 것은 이것은 난방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일러시

설 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조 제2항입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그 3번의 보일러 운영비는 보일러 운영비 기름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난방비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난방비입니다.

● 진옥경 위원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난방비하고 취사용 가스사용료는 그런데 이것까지 인심 좋게 이렇게 넣어도 됩니까?

다른 쪽에서는 시설은 운영하라고 저기에 놓고 왜 이런 것까지 전부에 거기에 들어갑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여기 교육부 표준안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전 것을 보신 모양인데 대전은 사택이 별로 없습니다. 대전은 시내이기 때문에 다 통근권이 되어서.....

● 진옥경 위원

1급, 2급 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1급, 2급이면 교육감도.....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1급, 2급 관사는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도 우리가 두 번째

개정을 하는데 전부 개정을 하는데 다른 데 기존의 조례에는 다 주고 있었습니다, 타 도에도.

● 진옥경 위원

표준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이상입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 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상세하게 많은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간략하게 질문하겠으니 집행청에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 잡종재산의 11쪽 대부라고 하는데 연고제 배제라는 게 있는데 11페이지 연고제 배제 잘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계약할 적에 지금 연고제를 현재를 인정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실정은 어떤 겁니까?

연고제가 어째서 이게 현행, 현재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안하고 있습니다.

● 송대현 위원

연고제 안하고 있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에

● 송대현 위원

그래도 늘 이게 영동 같은데 가보니까 문제가 되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명문화시키는 거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네

● 송대현 위원

연고제는 일체 인정 안하는 거다 이거죠 기간 만료되면 나가는 것이고 다시 계약 안되면, 그런데 자꾸 안나고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연고권을 주장하고 연장할 적에 미리 5년을 몇 년까지 계약을 늘여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연고제에 대한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 현재도 안하고 있다 이거죠 안하고 있는 부분을 명문화시킨 것 됐습니다.

대부료 요율하고 감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어떤 것은 여러 항목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율 쪽하고 또 감면도 그렇습니다마는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 하면 감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은 잘 들어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것

은 75% 감면 또 어느 항에서는 50% 감면, 1항, 2항 제34조 1,2,3항에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은 내국인에 관한 것은 찾아봐도 조문상에는 나와있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보니까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뽑아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감액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그간 폐교재산이 교육시설, 복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부료 감면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요새 농민들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겠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는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나의 예정입니다. 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우리는 감면이라든가 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에 관한 건 감면도 들어있고 또 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무상까지 논의가 되는데, 이런 부분 등등해서 우리 내국인들의 계약도 그렇죠, 수의계약 같은 것도 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뭐 하나의 예정이지만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에도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는 이것이 수의계약이 안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안되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안되는데 앞으로는 무상으로도 농민들한테 주고 지역주민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또 계약도 수의로 한다는 그런 취지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폐교재산에 대해서만 다시 그렇게.....

● 송대헌 위원

그래서 이걸 예정이었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예정으로 인터넷에 올려놓고 여론을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법이 확정될는지 안될지는 모르는데 방향은 아마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물은 것은 수의계약이나 임대료 책정에서 농촌의 생활이 어려워요, 어렵고 어떤 사람이 농촌의 그 지역주민들의 생산물을 활용해서 벤처한다는 사람도 이런 좋은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적에 그 매각이라든가 또 요율을 감액하는 것 외국인에 대해서는 75%로 한다, 50%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들어 있는데 내국인에 이런 것도 조례

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어떤 내국인에 대한 감면의 폭을 넓힌다던가 하는 문제들은 현재 교육부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상위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저희들도 바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바로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의 조례는 따라서 바뀌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신은 앞으로 가야할 정신은 방향이나 이런 걸 알아서 조문을 검토하고 조례를 자꾸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 이 농촌의 문제, 문화시설의 문제, 체육시설의 문제, 농촌에 벤처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설치해서 농민들을 살게 하는 문제 여기에 정부

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율이나 감면을 우리가 여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작성하는데 집행청에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우리의 요번 제정하는 개정 조례안이 훌륭한 조례로써 운영되도록 참고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았습니다.

● 송대헌 위원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쉬었다가 하세요.

● 위원장 이상일

질의 오후에 하실 건가요?

● 송대헌 위원

하신 다니까 쉬었다가 하세요.

● 위원장 이상일

그럼 1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오랜 시간 지루하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2항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맨 위에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우리 교육청에 공유임야 그 관리부서가 없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혹시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전담기구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장래를 대비해 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맨 위쪽에 22조 4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또 5항도 그 끝 쪽에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데 이 기준점이 어디 뭔가 있어야 되

는데 기준이 없어서 모호한 맛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 사용하는 것은 별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장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달리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례에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좀 저희들이 어려워 가지고 현실적으로 나중에 적용하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간사 성영웅

정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점이 안생길 텐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 기준은 기본적인 사용료를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다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웅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30조 대부료의 요

율에 관해서인데 3항에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여기에 세 번째,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서 1,000분의 25인데, 그 다음 4항에 보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10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3항 같으면 여기에 세 번째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 재산을 가지고 교육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상위법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료 요율을 이 부분은 인하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4항에도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 이쪽 4항은 도 업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 업무는 되려 요율이 적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재산을 가지고 대부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용으로 하는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000분의 25까지 준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감에 관한 그 부분은 교육감이 우리 교육목적으로 쓰는 부분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1,000분의 10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행정목적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어떤 학생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수련활동이라든가 어떤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분의 25로 정했고, 밑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 부분들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공시지가도 많이 상승이 되고 특히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게 기피현상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떤 농경지라든가 목축업을 갖다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최소 대부요율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축업이나 목축업을 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높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고려해 가지고 그런 요율을 최소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 간사 성영웅

제가 말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교육감이 우리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000분의 25 아닙니까?

또 그 밑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도가 설립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0분의 10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더 많이 받아도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1,000분의 10분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농경지 관계라든지 벤처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래 많이 받아서 되겠냐 교육감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는 지금 무료도로 해야 할 경우인데 우리가 1,000분의 25씩 이렇게 언밸런스 되게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은 도가 경영하는 도립학교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 요율로 정한 거구요, 그 위에 도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한 거고, 3항 같은 경우는 교육목적이 아니고 학생 어떤 교육목적이 아니고.....

● **간사 성영용**

명시된 건 교육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교육행정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학생교육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을 줘 두어서.....

● **간사 성영용**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이나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건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저희들이 현재 그런 직접적인 사례는 저희 교육청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학생회관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을 어떤 직영을 하지 않고 대부를 해서 활용하게 한다던가 또는 임해수련원이라든가 학생교직원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재산들을 갖다가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대부를 해서 활용을 한다던가 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나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1,000분의 25로 이렇게 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성영용**

좀 재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런 부분은 아까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처음 전부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타 시·도 사례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목적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조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법 제 4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하는데 이걸 제가 10년 전서부터 저도 얘기하고 이기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는데 꼭 파악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실례를 들으면 충주남산초등학교 역사가 60년 된 학교인데 거기 가운데 1,800평 땅을 50년 전 충주염연초생산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한 건데 아무도 그 동안에 누가 이거를 교육감 소속 땅으로다가 옮겨 놓지 않았어,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임대료가 계속 염연초생산조합에서 납부를 했던 말이에요, 세월이 가서 그때 기부채납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데 이거 우리 재산이니 내놔라 그래 가지고 지금 퇴임하신 김선교씨가 충주 관리과장 할 때 3년인가 4년 소송해 가지고 겨우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걸 벌써부터 찾아내서 그 사람들 있을 때 딱 했으면 아무 문제없을 걸 만약에 졌으면 그때 30억 가까운 돈 물어내야 되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할 때 잊어버린 우리 재산을 찾아보자 그거예요.

그리고 우암산생태골 조성한 것 찾은지 한 3년밖에 안되죠. 그것도 사실 우리 땅

인지 몰랐던 걸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까운 청주시내 엄청난 땅이 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만 해도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수 백 개가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우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한 번 혁신차원에서 빠진 것이 없는가, 앞으로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할 아버지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내 땅이다 그러면 절대로 그거 안줍니다. 돈주고 사야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혁신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실제적인 건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인정으로 적당히 해줬단 말이에요 충주고등학교 뒤편에 급식소를 짓는데 옛날에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나 여기 그냥 조금 붙여먹게 해줘 그거를 그냥 인정을 했다가 할 수 없이 임대료를 조금씩 받았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명확하게 안 해줬는데 지난번에 그걸 지으려고 하니깐 이 할머니가 나가야지 날 죽이려면 죽이라고 만나가서, 우리 공공재산으로는 회계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동문회에서 3,000만원을 거둬서 그 할머니한테 이주비로다가 빌다시피 해서 6개월만에 내보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히 안해 놓으면 임대료 몇 십 만원 받아놓고 3,000만원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요새 스쿨존이라고 해서 학교 부근에 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충주에 100년이 넘은 교현초등학교 저기 길이 좁아요, 그런데 교육장하고 시장하고 경찰서장이 여기를 안으로 들이쳐 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 속으로 소속이 교육감 재산이죠. 그런데 시장이나 교육장이 마음대로 그게 가로 세로 하면 한 280m될 거예요 280m를 3m안으로 들이치면 평수는 몇 평이나 나오겠습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명확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학교용지 일부를 무상으로 보행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안되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네

● 위원장 이상일

그런데 충주에선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충주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된다고 답변을 해준 적이 있어요.

● 위원장 이상일

그거를 다시 교육장한테 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기 지역에서는 시장하고 다 얘기해서 교육감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되는 건 분명히 안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주삼원초등학교 수영장이 뚜껑이 없어서 야외수영장인데 이걸 학교에서 직영을 하다 못해서 외부 기관에다가 임대를 줬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그 요율로다 따지니까 이 사람이 여름 석 달 이용해 가지고는 수익이 안나니까 임대가 안나가 학교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고 그런데 요런 거는 현실에 맞게 요율을 낮춰줄 수 없는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요번에 1,000분의 10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이상일

해소가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네

● 위원장 이상일

학교에서 여름에 수 천명 학생이 우글거리고 하는데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서 그걸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가 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현실에 맞게 효율을 잘 조정을 해서 어차피 이게 전면 개정하는 단계이니까 실제로 학교에 어려움이 없는가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간사 성영용

수정동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진옥경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진옥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

죠.

● 진옥경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표준안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제6항인데 2번으로 보면 2번 뒤에다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있는 이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페이지로 보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아니 10페이지입니다. 6항에 2번 뒤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조항이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빠뜨려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게 왜냐하면 또 다른 법령에서 이걸 정해 놓은 이후에도 또 다른 법령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감면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런 감면 규정을 지나치게 간소화하게 하다 보면 자기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 조례가 그것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대부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잡종재산 대부분의 준용 부분에서 이 대부분을 학교회계예산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잡종재산 대부분을 어떻게 본청에서 전부 가져갑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가져갑니까, 학교회계로는 할 수 있습니까?

준용의 부분입니다. 제25조입니다. 사용료의 요율 또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학교회계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관계는 대부분 주는 거는 장기적으로 대부분 주는 거는 본청 재산으로 들어오지만 일시 사용해 가지고 사용료 받는 것은 학교회계로 들어갑니다.

● 진옥경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의견을 모아야될 것 같은데 무슨 다른 위원님 말씀계십니까?

● 간사 성영용

수정동의를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지금 성영용 위원님께서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시 정회)

(15시 41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성영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성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동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면서 시행령 제7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까지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현황파악”에서 현황파악 조문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중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현황파악 현황파악 괄호 닫고”에서 현황파악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의 장·절 각 조문의 띄어쓰기, 고유명사 사용 등의 오류사용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질의에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15시 45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성영용,
위 원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6. 6. .

위원장 이 상 일 李 相 一

(별첨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6. 5.15.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6. 5.16. (화)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